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 및 증진방안

연구책임자: 최용희 · 박정안

책임연구원: 류재인

공동연구원: 박향아 · 탁나연 · 차은경



발간사

정보의 고도화와 기술의 발전은 디지털 경제를 출현시켰고, 경제와 산업은 물론 고용과 노동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면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 종사자 수는 179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택배, 퀵서비스, 음식배달업 및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이동 노동자는 56만여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대다수의 이동 노동자는 법의 테두리 바깥에 놓여 사회보장체계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동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문제가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관련된 조사와 연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심권·동북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이동 노동자의 구강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택배, 퀵서비스, 음식배달업 및 대리운전 노동자를 대상으로 ‘구강건강 실태조사 및 건강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연구를 위한 검진은 많은 분들의 협조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지부, 동남권·서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합정·서초·북창의 휴서울 이동노동자쉼터, 강서휴쉼터, 성남시 이동노동자쉼터,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강서양천 민중의집, 라이더유니온 그리고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앞과 동대문종합시장의 퀵서비스 노동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연구 결과는 직종별로 정리되었으며, 연구진은 이동노동자 구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제도를 검진까지 확대’, ‘검진부터 예방적 관리까지 포괄하는 성인 치과주치의 제도 시행’을 제시하였으며,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증진 방안으로 ‘구강보건 교육 및 사업장 구강건강 증진 사업 운영’, ‘유관

단체들과 연계하여 구강건강 교육 사업 운영' 등 4가지의 활동 방향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본 연구를 맡아주신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류재인 교수님과 탁나연·박향아·차은경 연구진께서는 이동노동자 205명을 검진하기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무려 19차례나 현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동노동자를 찾아 이동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연구는 이동 노동자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와 세부적 장치 마련의 교두보가 될 것이며, 아울러 이동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감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로 정착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심권·동북권 센터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교육을 비롯하여 매뉴얼 등 이동 노동자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해박한 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갈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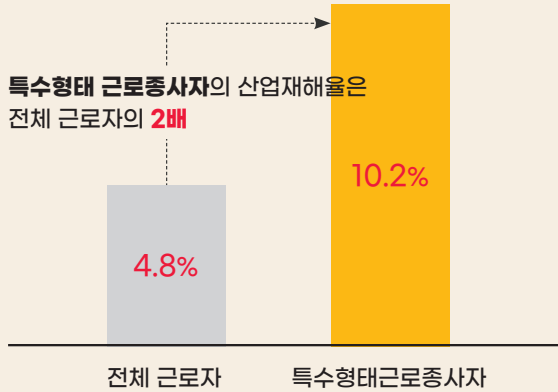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정 숙 희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홍 성 진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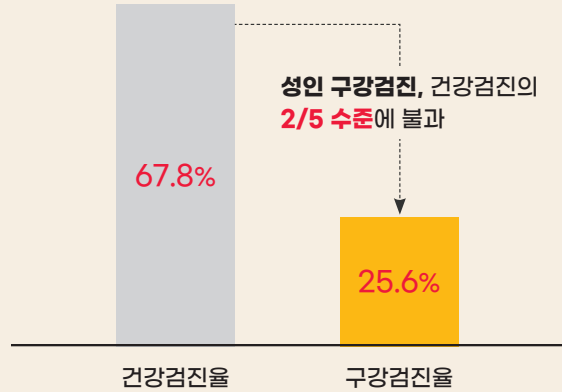


열악한 근무환경 및 구강검진 실천율

산업재해 천인율



건강·구강 검진율



서울시 이동노동자 야간 근무 비율 최대 33배

서울시 이동노동자의 주 근로시간대



전체 국민 평균의 **9.4배**
사무직의 **32.7배**



전체 국민 평균의 **2.5배**
사무직의 **6배**



전체 국민 평균의 약 **76%**
사무직의 **54%**에 불과

서울시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구강건강 상태



전체 국민 평균의 **1.4배**
사무직의 **3.1배**



전체 국민 평균의 **절반(57%)**
사무직의 **절반(42%)**



전체 국민 평균의 **1.4배**
사무직의 **1.7배**

서울시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구강건강 행태 및 경험의 이유



- ### 맥락적 조건
- 이동노동의 특수성
 - 높은 업무 강도와 이로 인한 육체 정신적 스트레스
 -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도 낮음
 -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
 - 잘못된 구강건강 관리 행태

- ### 인과적 조건
- 양치할 여건이 안 됨
 - 치과 방문할 여건이 안 됨

- ### 중심 현상
- 낮은 칫솔질 실천율
 - 높은 미충족 치과의료 이용률

- ### 중재적 조건
- 이동노동자 양치 여건 조성
 - 이동노동자 구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
 - 구강을 포함한 건강관심도 높여 건강행태 형성

- ### 작용·상호작용
- 이동노동자 쉼터에 양치 여건 조성 시 이용할 의향 있음
 - 이동노동자 쉼터를 통한 정기적인 구강검진 지원 원함
 - 이동노동자 쉼터를 통한 구강건강 관련 상담 원함
 - 이동노동자 쉼터를 통한 구강건강 관리 교육 원함

- ### 결과
- 칫솔질 실천율 향상
 - 미충족 치과의료 이용률 감소



차례

제1장 **조사목적 및 설계** **1**

1.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2
1) 우리나라 필수노동자의 건강 문제	2
2) 필수노동자인 이동노동자의 건강 상태	7
3) 노동자의 구강건강 상태	9
4) 이동노동자의 구강건강 현황 파악의 필요성	17
2.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18
1) 조사의 법적 근거	18
2) 조사의 목적	19
3) 조사의 체계	19
4) 조사내용 및 방법	19
5) 표본설계	23
6) 질 관리체계	24
3.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비교 분석	25
1) 조사의 법적 근거	25
2) 조사목적	25
3) 조사의 체계	26
4) 조사의 내용 및 방법	27
5) 표본설계	28
6) 질 관리체계	29
7) 자료 제공	30

제2장 **조사 과정** **31**

1.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32
1) 조사단의 구성	32
2) 조사의 질 관리	33
3) 조사 대상	37
4) 조사 기간	39

5) 조사 물품	40
6) 조사 방법	42
7) 조사항목	44
8) 조사입력 및 분석	48
9) 조사 경과	50
2. 국민건강영양조사 비교 분석 자료	52
1) 조사 대상	52
2) 조사 기간	52
3) 조사항목	53
4) 조사분석	54
5) 비교 분석을 위한 직업군 분류	55

제3장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상태 및 행태 분석 결과 57

1.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 분석 결과	58
1) 구강건강 상태 조사 결과	58
2) 구강건강 의식 조사 결과	62
3) 경제활동	65

제4장

국민건강영양조사 성인 및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 남성의 구강건강 상태 및 행태 분석 결과 97

1. 국민건강영양조사 성인 남성 분석 결과	98
1) 구강건강 상태 조사 결과	98
2) 구강건강 의식 조사 결과	100
2. 국민건강영양조사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 남성 분석 결과	107
1) 구강건강 상태 조사 결과	107
2) 구강건강 의식 조사 결과	109
3) 경제활동	111

제5장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 심층 면접 분석 결과 125

1.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 심층 면접 분석 결과	126
1) 패러다임 모형 구축	126
2) 중심 현상: 낮은 칫솔질 실천율, 높은 미충족 치과의료 이용률	126
3) 인과적 조건	126
4) 맥락적 조건	132
5) 중재적 조건	139
6) 작용, 상호작용 전략	143
7) 결과: 칫솔질 실천율 향상, 미충족 치과의료 이용률 감소	146

제6장

결론 147

1. 요약	148
1)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 국민건강영양조사 성인 및 관련 직업군 남성의 구강건강 상태 및 행태 비교 분석 결과	148
2)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 심층 면접 질적 분석 결과	150
2. 제언	152
1) 이동노동자 구강검진 활성화 방안	152
2)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증진 방안	164

참고문헌

168

부록

171

표 차례

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0.9.10. 제정)	3
표 1-2. 구강건강 실태조사 시행과 관련된 법	18
표 1-3. 국건영 시행과 관련된 법	25
표 1-4. 질병관리청 국건영 조사 분야별 조사내용	27
표 2-1. 2022년도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단의 구성	32
표 2-2. 2022년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단의 역할	33
표 2-3. 2022년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조사과정 자체 점검표	34
표 2-4. 구강건강 실태조사 심의와 관련된 법	35
표 2-5. 구강건강 실태조사 동의와 관련된 법	36
표 2-6. 2022년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참여율	38
표 2-7. 2022년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행태 심층 면접 참여율	38
표 2-8. 2022년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행태 심층 면접 참여자 명단	39
표 2-9.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대상 기관	51
표 2-10. 국건영 및 한국표준직업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내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의 분류	55
표 3-1.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일반적 특성	67
표 3-2.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영구치우식경험률	68
표 3-3.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영구치우식유병률	69
표 3-4.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현존 자연치아 수	70
표 3-5.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20개 이상 치아 보유율	71
표 3-6.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무치악자율	72
표 3-7.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저작불편호소율	73
표 3-8.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의치 보유자율	74
표 3-9.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임플란트 보유자율	75
표 3-10.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의치 필요자율	76
표 3-11.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치면세마 필요자율	77
표 3-12.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발치 필요자율	78
표 3-13.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치아 손상 경험률	79
표 3-14.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치아 손상 경험 원인(교통사고)	80
표 3-15.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좋음)	81
표 3-16.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82

표 3-17.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율	83
표 3-18.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일일 칫솔질 횟수	84
표 3-19.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구강 보조용품 사용률	85
표 3-20.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86
표 3-21.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평생흡연율	87
표 3-22.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현재 흡연율	88
표 3-23.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월간음주율	89
표 3-24.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연간 구강검진 여부	90
표 3-25.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연간 치과 진료 여부	91
표 3-26.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연간 미충족 치과의료율	92
표 3-27.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연간 미충족 치과의료 이유(경제적 이유)	93
표 3-28.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근무경력	94
표 3-29.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근무 형태	95
표 3-30.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	96
표 4-1. 국건영 성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02
표 4-2. 국건영 성인 남성 대상자의 구강건강 상태	103
표 4-3. 국건영 성인 남성 대상자의 보철물 상태	104
표 4-4. 국건영 성인 남성 대상자의 치과 진료 필요자율	104
표 4-5. 국건영 성인 남성 대상자의 치아 손상 경험률과 원인	105
표 4-6. 국건영 성인 남성 대상자의 구강건강 인식 상태	105
표 4-7. 국건영 성인 남성 대상자의 구강건강 관련 행태	106
표 4-8. 국건영 성인 남성 대상자의 건강 관련 행태	106
표 4-9. 국건영 성인 남성 대상자의 치과의료 이용 실태	107
표 4-10. 국건영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 남성의 일반적 특성	112
표 4-11. 국건영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 남성의 영구치우식경험률	113
표 4-12. 국건영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 남성의 영구치우식유병률	114
표 4-13. 국건영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 남성의 현존 자연치아 수	115
표 4-14. 국건영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 남성의 치주질환유병률	116
표 4-15. 국건영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 남성의 저작불편호소율	117
표 4-16. 국건영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 남성의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118
표 4-17. 국건영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 남성의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율	119

표 4-18. 국건영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 남성의 일일 찢슬질 횟수	120
표 4-19. 국건영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 남성의 미충족 치과의료율	121
표 4-20. 국건영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 남성의 미충족 치과의료 원인 중 경제적 이유	122
표 4-21. 국건영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 남성의 근무 형태	123
표 4-22. 국건영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 남성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	124
표 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52
표 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29호) 개정 주요 내용	155
표 6-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검진 확대에 관한 법률	156
표 6-4.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161
표 6-5. 사업장 구강건강 증진 활동 방법	165
표 6-6.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356호) 중 일부	166

그림 차례

그림 1-1.	택배근로자 산재 현황	2
그림 1-2.	10.6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및 지원방안	4
그림 1-3.	12.14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대책	5
그림 1-4.	12.14 필수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강화 대책 중 일부	6
그림 1-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직종별 건강진단 도입	7
그림 1-6.	우리나라 성인 남성과 택배기사의 건강행태 비교	7
그림 1-7.	우리나라 택배기사의 업무 관련 건강 문제 현황	8
그림 1-8.	우리나라 성인 남성과 택배기사의 수면시간 비교	8
그림 1-9.	5대 비전염성질환(NCDs)과 구강질환의 전 세계적 건수 비교	9
그림 1-10.	연도별 우리나라 5세와 12세 아동 우식경험자율 추이	11
그림 1-11.	우리나라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수(DMFT index)	11
그림 1-12.	우리나라 청소년의 연간 치아 통증 경험률(%)	12
그림 1-13.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년별 연간 치아통증 경험률(2021)	12
그림 1-14.	우리나라 성인의 치주질환 유병률	13
그림 1-15.	우리나라 성인의 연령별 저작불편호소율	13
그림 1-16.	우리나라 노인의 구강건강 상태	14
그림 1-17.	국가별 1인당 치과의료비(2019)	15
그림 1-18.	우리나라 12세 청소년의 경제 상태별 영구치우식유병자율(2018)	15
그림 1-19.	우리나라 성인의 치과 미충족의료율	16
그림 1-20.	우리나라 노인의 지역별 저작불편호소율(2020)	17
그림 1-21.	질병관리청 국건영 수행체계	26
그림 1-22.	질병관리청 국건영 수행 과정	26
그림 1-23.	질병관리청 국건영 조사 방법	28
그림 1-24.	질병관리청 국건영 질 관리체계	29
그림 2-1.	2022년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단 구성도	32
그림 2-2.	구강 검사 용품	40
그림 2-3.	감염방지 용품	40
그림 2-4.	현장 자료입력 도구	41
그림 2-5.	기념품	41
그림 2-6.	심층 면접 관련 물품	42
그림 2-7.	구강 검사	43

그림 2-8. 설문조사	43
그림 2-9. 심층 면접	44
그림 2-10. 2022년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입력자료 준비 및 보관	48
그림 5-1. 서울시 이동노동자의 구강건강 행태 및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127
그림 6-1. 산업재해 천인율(1,000명당 발생률) 추이	154
그림 6-2.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모식도와 안내자료	158
그림 6-3. 우리나라 성인의 건강검진과 구강검진 수검률 추이	159
그림 6-4. 우리나라 성인의 연령별 구강검진 수검률(2020)	159
그림 6-5. 우리나라 성인의 지역별 구강검진 수검률(2020)	160
그림 6-6. 상병수당 시범사업 안내	162
그림 6-7.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절차	163
그림 6-8. 사업장 구강건강 증진 활동 모형 개념도	164

1.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필요성

(1)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 필요성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면서 택배 서비스 수요도 급증하였고, 배송물량 증가에 비해 낮아진 수수료로 인해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며 2020년에는 택배 노동자 15명이 사망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음.

(2) 필수노동자인 이동노동자의 건강 상태

- 2021년 택배기사의 건강행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에게 비해 흡연율과 아침 결식률이 2배 정도 높았음. 또한 업무 후 지쳐서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인 피로도 비율도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업무와 관련된 건강 문제에서는 근육통 80%, 요통 50%, 두통과 눈의 피로 경험은 74%라고 응답하였음.
- 이러한 직업적 특성으로 인한 열악한 작업환경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 과도한 업무량 및 시간으로 인해 적정한 수면시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음. 조사 대상 택배기사의 70.4%가 불충분한 수면시간을 보였으며, 평균 수면시간이 6.2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3) 노동자의 구강건강 상태

○ 전 세계적인 구강건강 현황

- 구강질환은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도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35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예방적 접근을 통해 질병의 발생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들이 여러국가들과 함께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나라 구강건강 현황

- 우리나라 아동의 절반 이상은 유치나 영구치에 우식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만 12세 아동의 우식 경험은 점차 감소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에 비해 1.5배 높음.
-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약 40%는 최근 1년 이내 치아 통증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비율이 학년과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성인 전체의 23.4%가 치주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도 나타내고 있었음.
-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치아 상실 등으로 인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불편호소율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2020년 기준 33.1%로 전체의 1/3이 씹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음. 또한 의치필요자율이 23.2%, 무치악자율이 7%인 것으로 나타나 치아 상실로 인한 치과 보철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었음.

○ 구강건강 불평등 현황

- 미충족 치과의료의 경우 신체적, 기능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부담 역시 증가함. 구강질환의 경우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뚜렷하게 지속되어 취약 계층에게 질병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 여기에 치과의 경우 비급여가 많아 진료 부담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구강건강 상태에 소득수준 등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격차가 전 생애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임. 아동의 12세 영구치우식유병 자율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1.6배 더 열악하였고, 성인의 치과 미치료율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1.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4) 이동노동자의 구강건강 현황 파악의 필요성

- 이동노동자는 특수형태 고용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최근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뿐 아니라 건강검진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음.
-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였던 만큼 열악한 건강 상태가 구강건강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들의 이동노동자(택배, 대리, 음식 배달 등)라는 업무 특성상 구강건강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이들의 구강건강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없는 실정이며, 관련 자료 부족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 및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 가 먼저 시행되어야 함.

2) 조사목적

- 이 조사의 목적은 서울시 이동노동자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구강건강 지표와 구강보건 행태 및 구강보건 의료 이용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구강건강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함에 있음.
- 구체적 목표는 아래와 같음.
 - 서울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구강 검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강건강 상태 및 행태를 분석하여 구강건강 수준 현황을 파악

- 서울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여 구강건강 행태 및 관리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
- 구강건강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의의를 도출

3) 조사내용

○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 구강검진: 치아 상태 및 치료 필요, 보철물 상태/임플란트 경험, 보철물 필요, 종합 판정, 구강 면접
- 구강건강 관련 의식 설문조사: 일반적 정보, 구강건강 관련 행태, 치과의료 이용, 신체활동, 흡연, 음주
- 교육 및 경제 활동

○ 질적 면접

- 일반적 정보
- 교육 및 경제 활동
- 건강 상태
- 구강건강 관련 행태: 주관적 건강 인식,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 구강건강, 치과의료 이용

4) 조사대상자

○ 목표 모집단

- 2022년 서울시에서 이동노동자(대리운전원,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음식 배달원)로 근무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전체

○ 조사 모집단

- 2022년 조사 시점의 서울시에서 이동노동자(대리운전원,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음식 배달원)로 근무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조사 모집단으로 하였음.

(2) 조사대상자 수

○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 참여율은 전체 대상자 수 209명 중 조사에 동의한 참여자 수는 204명(참여율 97.6%)이었음. 이 중 직종별로는 대리 95.5%, 택배/퀵 100%, 배달 96.8%였음 (표 6).

○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행태 심층 면접

-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참여자 중 심층 면접 참여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직종, 경력, 구강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직종별로 5명씩 선발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리 5명, 택배/퀵 5명, 배달 5명, 총 15명의 이동노동자가 심층 면접을 참여하였음.
- 심층 면접 참여에 동의한 총 37명을 대상으로, 직종, 경력, 구강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직종 별 5명씩 총 15명(참여율 40.5%)을 최종 선정함. 각 직종별 참여율은 대리 50.0%, 택배/퀵 55.6%, 배달 29.4%였음(표 7).

5) 조사과정

○ 조사 기간

- 2022년 8월~11월까지 4개월

○ 조사 물품

- 구강건강 실태조사: 구강 검사 용품, 감염 방지용품, 현장 자료입력 도구, 기념품
- 심층 면접: 녹취 도구, 사례비 지급서류

○ 조사 방법

-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 운영관리팀, 질관리팀, 입력분석팀, 표본추출팀, 조사팀을 구성
- 표본 추출: 구강건강 실태조사의 경우 대리운전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퀵서비스 기사의 이용 가능성이 있는 기관 리스트를 표본추출틀로 구성하였으며, 직종별로 통계산출이 가능하도록 대리, 택배, 배달로 구분하여 직종을 구성. 이번 연구는 기존에 시행된 바 없는 배달·배송·운전 종사자에 대한 구강 건강실태 파악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대표치 산출의 의미보다는 본격적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전체 대상자의 0.1%에 해당하는 160명을 최종 조사대상자로 하되, 응답율 80%로 가정하고 200명에게 참여를 요청. 심층 면접의 경우 실태조사 참여자 중 심층 면접 참여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직종, 경력, 구강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직종별로 5명씩 선발
- 조사자 교육훈련: 이론 교육 및 사진, 모형, 모의 대상자 검사 훈련
- 동의서 및 설문지 발송 및 수합: 사전에 계획된 조사 일정에 따라 조사 대상 기관에 연구대상자 설명서, 참여동의서,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구강 검사 후 검사지와 함께 수거하여 설명서의 확인 및 참여동의서의 참여 동의 여부 확인
- 방문 조사: 조사팀이 조사 대상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구강 검사 시행 및 설명서, 참여동의서, 설문조사지 회수하며, 당일 참여희망자는 당일 설문지 배포 후 구강 검사 시행 및 설명서, 참여동의서, 설문조사지 회수. 심층 면접은 구강건강 실태조사 완료자 중 심층 면접에 동의한 참여자에게 면접 조사지에 따라 진행. 면접의 일관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훈련을 마친 연구원 1인이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심층 면접을 진행. 면접에 참여하는 이동노동자가 본인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도록, 현 직종과 이전 직종을 확인하는 도입 질문으로 시작하고, 면접을 진행하면서 상황에 따라 추가 질문을 준비
- 조사 결과는 컴퓨터 입력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원본 조사지 및 동의서는 경희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조사팀이 안전한 장소에 보관
- 입력된 조사 결과는 개인정보를 코드화하여 변환한 뒤, 자료 분석에 활용

2.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성인 및 관련 직업군 남성 비교 주요 결과

1) 일반적 정보

-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남성(87.5%)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이하 국건영) 성인 및 관련 직종 남성과 비교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음.
- 연령별로는 대리와 택배(퀵)의 경우 50대 이상 고연령자가 각각 90.5%와 76.6%로 많았고, 배달의 경우 40대 이하 저연령자가 75.5%로 다수를 차지하였음.
- 교육 수준의 경우 국건영 성인 남성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며(대졸 이상 국건영 41.2%, 서울시 이동노동자 44.6%), 서울시 이동노동자 중에서 대리(66.7%)와 배달(50.0%)의 경우 전체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였음.
- 서울시 이동노동자의 경우 취업 형태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국건영의 2.4배 정도로 높았는데(국건영 22.4%, 서울시 이동노동자 54.1%), 택배의 경우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근로 시간의 경우 주간, 저녁, 밤 근무 비율이 직종별로 달랐는데, 택배의 경우 주간 근무(86.7%)가 많았고, 대리의 경우 밤 근무(52.2%)가 많았음.
- 근무경력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 수준이 고졸 이하이면 더욱 긴 것으로 나타났음(특히 전체와 택배 직종에서 큰 격차가 나타남).

2) 구강건강 상태

- 서울시 이동노동자의 구강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국건영보다 열악하게 나타났음.
- 영구치우식유병률의 경우 국건영 평균에 비해 1.4배 정도 높았음(국건영 31.7%, 서울시 이동노동자 43.6%).
- 자연치아 수는 국건영 평균보다 약간 적었으며(30대 이하에서 국건영 28.6개, 서울시 이동노동자 28.2개), 나이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

며, 특히 배달에서 더욱 큰 차이가 나타났음(30대 이하 29.1개, 60대 이상 22.4개).

- 저작불편호소율도 국건영보다 높게 나타났으며(국건영 23.1%, 서울시 이동노동자 33.3%), 나이와 교육 수준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특히 택배의 경우 고졸 이하에서 대졸 이상보다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고졸 이하 46.8%, 대졸 이상 10.5%).

3) 구강건강 행태

- 서울시 이동노동자의 구강건강 행태는 전반적으로 국건영보다 열악하게 나타났음.
 -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의 경우 전체적으로 국건영보다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매우 낮았음(국건영 41.8%, 서울시 이동노동자 24.0%).
 -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율의 경우 국건영보다 낮았으며(국건영 42.3%, 서울시 이동노동자 31.4%), 교육 수준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특히 대리에서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났음(고졸 이하 19.0%, 대졸 이상 47.6%).
 - 미충족 치과 의료율의 경우 국건영에 비해서 1.4배 높게 나타났음(국건영 28.8%, 서울시 이동노동자 40.4%).

4) 건강행태

- 서울시 이동노동자의 건강행태는 국건영과 유사하거나 열악하게 나타났음.
 - 월간음주율의 경우 국건영 평균과 유사하였음(국건영 69.9%, 서울시 이동노동자 67.6%). 직종별로는 대리(55.6%)는 상대적으로 낮고, 배달(79.3%)이 약간 높았음. 대리의 직업적 특성상 음주율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배달의 경우 젊은 연령층이 많은 것이 이유일 것으로 여겨짐.
 - 평생흡연율의 경우 국건영과 비슷하였음(국건영 72.2%, 서울시 이동노동자 73.0%). 신체활동 실천안함의 경우 국건영보다 높았으며(국건영 52.6%, 서울시 이동노동자 76.5%), 배달에서 약간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음(83.3%).

- 최근 1년간 구강검진 안 함의 경우에는 국건영보다 낮았으며(국건영 65.2%, 서울시 이동노동자 50.5%), 직종별로는 배달의 경우 매우 낮고(45.50%), 대리(50.8%), 택배(54.3%) 순으로 낮게 나타났음.

3.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 질적 면접 주요 결과

- 직종별로 대상자의 근무 경험, 건강 상태, 구강건강 행태, 바람직한 구강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 방향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근거이론(Ground theory)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낮은 치솔질 실천율과 높은 미충족 치과의료 이용률이라는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을 확인하고, 대상자들의 ‘작용상호작용’을 강화하기 위한 ‘중재적 조건’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결론’인 양치 이행률 향상과 미충족 치과의료 이용률 감소를 이루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인과적 조건으로 양치할 여건이 되지 않거나 치과에 방문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을 원인으로 제시하였음.
- 맥락적 조건으로 이동노동자는 특수성, 높은 업무 강도와 이로 인한 육체·정신적 스트레스,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도 낮음,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 잘못된 구강건강 관리 행태 등이 나열되었음.
- 중재적 조건으로는 이동노동자의 양치 여건 조성, 이동노동자의 구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 구강을 포함한 건강관심도 높여 건강행태 형성이 제안되었음.
-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응답자 중 다수가 이동노동자 쉼터에 양치 여건이 조성되면 이용할 의사가 있으며, 정기적인 구강검진, 구강건강 관련 상담, 구강건강 관리 교육을 원한다고 응답하였음.

4. 결론

1) 요약

- 서울시 이동노동자의 구강건강 실태조사 및 국건영 자료와의 비교 분석, 심층 면접을 통해 아래와 같은 제도 및 사업적 정책제언이 도출되었음.

2) 정책제언

○ 이동노동자 구강검진 활성화 방안

- 이동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건강진단을 포함한 업무상 재해예방의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함. 최근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건강검진 등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게 되더라도 우리나라 성인의 구강검진 수검율은 건강검진 수검율의 절반도 되지 못함.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구강검진 수검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제도를 검진까지 확대 시행하여 구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이 있는 경우에 초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적 차원의 건강증진행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또한 구강검진부터 예방적 관리까지를 포괄하는 성인 치과주치의 제도를 시행하여 구강건강평가, 만성질환자 구강관리법 교육 및 정보제공, 치석제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치주(잇몸)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강건강 향상을 이루어야 함.

○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증진 방안

- 한국산업구강보건원에서 발표한 노동자 구강건강 증진 매뉴얼에 따라 금연, 구강 위생, 불소 이용, 영양/설탕, 작업 안전 등을 내용으로 개별과 집단, 캠페인과 자료제공 등을 고려한 구강보건 교육을 시행하고, 협조도에 따라 선택적인 방법으로 실천, 예방개입, 인프라 구축, 작업환경관리 등을 통해 포괄적인 사업장 구강건강 증진 사업 운영을 조속히 시행해야 함.
- 열악한 구강건강 관리 행태는 장기적으로 구강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빠른 시기에 개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양치 여건 조성이 마련되어야 함.
- 구강건강은 전신 건강 등 건강행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한국산업구강보건원을 비롯한 여타의 지역 및 보건 관련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구강건강을 포함한 건강 전반에 관한 관심도 고취를 위해 쉼터 중심의 건강교육 사업 운영이 필요함.



제1장

조사목적 및 설계

- 01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 02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 03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비교 분석



1.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1) 우리나라 필수노동자의 건강 문제

(1)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 필요성

-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온라인 소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택배서비스 수요도 급증하였고, 배송물량 증가에 비해 낮아진 수수료로 인해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며 2020년에는 택배 노동자 15명이 사망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음(그림 1-1)¹⁾.

그림 1-1 택배근로자 산재 현황

(단위: 건)

연도	합계		사고		질병		출퇴근	
	신청	승인	신청	승인	신청	승인	신청	승인
합계	943(27)	842(23)	759(4)	711(4)	152(21)	104(18)	32(2)	27(1)
2016	41(2)	31(2)	34(1)	28(1)	7(1)	3(1)	-	-
2017	60(1)	51(1)	55(0)	48(0)	5(1)	3(1)	-	-
2018	76(3)	70(3)	66(1)	63(1)	10(2)	7(2)	-	-
2019	119(3)	106(3)	90(0)	85(0)	21(2)	14(2)	8(1)	7(1)
2020	177(9)	160(8)	134(2)	126(2)	31(7)	22(6)	12(0)	12(0)
2021	470(9)	424(6)	380(0)	361(0)	78(8)	55(6)	12(1)	8(0)

*출처: 택배근로자 산재 현황(2016~202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국민의힘) 의원실²⁾.

- 이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은 2020년 9월 서울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지방의회 30년 우수조례'로 지정된 바 있음. 해당 조례에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지원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었음(표 1-1).

1) 백희정, 전용일, 택배기사의 업무활동시간과 건강장해(2021.02).

2)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8200000003>

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0.9.1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동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0년 10월에는 정부는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T/F 출범회의’를 통해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강화 추진대책’을 마련하였음. 해당 내용에는 주요 추진 전략으로 안전 및 건강보호 강화가 제시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건강관리 및 위생·안전 인프라 지원’ 및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1-2).

그림 1-2 10.6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및 지원방안

목표	필수노동자 안전 및 사회적보호 강화를 통해 재난극복 및 포용사회 구현에 기여					
정책 방향	◇ 코로나19로 가중된 위협 → 안전, 근무환경 개선, 안전망 확충 ◇ 우선, 취약부문 필수노동자 보호 강화 → 보호영역 확대					
추진 전략	정책 과제	분야별 적용(예)				
		보건 의료	돌봄	택배	배달	환경 미화
1. 안전 및 건강 보호 강화	① 방역실태 점검 및 방역물품 지원	√	√	√	√	√
	② 건강관리 및 위생·안전 인프라 지원	√	√	√	√	√
	③ 산재보험 적용 확대	既 적용	√	√	√	既 적용
2. 과로방지 및 근무여건 개선	① 표준계약서 보급확산			√	√	
	② 취약분야 노동관계법 준수 점검·감독 강화		√	√	√	
	③ 신규·대체인력 채용지원	√	√	√	√	√
3. 공정한 보상 및 안전망 확대	① 훈련 및 경력관리 체계 마련		√	√	√	
	② 사회안전망 확대		√	√	√	
4.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	① 보건·의료: 종사자 처우개선, 의료인력 보강 등 ② 돌봄서비스: 보수수준 합리화, 대체인력 지원 등 ③ 택배기사: 인력운용 점검, 과로 실태조사 등 ④ 배달종사자: 가이드라인 배포, 안전인프라 지원 등 ⑤ 환경미화원: 안전조치의무 점검, 건강진단 등					

*출처: 코로나19 사회의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2020.10), 관계부처 합동.

-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하였음. 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었음. 여기에서 필수노동자는 필수분야 종사자로, 필수업무 분야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코로나19 상황에서 (1)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직결되는 **보건·의료, 돌봄 업무**, (2) 비대면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3)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업무** 등이 포함됨(그림 1-3).

그림 1-3 12.14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대책

목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중단없는 필수업무 수행	
정책 방향	◇ 코로나19로 가중된 위험 : 필수인력 확충, 감염·산재에서 보호 ◇ 취약한 근로조건 :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등 제도개선	
추진 전략	정책 과제	
총괄 대책	① 필수분야 방역 강화	감염 취약분야 대상 방역점검 강화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확대
	②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휴게·샤워시설 등 위생시설 확충 지원 건강진단 확대 및 직종별 건강진단 신설
	③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분야별 인력확충 및 고용장려금 지급 방문돌봄 종사자 등 한시 생계지원 실시
	④ 사회안전망 확대	특고종사자 적용 등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전속성 요건 폐지 등 산재보험 확대 적용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	① 보건·의료	① 간호인력(교육전담, 긴급소요 등) 확충 ② 의료인력에 대한 방역지원, 교육 등 실시 ③ 민간 파견 의료인력 위험수당 지급 등
	② 돌봄서비스	① 시설인력(3,127명), 보육교사(6천명) 등 인력 충원 ② 시설별 대응매뉴얼 마련, 요양시설 근로감독 등 ③ 종사자 보수 인상, 방문돌봄종사자 등 지원금 지급 ④ 공공(사회서비스원법)·민간(가사근로자법) 돌봄체계 개편
	③ 운송서비스	① 버스기사 훈련 지원 , 대리기사 보험부담 경감 등 ② 배달종사자 안전보호 및 정비·보험료부담 완화 ③ 화물기사(온라인유통업체 배송, 대형화물, 택배 등) 보호
	④ 환경미화	① 3인1조 안전작업기준 준수 실태조사 실시 ② 시설·차량 등 안전 개선 , 직종별 건강진단 실시 ③ 의료폐기물·재활용품 등 수거·선별지원금 인상
	⑤ 기타 업무	① (콜센터) 상담원 휴게·휴가 보장 등 근로감독 실시

*출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20.12), 관계부처 합동.

- 해당 총괄 대책에는 ‘필수노동자 건강 보호’의 하나로 건강진단 확대가 포함되어 있음. 이 중 택배·배달종사자 등 이동노동자에 대한 업무상 질병(뇌심혈관질환 진단) 등 예방을 위해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그림 1-4).

그림 1-4 12.14 필수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강화 대책 중 일부

□ (건강진단 확대) 환경미화원, 택배·배달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해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건강진단 실시 지원(21년)

- * ▲(환경미화원) 디젤매연, 결정형유리규산 등 장기노출로 폐질환 우려
- ▲(택배·배달) 과로·야간업무 등 뇌심혈관계 질환 우려 등 (택배기사 10명, 뇌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사망, ~'20.10월)

◆ 「직종별 건강진단」

- (대상) 업무 특성·환경에 따라, 질병 발생이 우려되는 직종
⇒ 환경미화원, 택배·배달종사자, 대리기사 등 지원 예정(21년)
- (내용) 환경미화원(폐질환 진단), 택배·배달종사자(뇌심혈관질환 진단) 등 직종별 특화 건강진단 실시 및 소요비용 지원
- (효과)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진단 실시, 고위험 근로자 질병 예방

- 아울러, ‘직종별 건강진단’을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하는 등 제도화 추진(「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 필수노동자의 과로, 근골격계 질환 가능성 등을 심층 진단하고, 사업장 조사,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등 건강관리 체계 강화

- * ▲과로사 고위험군 초음파 진단, 주기적 진찰 등 초고위험군 관리
- ▲근골격계 유해요인 사업장 조사, 보호장비 지원, ▲건강관리센터 상담

*출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20.12), 관계부처 합동.

- 이에 따라 정부의 제3차(2021~25)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서는 ‘건강검진 사회적 기능 강화’의 하나로 2022년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대상 직종별 건강진단 도입’이 제시되었음. 이는 건강검진의 사회적 기능 강화를 위해 사회적 건강문제 예방·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을 강화하여 과로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방안임(그림 1-5).

그림 1-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직종별 건강진단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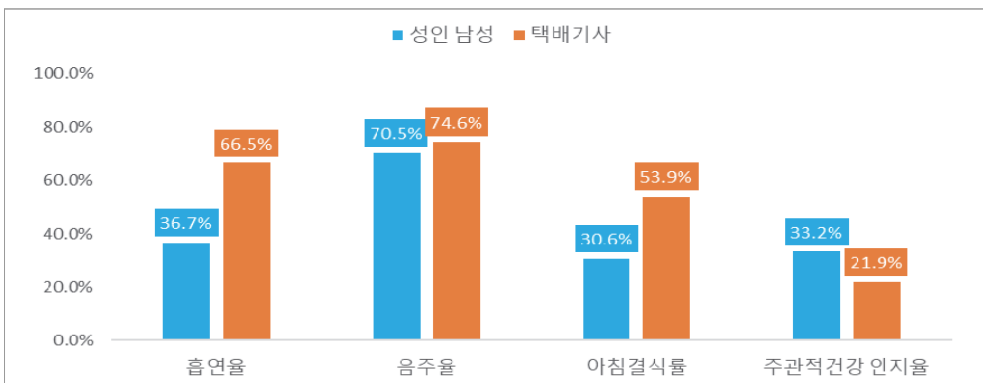
*출처: 제3차(2021~25)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6), 관계부처 합동.

2) 필수노동자인 이동노동자의 건강 상태

(1) 필수노동자인 이동노동자의 건강 조사 결과

- 2021년에는 택배기사의 건강행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행되었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에 비해 흡연율과 아침 결식률이 2배 정도 높았음(그림 1-6)3). 또한 업무 후 지쳐서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인 피로도 비율도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업무와 관련된 건강 문제에서는 근육통 80%, 요통 50%, 두통과 눈의 피로 경험은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그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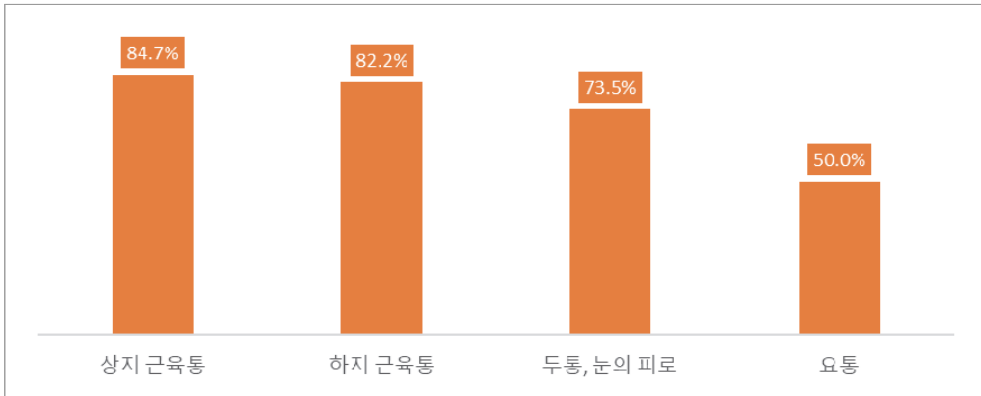
그림 1-6 우리나라 성인 남성과 택배기사의 건강행태 비교



*출처: 택배기사의 건강문제, 백희정, 전용일, 산업보건, 2021년 3월호(22~25).

3) 백희정, 전용일, 택배기사의 건강문제(202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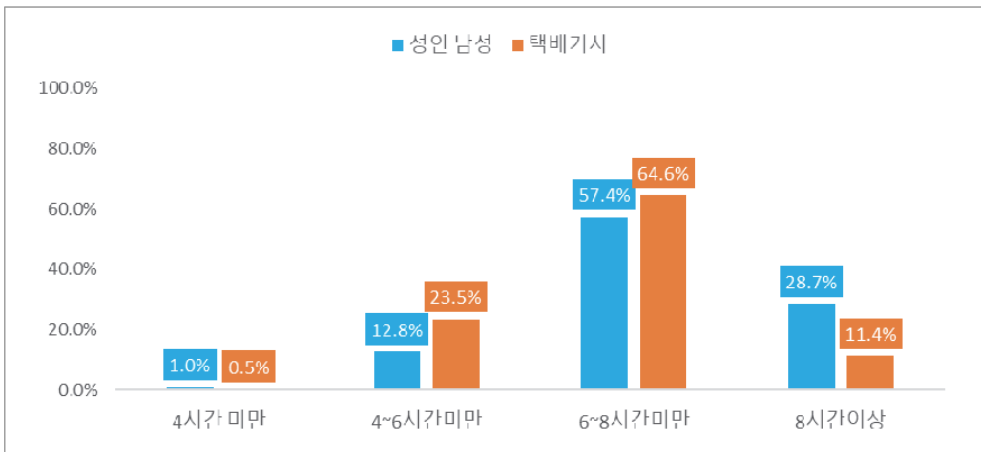
그림 1-7 우리나라 택배기사의 업무 관련 건강 문제 현황



*출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과로사 예방 방안, 백희정, 전용일, 조흥학, 최용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 보건연구원(2020).

- 이러한 직업적 특성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나 과도한 업무량 및 시간으로 인해 적절한 수면시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조사 대상 택배기사의 70.4%가 불충분한 수면시간을 보였으며, 평균 수면시간이 6.2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그림 1-8).

그림 1-8 우리나라 성인 남성과 택배기사의 수면시간 비교



*출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과로사 예방 방안, 백희정, 전용일, 조흥학, 최용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 보건연구원(2020).

(2) 이동노동자의 건강장애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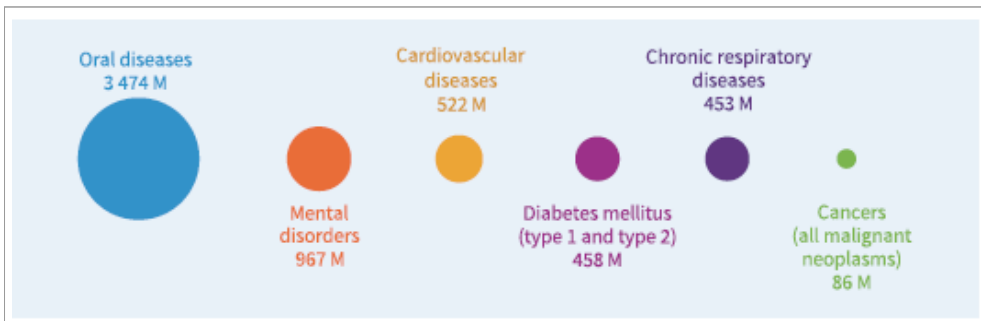
- 이에 따라 택배기사의 건강장애와 과로사 예방을 위해 1) 건강진단 대상 편입, 2) 유해 요인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여 업무수행 도중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 3) 안전보건교육 확대, 4) 건강 인식개선과 병행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적용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음⁴⁾.

3) 노동자의 구강건강 상태

(1) 전 세계적인 구강건강 현황

- 구강질환은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도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구강질환은 약 35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전 세계 구강질환 추정 건수는 5대 비전염성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 NCDs)인 정신질환, 심혈관계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암을 모두 합친 것보다 약 10억 건 정도가 많다고 함(그림 1-9).

그림 1-9 5대 비전염성질환(NCDs)과 구강질환의 전 세계적 건수 비교



*출처: Global oral health status report, towards universal health coverage for oral health by 2030, Executive summary, World Health Organization(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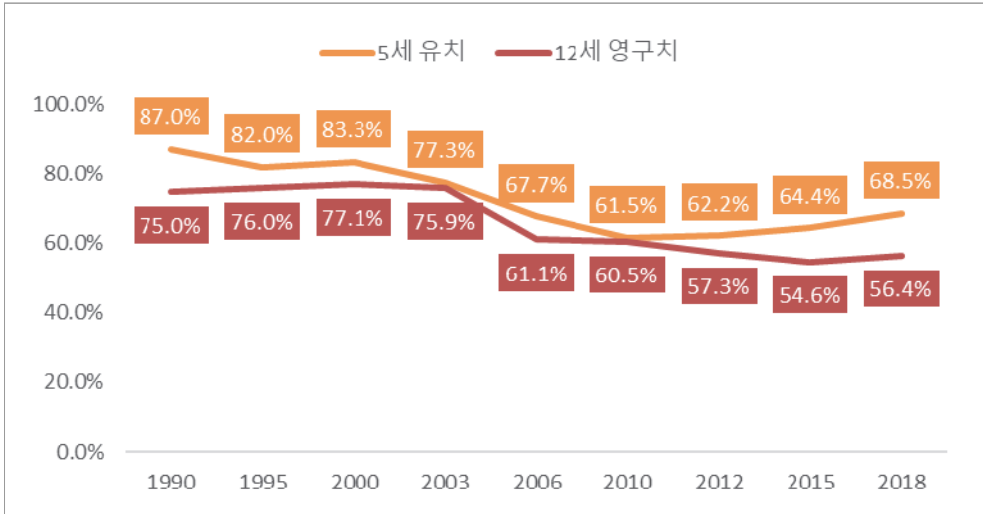
4) 백희정, 조흥학, 택배기사의 건강장애 예방대책(2021.04).

- 구강질환은 예방적 접근을 통해 질병의 발생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음. 2021년 제74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는 구강보건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여기에서는 구강보건 정책의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대표적인 비전염성 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 NCD)인 구강질환은 기본적인 정책 개입 형태인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2022년 5월 전 세계적 구강보건 전략(Global Strategy on Oral Health)을 발표하였으며, 2023년에는 2030년까지 진행될 전 세계적 구강보건 계획(Global Oral Health Action Plan (2023~2030)) 초안이 발표될 예정임. 이렇듯 세계적으로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들도 노력하고 있음.

(2) 우리나라 구강건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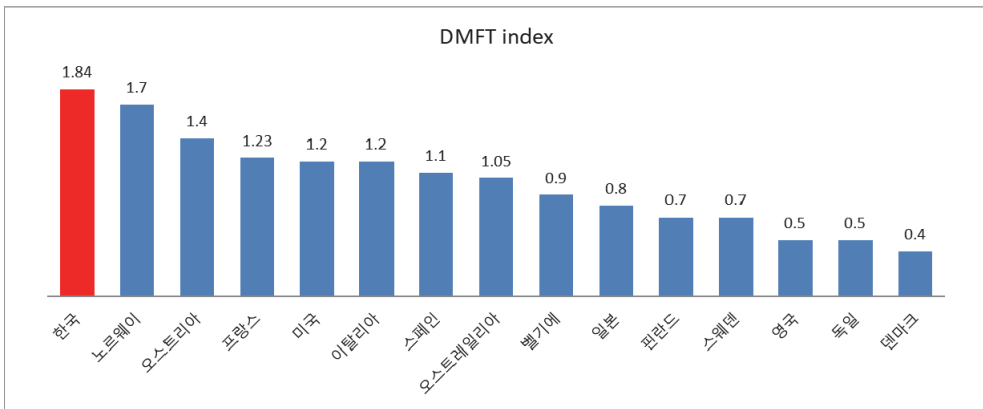
- 구강질환은 모든 연령에 영향을 미치며, 치아 상실 등이 발생하면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아동의 절반 이상은 유치나 영구치에 우식을 경험하고 있으며(그림 1-10), 만 12세 아동의 우식경험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비교 시 높은 수준임. OECD 평균은 1.20개인데 비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의 평균은 1.84개로 1.5배 높음(그림 1-11).

그림 1-10 연도별 우리나라 5세와 12세 아동 우식경험자율 추이



*출처: 아동 구강건강실태조사, 질병관리청.

그림 1-11 우리나라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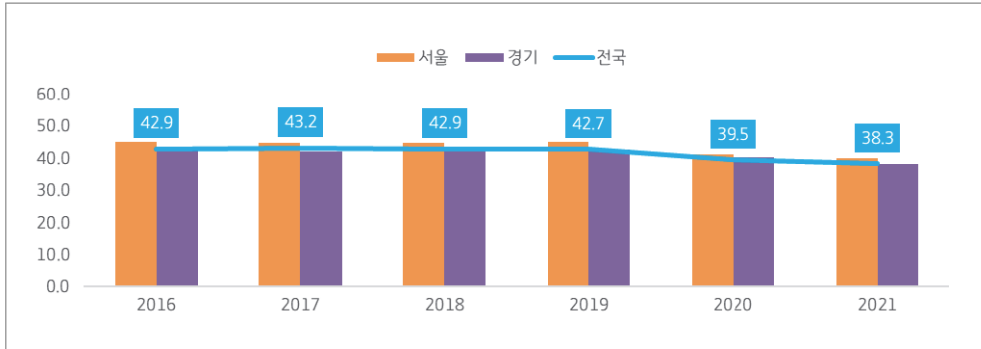


*출처: WHO Oral Health Country/Area Profile Project⁵⁾.

-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약 40%는 최근 1년 이내 치아 통증을 경험하였으며(그림 1-12), 이러한 비율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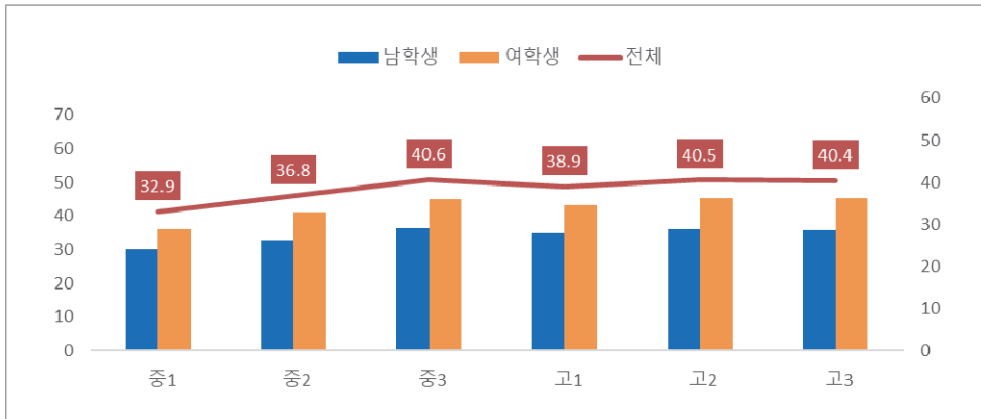
5) <https://capp.mau.se/dental-caries/>

그림 1-12 우리나라 청소년의 연간 치아 통증 경험률(%)



*출처: 청소년건강행태조사통계, 질병관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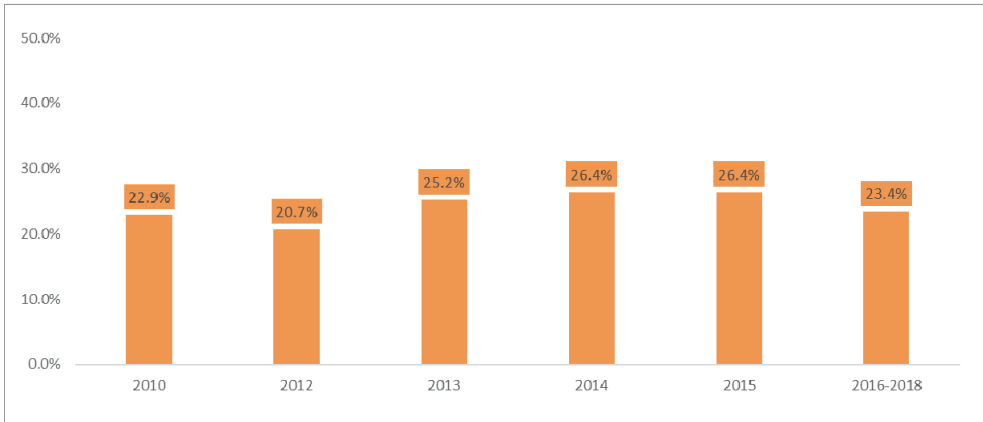
그림 1-13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년별 연간 치아통증 경험률(2021)



*출처: 청소년건강행태조사통계, 질병관리청.

○ 성인의 경우 치주질환이 증가하고, 50대 이상에서는 치아 상실이 발생하는 시기 임.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이하 국건영) 자료에 따르면 전체의 23.4%, 즉 4명 중의 1명은 치주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를 나타내고 있었음(그림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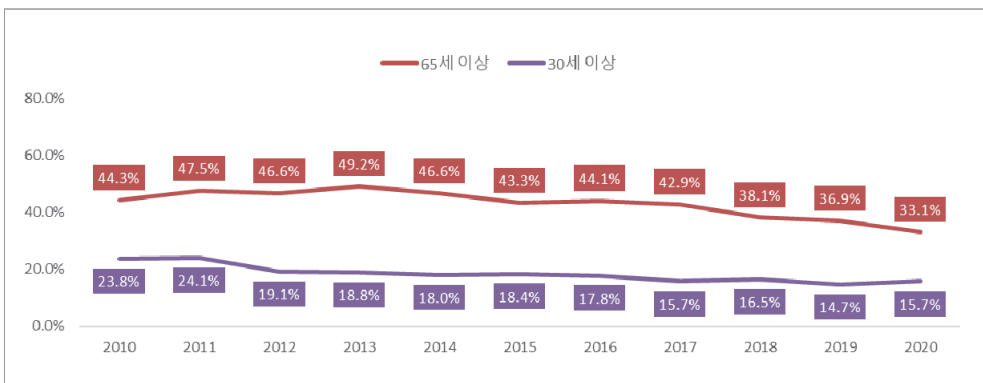
그림 1-14 우리나라 성인의 치주질환 유병률



*출처: 국민건강통계, 질병관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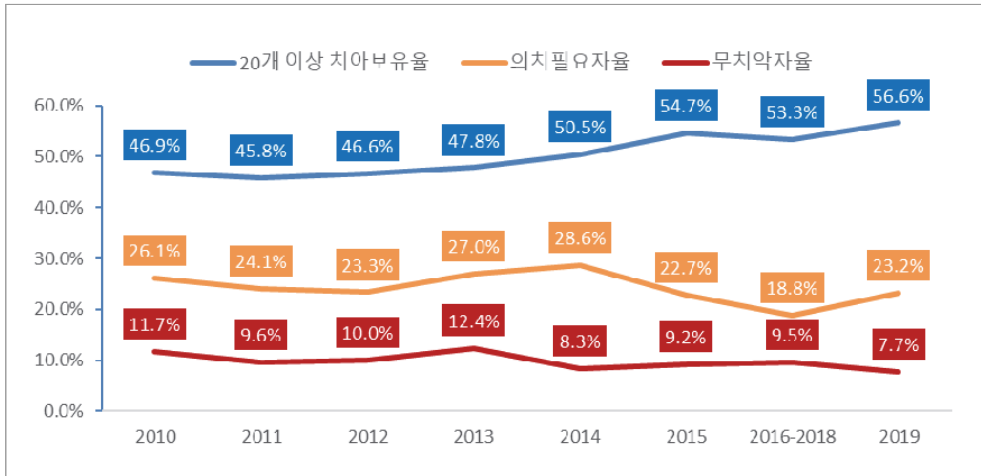
-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치아 상실 등으로 인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불편호소율이 증가하고 있었음. 2020년 기준 30세 이상 대상자의 저작불편호소율은 15.7%인 것에 비해 65세 이상의 경우 33.1%로 나타났음(그림 1-15). 또한 의치의 중요성도 증가하여 의치 필요자율이 23.2%, 무치악자율이 7%인 것으로 나타나 치아 상실로 인한 치과 보철 치료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었음(그림 1-16).

그림 1-15 우리나라 성인의 연령별 저작불편호소율



*출처: 국민건강통계, 질병관리청.

그림 1-16 우리나라 노인의 구강건강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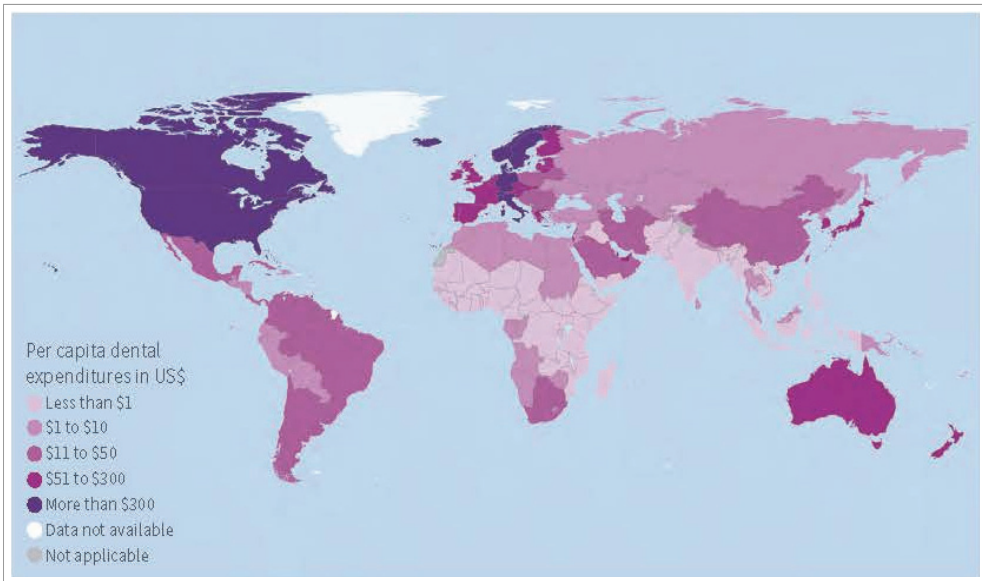


*출처: 국민건강통계, 질병관리청.

(3) 구강건강 불평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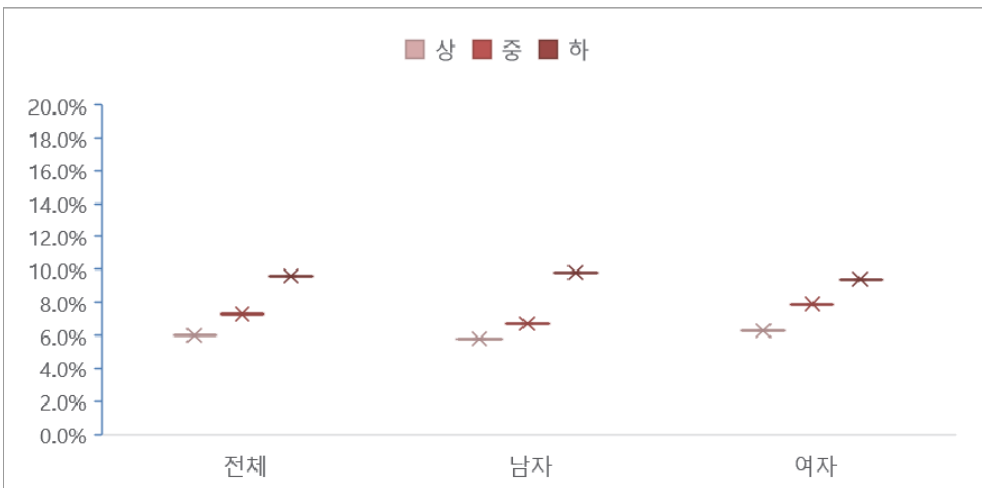
-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구강질환 환자 수가 10억 명 증가하였고, 이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적절한 치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함. 미충족 치과의료의 경우 신체적, 기능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상태가 방치되면 경제적 부담은 더 증가하게 됨. 구강질환의 경우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뚜렷하고 계속되어 질병 부담이 취약 계층에게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 또한 이에 따라 비급여가 많은 구강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진료 부담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그림 1-17).
-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구강건강 상태에 소득수준 등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아동의 경우 12세 영구치우식유병자율이 경제수준 '상'인 경우 6.0%이었으며, '하'인 경우 9.6%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나쁜 경우 치아우식증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경우가 1.6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그림 1-18).

그림 1-17 국가별 1인당 치과의료비(2019)



*출처: Global oral health status report, towards universal health coverage for oral health by 2030, Executive summary,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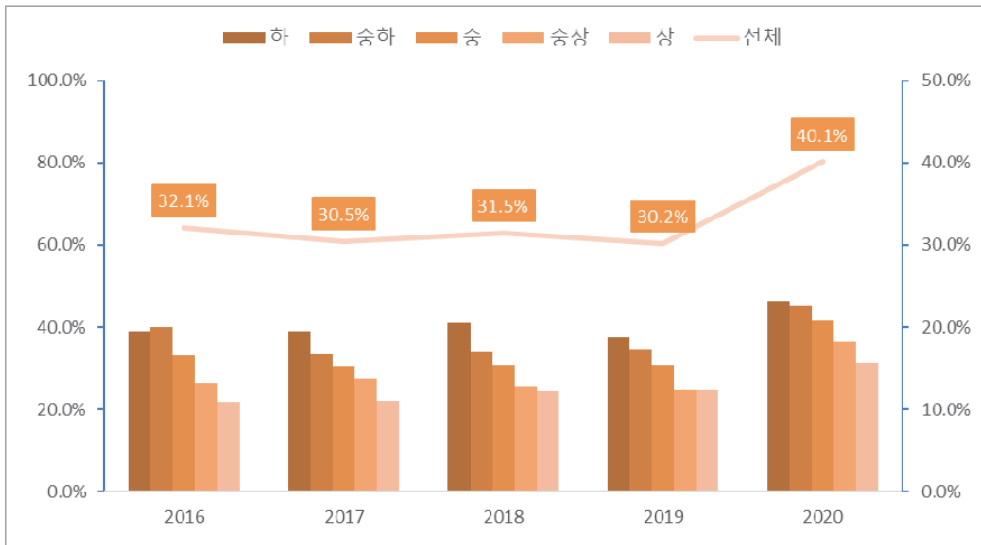
그림 1-18 우리나라 12세 청소년의 경제 상태별 영구치우식염병자율(2018)



*출처: 아동 구강건강실태조사, 질병관리청.

- 이러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격차가 성인에서도 이어져 치과 미충족의료의 경우 경제 수준 '상'인 경우 24.7%이었으며, '하'인 경우 37.5%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나쁜 경우 치과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나 받지 못한 사람의 비율이 1.5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그림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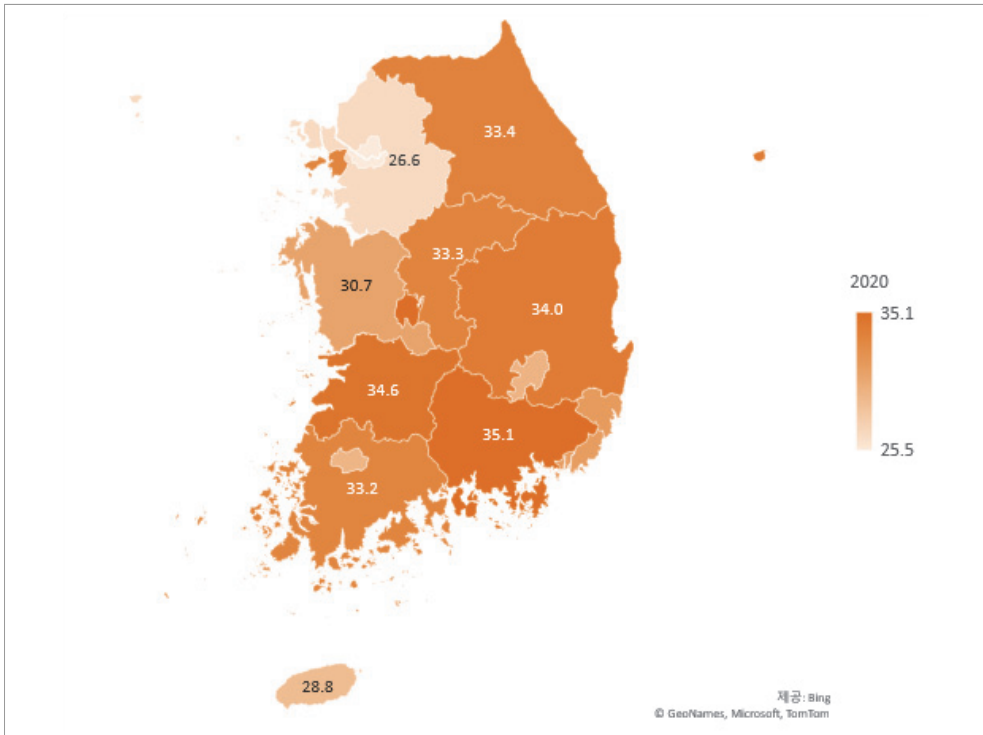
그림 1-19 우리나라 성인의 치과 미충족의료율



*출처: 국민건강통계, 질병관리청.

-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격차가 지역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있었음. 65세 이상 노인의 저작불편호소율의 경우 2020년 기준 서울의 경우 25.5%에 불과하였으나, 대전과 경남의 경우 35.1%, 전북 34.6%로 나타나 최대 1.4배까지 차이가 나타났음(그림 1-20).

그림 1-20 우리나라 노인의 지역별 저작불편호소율(2020)



*출처: 국민건강통계, 질병관리청.

4) 이동노동자의 구강건강 현황 파악의 필요성

이렇듯 이동노동자는 특수형태 고용자(이하 특고)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최근까지 산
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뿐 아니라 건강검진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음.
이러한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였던 만큼 열악한 건강 상태가 구강건강에서
도 나타날 수 있음. 또한 이들의 이동노동자(택배, 대리, 음식 배달 등)라는 업무 특성상
구강건강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의 구강건강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없는 실정임. 관련 자료 부족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
이 있음. 따라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 및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먼저 시행되어야 함.

2.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1) 조사의 법적 근거

- 구강보건법 제9조 및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4조(표 1-2)

표 1-2 구강건강 실태조사 시행과 관련된 법

구강보건법(제17472호)

제9조(구강건강실태조사)

-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강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013호)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 ① 법 제9조에 따른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상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치아건강상태
 2. 치주조직건강상태
 3. 틀니보철상태
 4. 그 밖에 치아반점도 등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의식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2.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
 3. 구강보건에 대한 행동
 4. 그 밖에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 ④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구강건강상태조사는 직접 구강검사를 통하여 실시하고, 구강건강의식조사는 면접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한다.
- ⑤ 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조사의 목적

- 이 조사의 목적은 서울시 이동노동자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구강건강 지표와 구강보건 행태 및 구강보건 의료 이용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구강건강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함에 있음.
- 구체적 목표는 아래와 같음.
 - 서울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구강 검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강건강 상태 및 행태를 분석하여 구강건강 수준 현황을 파악
 - 서울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여 구강건강 행태 및 관리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
 - 구강건강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의의를 도출

3) 조사의 체계

- 통계 종류: 일반·조사통계
- 업무지원 및 협조 기관
 -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사회치과학교실

4) 조사내용 및 방법

(1) 조사내용

-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 구강검진
 - 가) 치아 상태: 영구치 우식치아/치면, 영구치 충전치아/치면, 영구치 상실치아/

치면

- 나) 치료 필요: 1치면 처치필요, 2치면 이상 처치필요, 인조치관 수복필요, 치수치료 및 수복필요, 발거치료 필요
- 다) 보철물 상태/임플란트 경험: 고정성가공의치 한 개, 고정성가공의치 두 개 이상, 국소의치, 고정성가공의치와 국소의치 공존, 총의치, 임플란트 개수
- 라) 보철물 필요: 고정성가공의치 필요단위 수, 국소의치 및 총의치 필요
- 마) 종합 판정: 충치치료 필요, 보철치료 필요, 스켈링 필요, 잇몸치료 필요, 발치 필요, 틀니 필요, 실란트 필요, 치경부 마모증
- 바) 구강 면접: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 최근 1년간 치통 경험 여부, 교정치료 경험 여부

- 구강건강 관련 의식 설문조사

- 가) 일반적 정보: 소속, 이름, 성별, 생년월일
 - 나) 구강건강 행태: 어제 하루 칫솔질 여부 및 시기, 사용 경험 구강관리용품, 치아 손상 경험 여부 및 이유, 최근 1년간 치은출혈경험 여부, 저작불편경험 여부, 발음불편경험 여부
 - 다) 치과의료이용: 최근 1년간 구강검진 여부, 최근 1년간 치과 진료 여부 및 항목, 최근 1년간 미충족치료필요 여부 및 원인
 - 라) 신체활동: 고강도 신체활동 일수 및 시간, 중강도 신체활동 일수 및 시간
 - 마) 흡연: 평생 흡연 경험 여부, 현재 흡연, 하루 평균 흡연량, 최근 1달 동안 흡연 일수, 흡연한 날 하루 평균 흡연량, 과거 흡연자의 과거 흡연 기간, 과거 흡연자의 하루평균흡연량, 금연 기간
 - 바) 음주: 평생 음주 경험 여부, 최근 1년간 음주 빈도
- 교육 및 경제활동: 최종학력, 가구소득, 직업, 근무경력, 근로 형태, 주당 평균 근로 시간, 주 근로 시간대

○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행태 심층 면접

- 일반적 정보: 소속, 이름, 성별, 생년월일
- 교육 및 경제활동: 최종학력, 직종, 취업 형태, 종사상지위, 정규직 여부, 주당 평균 근로 시간, 주 근로 시간대, 처음 (현재) 직종을 시작한 시기
- 건강 상태: 주관적 건강 수준, 주관적 구강건강 수준
- 구강건강 관련 행태
 - 가) 주관적 건강 인식,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
 - 나) 구강건강: 어제 하루 칫솔질 여부 및 시기, 어제 하루 근무 중 칫솔질 여부 및 시기, 이유, 치아 손상 경험 여부 및 이유
 - 다) 치과의료 이용: 최근 1년간 구강검진 여부 및 이유, 최근 1년간 치과 진료 여부 및 항목, 최근 1년간 미충족 치료 필요 여부 및 이유

(2) 조사 방법

○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 구강검진
 - 가) 기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3차 연도(2021) 검진 조사지침을 사용하여 구강검진 기준에 따라 구강검진 조사자를 사전에 교육 훈련한 후에, 예비조사를 시행하고, 예비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구강검진 조사자가 치경(Dental mirror)과 헤드램프를 이용하여 직접 구강 검사법으로 본 조사를 시행
 - 나) 조사자 교육훈련: 각 조사자는 구강검진 기준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받고 교육 훈련을 통해 검사 결과 일치도를 조사하여 조사투입 적합 여부를 판단한 후 조사를 진행
 - 다) 조사기구: 구강검진 조사는 이동식 검진 의자, 치경(Dental mirror)과 헤드램프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 기관에서 조사대상자의 치아를 직접 관찰하여 조사 결과를 기록

- 구강건강 관련 의식 설문조사

- 가) 설문 문항은 국민건강영양조사(2020) 건강 설문 조사항목을 중심으로 조사대
상자가 직접 읽고 응답할 수 있도록 서면 작성하고, 응답자는 서면 설문조사지
에 직접 표기
- 나) 설문조사지는 구강검진 전에 조사 대상 기관에 발송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배포
되도록 하고, 구강검진 당일 조사대상자가 조사팀에게 제출하여 수거

○ 심층 면접

- 질문지 구성은 이동노동자의 구강건강 인식 및 행태에 관련된 요인 및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문지를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
- 면접의 일관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훈련을 마친 연구원 1인
이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심층 면접을 진행. 면접에 참여하는 이동노동자가
본인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도록, 현 직종과 이전 직종을 확인하는
도입 질문으로 시작하고, 면접을 진행하면서 상황에 따라 추가 질문을 준비

○ 조사 진행

- 사전에 계획된 조사 일정에 따라 조사 대상 기관에 조사 일정 및 조사 협조 발송
- 각 조사 대상 기관 담당자와 유선 통화 후 정확한 조사 일정, 기관 방문 시간,
조사대상자 확인 및 조사 확정
- 조사 대상 기관에 연구대상자 설명서, 참여동의서, 설문지 발송
- 조사대상자에게 연구대상자 설명서, 참여동의서, 설문지를 배포
- 설명서, 참여동의서 및 설문지 수합
- 설명서의 확인 및 참여동의서의 참여 동의 여부 확인
- 조사팀이 조사 대상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구강 검사 시행 및 설명서, 참여동의
서, 설문조사지 회수

- 당일 참여희망자는 당일 설문지 배포 후 구강 검사 시행 및 설명서, 참여동의서, 설문조사지 회수
- 구강건강 실태조사 완료자 중 심층 면접에 동의한 참여자에게 면접 조사지에 따라 진행

5) 표본설계

(1) 표본추출틀

-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 2022년 8월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대리운전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퀵서비스 기사 명부를 표본추출틀로 사용
 - 대리운전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퀵서비스 기사의 이용 가능성이 있는 기관 리스트를 표본추출틀로 구성하고, 직종별로 통계산출이 가능하도록 대리, 택배, 배달로 구분하여 직종을 구성

(3) 표본 규모와 표본 추출 방법

-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 이번 연구는 기존에 시행된 바 없는 배달·배송·운전 종사자에 대한 구강 건강 실태 파악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대표치 산출의 의미보다는 본격적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전체 대상자의 0.1%에 해당하는 160명을 최종 조사대상자로 하되, 응답율 80%로 가정하고 200명에게 참여를 요청
-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행태 심층 면접
 -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참여자 중 심층 면접 참여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직종, 경력, 구강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직종별로 5명씩 선발

6) 질 관리체계

(1) 질 관리 목적

- 치과의사에 따라 개인의 구강건강 상태 평가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여러 조사자가 특정 인구집단의 상태를 평가하려면 진단 기준의 밀접한 유사성이 있어야 함. 따라서 본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팀 조사자의 일치된 임상적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훈련은 필수적임.
- 본 조사의 주된 관심사인 치아우식은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초기의 미세한 병적 변화에서부터 육안으로 구별되는 단계, 병적 변화가 정지된 상태 등 다양한 상태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단계별 진행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조사자 내(intra-examiner)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조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 검사 집중력, 시력과 촉각 등의 변화가 발생할 때 검사 결과는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는 서울시 이동노동자의 구강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검사이자,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 산출을 위하여, 타당하고 신뢰성 높은 자료 획득을 위한 질 관리는 매우 중요함.
- 따라서,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는 구강 검사 수행과 관련하여, 조사자 내 일치도가 높으며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 질 관리의 목적임.

(2) 질 관리 방법

- 본 조사의 질 관리 과정은 다음과 같음.
 - 과거 실태조사 조사항목 검토 및 전문가 자문
 - 검진 기록지 및 설문조사지 개발
 - 조사지침 검토
 - 조사자 교육 훈련(이론 교육 및 사진, 모형, 모의대상자 검사 훈련)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승인번호 KHSIRB-22-111-1(RA))

- 조사자 현장 지도(기준 조사자의 중복검사를 통한 일치도 확인 및 피드백)
- 자문위원 자문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조사 기록지 점검 실태조사

3.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비교 분석

1) 조사의 법적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표 1-3)

표 1-3 국민영 시행과 관련된 법

국민건강증진법(제18606호)

제16조(국민영양조사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조사등 국민의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국민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②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③ 국민영양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국민영양조사의 내용 및 방법 기타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조사목적

- 국민영은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전국 규모의 건강 및 영양조사임. 1998년부터 2005년까지 3년 주기로 시행하였으며, 국가통계의 시의성 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음. 본 조사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 수준,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 섭취 실태에 대한 국가 단위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갖춘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목표 설정 및 평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보건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임.

3) 조사의 체계

- 통계 종류: 일반·조사통계
- 수행 과정
 - 수행체계(그림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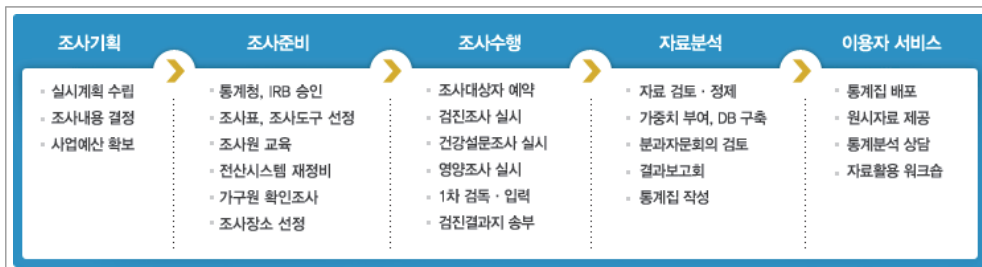
그림 1-21 질병관리청 국건영 수행체계



*출처: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

- 수행 과정(그림 1-22)

그림 1-22 질병관리청 국건영 수행 과정



*출처: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

4) 조사의 내용 및 방법

(1) 조사내용

- 가구원 확인 조사, 건강 설문조사, 검진 조사, 영양조사를 통해 조사자료를 수집
(표 1-4)

표 1-4 질병관리청 국건영 조사 분야별 조사내용

조사분야	조사내용 [제9기 1차년도(2022년) 조사 기준]
검진조사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신장질환, 빈혈, 구강질환, 악력, 체성분, 시력검사, 이비인후질환
건강설문조사	가구조사, 이환,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활동제한 및 삶의 질, 손상, 의료이용, 신체활동, 여성건강, 교육 및 경제활동, 비만 및 체중조절, 음주, 안전의식, 수면건강 및 정신건강, 흡연, 구강건강
영양조사	식품 및 영양소 섭취현황, 식생활행태, 식이보충제, 영양지식, 식품안전성, 수유현황, 이유보충식

(2) 조사 방법

- 건강 설문조사와 검진 조사는 이동검진 차량에서 실시하였으며, 영양조사는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음. 건강 설문조사의 교육 및 경제활동, 이환, 의료이용 항목과 영양조사의 전체 항목은 면접 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건강 설문조사 항목 중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 영역은 자기기입식으로 조사(그림 1-23)

그림 1-23 질병관리청 국건영 조사 방법



*출처: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

5) 표본설계

(1) 표본추출틀

○ 국건영의 표본추출틀은 표본설계 시점에서 가용한 가장 최근 시점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기본 추출 틀로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목표 모집단인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세 이상 국민에 대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제1기(1998)부터 제3기(2005)까지 국건영은 3년 주기 2~3개월 단기 조사체제로 실시하였으나 제4기(2007~2009)부터 연중조사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3개년도가 각기 독립적인 3개의 순환 표본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확률표본이 될 수 있도록 순환 표본조사(Rolling Sampling Survey)방식을 도입하였음.

(2) 표본 규모와 표본 추출 방법

- 매년 192개 지역의 25가구를 확률표본으로 추출하여 만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 조사
 - 총 576조사구, 13,248가구(연간 192조사구, 4,416가구)

6) 질 관리체계

- 질병관리청은 현장 수행 질 관리를 통해 조사지침서 개발, 조사원 교육, 현장 수행 질 관리, 조사 결과 평가 등을 시행하고, 시행이 끝나면 교육훈련 및 질 관리 결과 보고, 검사 결과 감독, 조사 수행체계 개선안 제시 등의 순서로 진행하고 있음(그림 1-24).

그림 1-24 질병관리청 국건영 질 관리체계



*출처: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

7) 자료 제공

(1) 원시자료

- 질병관리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통계법을 준수하여 조사자료에서 개인을 추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된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는 국건영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2) 학술연구자료

- 학술연구 등의 목적에 한해서는 제한공개자료(조사일, 조사지역)의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상세 연구계획서의 별도 제출, 정보보호 서약서 제출, 단계별 심의·조정·승인 절차 등이 완료된 연구 건별로 질병관리본부의 엄격한 자료 관리 하에 해당 자료의 제한적 활용이 허용됨.



제2장

조사 과정

- 01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 02 국민건강영양조사 비교 분석 자료



1.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1) 조사단의 구성

- 2022년도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단은 용역 계약 직후인 2022년 5월에 조사팀을 편성하였음.
- 조사단은 팀의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연구보조원 3인을 구성하여 현장 조사에 참여하였음(표 2-1).
- 조사팀은 1인의 치과의사와 3인의 보조 인력으로 구성하였으며, 보조 인력은 연구의 참여 의사가 있는 치과위생사를 우선으로 채용하였음(그림 2-1). 조사팀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표 2-2).

표 2-1 2022년도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단의 구성

구성	구성원 명	소속	직위
책임연구원	류재인	경희대학교	부교수
연구조원	박항아	경희대학교	박사과정
연구조원	탁나연	경희대학교	박사과정
연구조원	차은경	경희대학교	석사과정

그림 2-1 2022년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단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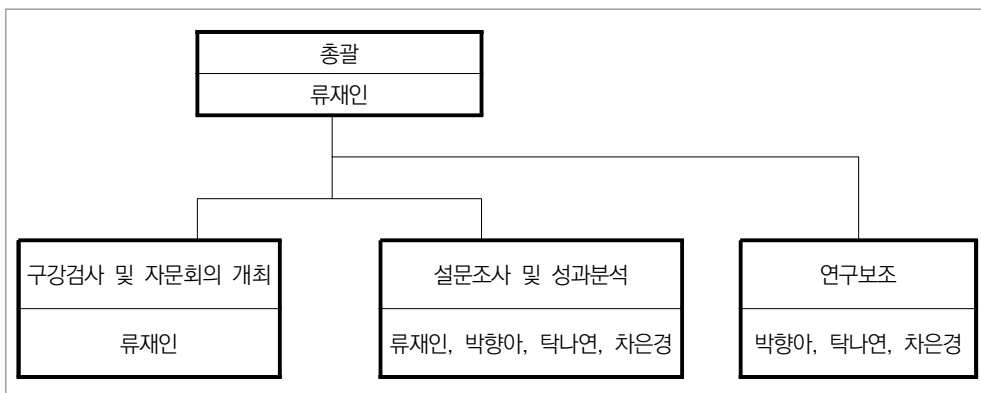


표 2-2 2022년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단의 역할

구성	역할
책임연구원	조사 업무 총괄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실태조사 및 현지 모니터링 대표성 확보를 위한 표본 설계 및 표본 추출 자료입력의 질 관리 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연구조원	조사 운영의 행정적 업무 및 조사팀 관리 지원 검진지침 및 방법에 의해 조사 참여 심층 면접 진행 자료입력의 질 관리 조사지 및 설문지, 면접 결과 분석 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연구 보조

2) 조사의 질 관리

(1) 조사자 교육·훈련

○ 교육·훈련 목적

- 2022년도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의 검진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현황과 의의에 대한 전반적 이해
-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치아 및 치주 상태 검진기준 교육
- 기준 조사자와 실태조사 검진조사원 간의 구강 검사 결과 일치도 확보
-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현장 실무 교육

○ 조사과정의 관리

- 조사과정 관리 목표는 첫째, 조사자들의 실무에 대한 체계가 미흡했을 시점에서 자체 현장 점검을 통해 조사팀의 검진 체계에 개선을 도모하고, 둘째, 조사에 대한 적응으로 빠뜨리기 쉬운 부분에 관해서 확인하고, 조사의 변경 등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혼동이 없는지를 관리하고, 셋째, 조사팀의 사기 고조와 조사에 임했던

순서와 방식에 맞추어 마지막까지 균일한 검진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자 함(표 2-3).

표 2-3 2022년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조사과정 자체 점검표

No	분류	세부 문항	평가
1	검진 전 준	운영관리팀에서 지정해준 날짜에 해당 기관이 가능한 것인지 재확인하였는가?	
2		사전에 설문지 및 동의서가 도착했음을 확인하였는가?	
3		예상 인원 및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였는가?	
4		예상 인원에 맞추어 필요한 기구를 준비하였는가? (필요한 물품 : 기자재 및 일회용 미러와 소모품)	
5	비 사 항	기록부의 ID 및 일련번호를 사전에 기입해 놓았는가?	
6		조사팀장과 일정에 대하여 사전 상의하였는가?	
7		검진 기관 내 검진 장소와 진료대를 설치할 장소를 확인하였는가?	
8		검진 장소로 갈 교통수단을 확인하였는가?	
9	검 진 시 주 의 사 항	검진할 장소를 확인하고, 진료대를 설치하였는가?	
10		조사대상자들을 검진 순서에 맞추어 정렬하였는가?	
11		1인당 검진 시간을 5분 이내로 소요하였는가?	
12		검진을 종료한 대상자들은 검진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는가?	
13		소모품 및 일회용 기구를 폐기용 봉투에 보관하였는가?	
14		검진 후 남은 도구 및 소모품을 빠짐없이 정돈하였는가?	
15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조취를 해놓았는가?	
16	검 진 후 점 검 사 항	당일 검진 일정 중 발생한 영수증을 빠짐없이 보관하였는가?	
17		검진지 및 설문지가 조사자 수와 동일하며 일련번호를 확인하였는가?	
18		검진지의 사진을 누락 없이 순서대로 찍었는가?	
19		사진으로 저장한 검진지 및 기타 자료를 웹하드에 업로드하였는가?	
20		설문지를 운영관리팀에게 보냈거나, 보내기 이전에 보완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였는가?	
21		다음 일정에 대하여 확인하고, 조사팀장과 상의하였는가?	

○ 생명윤리 및 안전 검토

- 2012년 2월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 2월부터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 IRB)의 심의받도록 의무화함(표 2-4, 2-5).

표 2-4 구강건강 실태조사 심의와 관련된 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7783호)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

- ① 인간대상 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852호)

제13조(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

-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한다.
 - 1.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 가.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侵襲的)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 나.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
 - 라.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 2. 연구대상자들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들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 3.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구 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2호더목에 따른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 제2호더목에 따른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Vulnerable Subjects)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6조(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 ①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체유래물 기증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

-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는 다음 각 호의 연구로 한다.
 - 1.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은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연구
 - 가.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이하 “인체유래물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구로서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연구
 - 나.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

- 다.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가공된 연구재료(병원체, 세포주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연구
- 라.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연구. 다만,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제외한다.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
- 3.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용위원회에 연구 종료 전 연구의 진행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39호)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Vulnerable Subject)"라 함은 임상시험 참여와 연관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 위계의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하여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피험자(예: 의과대학·약학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의 학생, 병원 또는 연구소 근무자, 제약회사 직원, 군인, 수감자)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 시행규칙에서 정한 집단시설에 수용 중인 자, 실업자, 빈곤자,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 소수 인종, 부랑자, 난민, 미성년자, 자유의지에 의해 동의를 할 수 없는 피험자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2-5 구강건강 실태조사 동의와 관련된 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7783호)

- 제16조(인간대상연구의 동의)
- ① 인간대상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 1. 인간대상연구의 목적
 - 2. 연구대상자의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 3.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5.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 6.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7. 동意的 철회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기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대상자가 참여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 1. 법정대리인
 - 2.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

-
- 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 ④ 인간대상연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권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 조사 대상

(1) 조사 대상의 정의

○ 목표 모집단

- 2022년 서울시에서 이동노동자(대리운전원,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음식 배달원)로 근무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전체

○ 조사 모집단

- 2022년 조사 시점의 서울시에서 이동노동자(대리운전원,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음식 배달원)로 근무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조사 모집단으로 하였음.

(2) 조사대상자 수

○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 참여율은 전체 대상자 수 209명 중 조사에 동의한 참여자 수는 204명(참여율 97.6%)이었음. 이 중 직종별로는 대리 95.5%, 택배/퀵 100%, 배달 96.8%였음 (표 2-6).

표 2-6 2022년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참여율

	전체		
	대상자 수	참여자 수	참여율(%)
전체	209	204	97.6
직종			
대리	66	63	95.5
택배/퀵	81	81	100
배달	62	60	96.8

○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행태 심층 면접

-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참여자 중 심층 면접 참여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직종, 경력, 구강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직종별로 5명씩 선발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리 5명, 택배/퀵 5명, 배달 5명, 총 15명의 이동노동자가 심층 면접을 참여하였음.
- 심층 면접 참여에 동의한 총 37명을 대상으로, 직종, 경력, 구강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직종 별 5명씩 총 15명(참여율 40.5%)을 최종 선정함. 각 직종별 참여율은 대리 50.0%, 택배/퀵 55.6%, 배달 29.4%였음(표 2-7).

표 2-7 2022년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행태 심층 면접 참여율

	전체		
	대상자 수	참여자 수	참여율(%)
전체	37	15	40.5
직종			
대리	10	5	50.0
택배/퀵	9	5	55.6
배달	17	5	29.4

표 2-8 2022년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행태 심층 면접 참여자 명단

일련번호	이름	직종	나이
1	김○○	배달	50 세
2	정○○	배달	64 세
3	김○○	택배/퀵	69 세
4	현○○	택배/퀵	57 세
5	천○○	대리	60 세
6	전○○	대리	60 세
7	하○○	대리	53 세
8	선○○	배달	52 세
9	이○○	택배/퀵	61 세
10	최○○	대리	68 세
11	김○○	배달	56 세
12	길○○	배달	46 세
13	이○○	택배/퀵	61 세
14	우○○	택배/퀵	61 세
15	진○○	대리	62 세

4) 조사 기간

(1)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 조사 기간: 2022년 8월~11월 4개월 동안 검진을 시행
- 조사 일정: 1일에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기관 각 2개씩 가능

(2)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행태 심층 면접

- 면접 기간: 2022년 8월 3주, 11월 2주 2차례로 나누어 시행

5) 조사 물품

(1)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 구강 검사 용품(그림 2)

- 장비: 이동용 Unit Chair 1대, Head lamp 1대
- 기구: 1회용 치경, 설압자

그림 2-2 구강 검사 용품



○ 감염 방지용품(그림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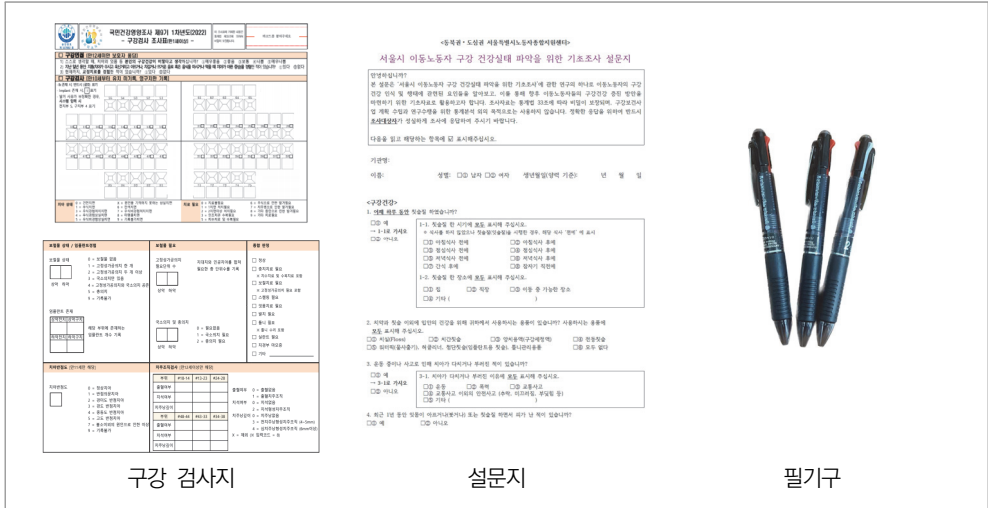
- 조사팀 : 마스크, 글러브

그림 2-3 감염방지 용품



○ 현장 자료입력 도구(그림 2-4)
- 구강 검사지, 설문지, 필기구

그림 2-4 현장 자료입력 도구



○ 기념품(그림 2-5)
- 구강 관리 용품(칫솔, 치약, 혀클리너, 치간칫솔 세트)

그림 2-5 기념품



(2)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행태 심층 면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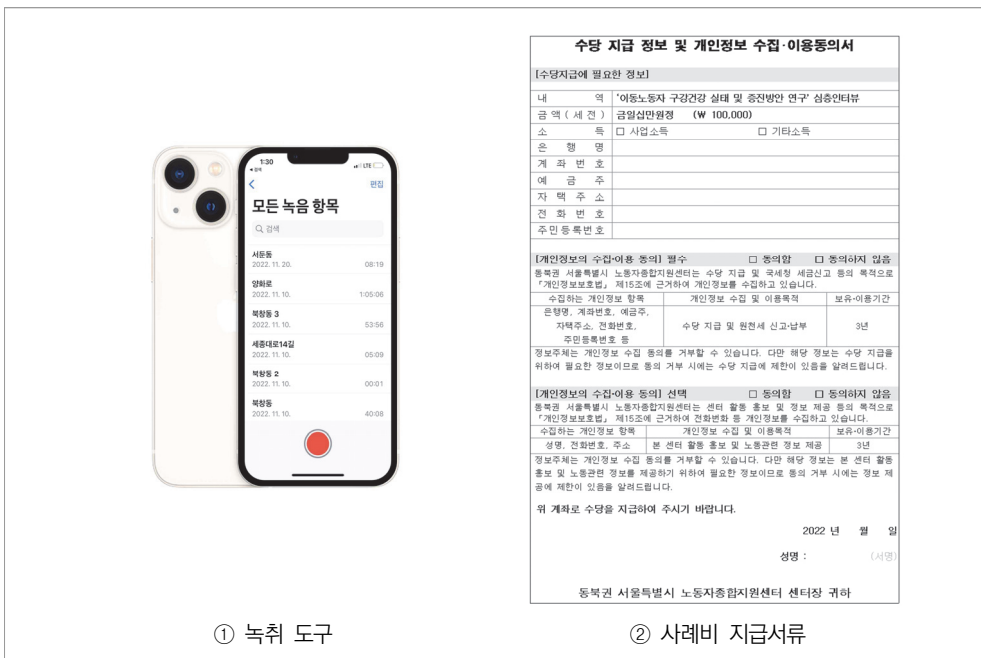
○ 녹취 도구(그림 2-6①)

- 심층 면접 녹취를 위해 녹음기능이 탑재된 휴대폰 사용

○ 사례비(그림 2-6②)

- 심층 면접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10만 원의 사례비를 지급하였음.

그림 2-6 심층 면접 관련 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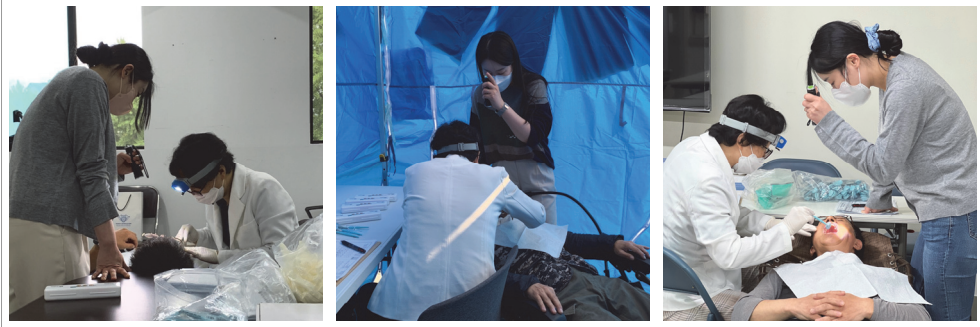


6) 조사 방법

(1)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 구강검진 기준은 국건영 제8기 3차 연도(2021) 검진 조사지침을 사용하여 구강검진 기준에 따라 구강검진 조사자를 사전에 교육 훈련한 후에, 예비조사를 시행하였고, 예비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구강검진 조사자가 치경과 헤드램프를 이용하여 직접 구강 검사법으로 본 조사를 시행하였음(그림 2-7).

그림 2-7 구강 검사



- 설문조사지는 사전 또는 현장에서 배포하여 대상자가 직접 읽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연구보조원이 대상자별로 응답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여 빠짐없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음(그림 2-8).

그림 2-8 설문조사



(2)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행태 심층 면접

- 모두 일대일 개별 면접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각 센터에 사전 동의를 얻어 조용하고 분리된 회의실 공간에서 수행됨. 심층 면접 시작 전 참석자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대화 녹음에 대한 동의를 받아 모든 면접 내용을 음성 기록하였음(그림 2-9).

그림 2-9 심층 면접



7) 조사항목

(1)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 구강건강 상태 지표

- 구강건강 상태

가) 영구치우식경험율

정의	치아에 발생된 우식증(충치)이 있거나, 충치치료를 받았거나, 충치로 인해 치아를 상실한 경험이 있는 분율
분자	우식증(충치)이 있거나, 충치치료를 받았거나, 충치로 인해 치아를 상실한 경험이 있는 사람 수
분모	만 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나) 영구치우식유병율

정의	치료를 완료하지 않거나 발거하지 않은 영구치 치아우식증(충치)을 현재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분율
분자	영구치우식증(충치)을 현재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 수
분모	만 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다) 현존 자연치아 수

정의	한 사람당 보유하고 있는 자연치아 수(평균)
분자	자연치아 수의 합(제3대구치 포함)
분모	만 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라) 20개 이상 치아 보유율

정의	20개 이상의 자연치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분율
분자	20개 이상의 치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수(제3대구치 포함)

분모	만 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	------------------

마) 무치악자율	
정의	자연치아를 모두 발거하여 현존 치아수가 0개인 분을
분자	자연치아를 모두 발거하여 현존 치아수가 0개인 사람 수
분모	만 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바) 저작 불편 호소율	
정의	현재 치아나 틀니, 잇몸 등 입안의 문제로 인해 저작 불편을 느낀 분을
분자	현재 치아나 틀니, 잇몸 등 입안의 문제로 인해 저작이 '매우 불편하다' 또는 '불편하다'라고 응답한 사람 수
분모	만 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 보철물 상태

가) 의치 보유자율	
정의	상악/하악/상하악에 국소의치, 고정성가공의치 및 국소의치, 전부의치를 가진 사람의 비율
분자	상악/하악/상하악에 국소의치, 고정성가공의치 및 국소의치, 전부의치를 가진 사람 수
분모	만 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나) 임플란트 보유자율	
정의	상악/하악/상하악에 임플란트 보철물을 가진 사람의 비율
분자	상악/하악/상하악에 임플란트 보철물을 가진 사람 수
분모	만 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 치과 진료 필요상태

가) 의치 필요자율	
정의	상악/하악/상하악(양악 중 1악 및 양악)에 3단위 이상의 고정성 가공의치 또는 국소의치 또는 총의치가 필요한 사람의 비율
분자	상악/하악/상하악(양악 중 1악 및 양악)에 3단위 이상의 고정성 가공의치 또는 국소의치 또는 총의치가 필요한 사람 수
분모	만 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나) 치면세마 필요자율	
정의	치면세마(치석 제거) 이상의 치주질환(잇몸병) 치료가 필요한 분을
분자	치면세마(치석 제거) 이상의 치주질환(잇몸병) 치료가 필요한 사람 수
분모	만 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다) 발치 필요자율	
정의	발거 필요 영구치를 보유한 사람의 비율
분자	발거 필요 영구치를 보유한 사람 수
분모	만 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라) 치아 외상 경험자율	
정의	치아 외상을 경험(현재 손상상태 또는 치료)한 사람의 비율
분자	1개 이상의 치아에 치아 외상을 경험(현재 손상상태 또는 치료)한 사람의 수
분모	만 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마) 치아 외상 치료 경험자율	
정의	치아 외상 치료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
분자	치아 외상 치료를 경험한 사람의 수
분모	만 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 구강건강 의식 지표

- 구강건강 인식 상태

가)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	
정의	자신에 대한 구강건강 인식 수준별 응답자의 비율
분자	자신에 대한 구강건강 인식 수준별 응답자의 수
분모	만 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 구강건강행태

가) 칫솔질 실천율	
정의	어제 하루 동안 시기별 칫솔질을 실천한 비율
분자	어제 하루 시기별 칫솔질을 실천한 사람 수
분모	만 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나) 일일 칫솔질 횟수	
정의	어제 하루 동안 칫솔질을 실천한 횟수(평균)
분자	어제 하루 동안 칫솔질을 실천한 횟수
분모	만 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다) 구강 보조용품 사용률	
정의	최근 1주일간 치약과 칫솔을 제외한 구강 위생용품 종류별 사용 응답자의 비율
분자	최근 1주일간 치약과 칫솔을 제외한 구강 위생용품 종류별 사용 응답자의 수
분모	만 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 건강행태

가)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정의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응하는 시간을 실천한 분율
분자	중강도 신체활동 시간이 150분 이상이거나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이 75분 이상이거나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 시간을 합해서 주당 150분(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과 동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 수
분모	만 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나) 평생 흡연율	
정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반담배(궐련)를 5갑(100개비) 이상 피운 분율
분자	평생 일반담배(궐련)를 5갑(100개비) 이상 피워본 사람 수
분모	만 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다) 현재 흡연율	
정의	평생 일반담배(궐련)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일반담배(궐련)를 피우는 분율
분자	평생 일반담배(궐련)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일반담배(궐련)를 피운다고 응답한 사람 수
분모	만 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라) 월간 음주율	
정의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분율
분자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수
분모	만 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 치과의료 이용실태

가) 구강 검진율	
정의	최근 1년 이내 치료목적이 아닌 순수검진 목적으로 구강검진을 받은 분율
분자	최근 1년 이내 치료목적이 아닌 순수검진 목적으로 구강검진을 받은 사람 수
분모	만 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나) 치과 진료율	
정의	최근 1년 이내 구강 진료 경험이 있는 사람의 분율
분자	최근 1년 이내 구강 진료 경험이 있는 사람 수
분모	만 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다) 연간 미충족 의료율(치과)	
정의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치과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비율
분자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치과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사람 수
분모	만 19세 이상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치과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던 사람 수

라) 미충족 의료 이유(치과)	
정의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치과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경우의 미충족 의료 이유 분포
분자	미충족 의료 이유별 응답자 수
분모	만 19세 이상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치과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던 사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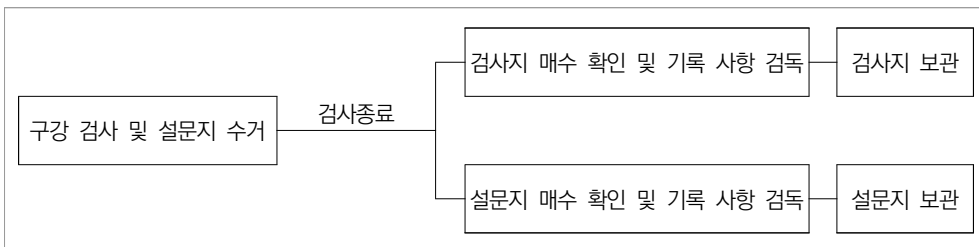
8) 조사입력 및 분석

(1)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 입력자료 준비

- 구강 검사지와 설문지를 자체 입력할 수 있는 상황으로 준비하여 교육훈련 기간 중 교육하고 기록지는 조사팀에서 보관함(그림 2-10).

그림 2-10 2022년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입력자료 준비 및 보관



○ 입력자료 입력 형식 제작

- 검진 기록지와 설문지의 입력 오류 감소 및 입력 편의 증대를 위해 검진 기록지 및 설문지 입력 양식을 제작하여 작업하도록 함.

○ 입력자 교육훈련

- 입력자들에게 입력방식과 백업방식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입력에 임하도록 함.

○ 입력환경

- 데스크탑 컴퓨터를 갖추어 입력환경을 조성함.

○ 입력업무 수행 과정

- 자료입력 업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함.
 - 가) 조사일지와 조사지 매수 일치 여부 확인
 - 나) 데이터 입력
 - 다) 입력 시 조사지 내 글씨 등이 불량하여 판독이 어려운 경우 조사자에게 연락하여 확인 요청
 - 라) 일일 데이터 입력 종료 후에는 입력 결과자료 백업작업 수행

○ 분석 방법

-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구치우식경험률, 영구치우식유병률, 현존 자 연치아 수, 20개 이상 치아 보유율, 저작불편호소율, 무치악자율을 분석하였으며, 구강건강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율, 일일 칫솔질 횟수, 연간미충족 의료율(치과)을 분석하였음. 사회경제적 요인 및 건강 및 행태 관련 변수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Chi-square test), 비모수인 일표본 Kolmogorov-Smirnov 검정을 통해 비모수 여부를 확인한 후 Mann-Whitney U 검정, K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였음. SPSS(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ence 25.0. SPSS Inc.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alpha=0.05$ 로 설정함.

(2)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행태 심층 면접

○ 면접 결과 전사

- 심층 면접 과정에 기록한 음성 녹음파일을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 빠짐없이 전사하였고, 이를 2명의 연구진이 2차례에 걸쳐서 검토하여 완성하였음.

○ 면접 결과 분석

- 전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Strauss & Corbin 근거이론(Grounded theory)에 기초하여 질적 분석을 시행하였음.

9) 조사 경과

(1)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 조사 대상 기관 섭외과정

- 전체 조사 대상 기관별 조사 일정을 사전에 결정하여 조사가 누락 되는 기관이 없도록 조사 일정을 결정하였음.
- 1차 섭외는 도심권 및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협조하여 조사 대상 기관, 조사 일정, 조사자 및 조사보조원 이름 등을 통보하고 조사 참여를 협조하는 공문을 보냈음.
- 2차 섭외는 선정된 조사 대상 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참여 여부를 확인 후 조사 일정을 확정하였음.
- 3차 섭외는 조사 일정이 맞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한 조사 대상 기관을 상대로 유선 통화를 통해 조사 일정을 조정하거나 조사 참여를 재협조 요청하였음.

○ 조사 완료 기관

-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섭외를 진행하였음.
- 각 조사 대상 기관별 조사 완료 여부는 다음 표와 같음(표 2-9).

표 2-9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대상 기관

기관	직종			전체	
	대리	택배	배달	n	분율
	n	n	n	n	분율
동남권 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	-	8	8	3.9
동북권 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	-	11	11	5.4
강서휴신타	-	-	6	6	2.9
휴서울이동노동자 서초신타	17	-	6	23	11.3
휴서울이동노동자 북창신타	-	9	-	9	4.4
휴서울이동노동자 합정신타	-	34	3	37	18.1
여의도 노총회관	-	13	-	13	6.4
강서양천민중의집	-	-	3	3	1.5
롯데택배 서울동부지점	-	11	-	11	5.4
성남시 이동노동자신타	7	-	3	10	4.9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5	-	-	5	2.5
대부도 라이더유니온 워크샵	-	-	20	20	9.8
장교빌딩	-	21	-	21	10.3
전태일다리	-	27	-	27	13.2

○ 조사 미완료 사유

- 대부분의 사유는 조사 대상 기관의 조사 협조 불응 및 미동의로써 섭외과정에서 전화 면담으로 전체 조사 대상 기관을 2회 이상 섭외를 시도하였으나, 구강검진에 대한 인식, 일정상 협조 불가 등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기관이 많았음.
- 낮은 구강검진 인식에 따른 거부: 조사대상자의 구강검진 인지도가 낮고, 협조의 필요성 및 조사의 당위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있어, 부정적인 태도로 협조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
- 조사의 자율성으로 인한 거부: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는 이동노동자의 업무시간을 대체하여 진행하므로, 양해를 구하고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이동노동자는 업무시간이 불규칙하고 항상 업무 대기 중이라서 업무가 발생하면 즉시 이동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이와 같은 사유로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기 힘들며, 조사대상자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기에 강제적으로 조사에 임하기가 어려웠음.

2. 국민건강영양조사 비교 분석 자료

1) 조사 대상

(1) 조사 대상의 정의

○ 목표 모집단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세 이상 국민 전체

○ 조사 모집단

- 제7기 1차 연도(2016)부터 조사구는 192개로 표본 조사구 내에서 양로원, 군대, 교도소 등의 시설이나 외국인 가구 등을 제외한 적절 가구 중 계통추출법을 이용하여 23개 표본 가구를 선정하였음.
- 표본 가구 내에서 적정가구원 요건을 만족하는 만 1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음.

(2) 조사대상자 수

- 제7기(2016-2018) 참여가구수는 10,611가구, 참여자는 24,269명

2) 조사 기간

○ 조사 기간

- 2016년도~2018년도

○ 조사 일정

- 1~12월 (12개월)

3) 조사항목

(1) 구강건강 상태 지표

○ 기본지표

- 구강건강 상태: 20개 이상 치아보유율, 무치악자율은 2022년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지표와 함께 조사되었음.
- 보철물 상태: 의치보유자율, 임플란트보유자율은 2022년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지표와 함께 조사되었음.
- 치과진료필요자율: 의치필요자율, 치면세마필요자율, 발치필요자율, 치아손상경험률, 치아손상경험원인(교통사고)은 2022년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지표와 함께 조사되었음.
- 구강건강 인식상태: 주관적구강건강인식(좋음)은 2022년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지표와 함께 조사되었음.
- 구강건강 행태: 구강보조용품사용률은 2022년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지표와 함께 조사되었음.
- 건강행태: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평생흡연율, 월간음주율은 2022년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지표와 함께 조사되었음.
- 치과의료 이용실태: 연간구강검진율, 연간치과진료율은 2022년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지표와 함께 조사되었음.

○ 심화 지표

- 구강건강 상태: 영구치우식경험률, 영구치우식유병률, 현존 자연치아 수, 저작불편 호소율은 2022년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지표와 함께 조사되었고, 치주질환유병률은 심화 지표로 사용되었음.

가) 치주질환유병률	
정의	치주조직병치료 이상의 치주질환(잇몸병) 치료가 필요한 분을
분자	현재 치주조직병치료 이상의 치주질환(잇몸병) 치료가 필요한 사람 수
분모	만 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 구강건강 행태: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율, 일일 칫솔질 횟수는 2022년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지표와 같게 조사되었음.
- 치과의료 이용실태: 연간 미충족 치과 의료율, 미충족 치과 의료 발생 원인 중 경제적 이유는 2022년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지표와 같게 조사되었음.

4) 조사분석

(1) 복합표본 자료 분석

- 국건영 표본설계는 단순 임의 표본설계(Simple random sampling)가 아닌 2단계 층화 집락 표본설계(Two-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를 이용하여 추출되었으므로, 자료 분석 시 이러한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ing) 내용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국건영 자료 분석에서 사용하는 층(변수명 kstrata)은 분산 추정 등을 목적으로 설계층을 통합한 것이고, 집락(변수명 psu)은 표본설계 시 1차 추출단위에 해당함.

(2) 분석 방법

- 국건영 제7기(2016-2018) 원시자료의 표본설계 방법을 고려하여 적절한 가중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 분석 시 복합표본분석을 사용하였음.
- 적절한 가중치의 반영을 위해 분석계획 파일 작성 시 계획변수 내 층화 변수는 분산 추정 등을 목적으로 설계 층을 통합한 ‘분산 추정층’과 ‘19세 이상(성인)’을 기본적으로 이용하였으며, 집락 변수는 표본설계 시 1차 추출단위에 해당하는 ‘조사구’를, 가중치는 ‘구강 조사 가중치’를 이용하였음. 최종적으로 작성된 분석계획 파일을 기반으로 통합 가중치를 생성해 자료 분석을 시행함.
- 성인 이동노동자 관련 직종의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 및 비교하기 위해 영구치우식경험률, 영구치우식유병률, 치주질환 유병률, 저작불편 호소율, 현존 자연치아수를 분석하였으며, 구강건강 인식을 확인 및 비교하기 위해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율, 일일 칫솔질 횟수, 연간 미충족 의료율(치과)을 분석하였음. 사회경제적 요인 및 건강 및 행태 관련 변수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복합표본 빈도분석(Complex sample frequency analysis)과 복합표본 교차분석(Complex sample chi-square test) 시행하였음. SPSS(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ence 25.0. SPSS Inc.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alpha=0.05$ 로 설정함.

5) 비교 분석을 위한 직업군 분류

(1) 국건영 내 직업 구분에 따른 이동노동자 직업의 분류

○ 국건영 내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분류(표 2-10)

- 관련: 5 기능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 단순 노무 종사자
- 비교: 3 사무 종사자

표 2-10 국건영 및 한국표준직업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내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의 분류

국건영 직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직업재분류 및 실업/비경제활동상태 코드	대분류/세세분류
2 사무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5 기능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87393 대리운전원
6 단순노무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 9222 택배원
	└····· 9223 음식 배달원

(2)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 따른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의 정의

-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Plant, Machine Operators and Assemblers):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대규모적 이고 때로는 고도의 자동화된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조작하고 부분품을 가지고

제품을 조립하는 업무로 구성. 작업은 기계 조작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의한 기계제어 등 기술적 혁신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기계 및 장비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요구되며, 기계의 성능이 생산성을 좌우함. 또한 여기에는 운송장비의 운전 업무도 포함.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직업 대부분은 제2수준의 직무능력이 필요함.

- 87393 대리운전원: 자가용 운전자를 대리하여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자를 말함.

- 9 단순 노무 종사자(Elementary Workers): 주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 대부분 직업이 몇 시간 혹은 몇십 분의 직업 내 훈련(On the Job Training)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제1수준의 직무능력이 필요함. 단순노무직 내부에서의 직업이동은 일부 직업에서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한 체력이 문제 되는 점을 제외하고, 직무 자체로만 본다면 상대적으로 매우 쉬운 편이라 할 수 있음.

- 9222 택배원: 고객이 주문 및 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 및 수화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하여 줌.

- 9223 음식 배달원: 각종 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요리를 특정 장소까지 배달하는 자. 음식 배달을 위해 포장 용기나 식기를 준비하거나 배달 장소에 가서 음식값을 받고 거스름돈을 내주는 등 각종 음식점 등에서 배달하기 위해 발생하는 부가적인 업무를 함께 수행하기도 함.

(3) 이동노동자 관련 직종과의 비교를 위한 직업군의 선정

- 3 사무 종사자(Clerks):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경영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추진을 수행하며, 당해 작업에 관련된 정보(Data)의 기록, 보관, 계산 및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 또한 금전 취급 활동, 법률 및 감사, 상담, 안내 및 접수와 관련하여 사무적인 업무를 수행.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직업 대부분은 제2수준의 직무능력이 필요하며 문서처리가 주 직무.



제3장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상태 및 행태 분석 결과

01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 분석 결과

1.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 분석 결과

1) 구강건강 상태 조사 결과

(1) 일반적 특성

-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의 대상자는 서울시 일부 지역에 근무하는 대리, 택배, 배달 직종 종사자 중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치아 건강 상태를 보고하였음.
 - 전체결과 및 직종별 결과는 성별(남/여), 연령(4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교육 수준(고졸 이하, 대졸 이상), 월간음주율(있음/없음), 평생흡연 여부(있음/없음), 신체활동 실천 여부(실천안함/실천함), 최근 1년간 구강검진 여부(아니오/예) 별로 집계되어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음.

- 조사대상자의 분포는 전체 204명, 대리 63명(30.9%), 택배 81명(39.7%), 배달 60명(29.4%)이었음(표 3-1).
 - 성별에서 여성의 경우 전체적으로 2.5%(5명)로 참여 성별의 대부분이 남성 97.5%(199명)이었음. 연령은 전체적으로 50대 33.8%(69명), 60대 이상 31.9%(65명), 40대 20.6%(42명), 40대 이하 13.7%(28명) 순으로 나타났고, 직종별로 대리와 택배는 50대 이상이 많았고, 배달은 40대가 많았음($p < 0.001$). 교육 수준은 전체적으로 고졸 이하가 55.4%(113명)로 대졸 이상보다 약간 더 많았고, 직종별로 대리는 대졸 이상이 66.7%(42명), 택배는 고졸 이하가 76.5%(62명)로 높게 나타났음($p < 0.001$). 월간 음주 경험 여부는 전체적으로 있음 67.6%(138명), 없음 31.9%(65명)이었고, 대리는 있음 55.6%(35명), 택배 있음 70.4%(57명), 배달 있음 78.0%(46명)으로 높았음($p = 0.025$). 전체적으로 평생 흡연 경험 있음 73.0%(149명), 신체활동 실천안함 76.5%(156명)이었으며, 최근 1년 구강검진 안함 50.5%(103명)이었고, 직종별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음.

(2) 구강건강 상태

○ 영구치우식경험률

-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영구치우식경험률을 전체 92.6%이었고, 직종별로는 대리 92.1%, 택배 90.1%, 배달 96.7%이었음. 연령은 전체적으로 40대(100%)가 가장 높았고, 40대 이하(96.4%), 50대(92.8%) 순으로 나타났음($p=0.047$)(표 3-2).

○ 영구치우식유병률

-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영구치우식유병률은 전체 43.6%이었고, 직종별로는 대리 41.3%, 택배 38.3%, 배달 53.3%이었음(표 3-3). 월간음주율은 택배 직종에서 있음(45.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p=0.036$). 신체활동은 택배 직종에서 실천안함(45.0%)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p=0.035$). 최근 1년 구강검진은 택배 직종에서 아니오(50.0%)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p=0.018$).

○ 현존 자연치아 수

-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자연치아 수는 전체평균 24.7개이었고, 직종별로는 대리 23.7개, 택배 23.9개, 배달 26.7개이었음($p=0.025$)(표 3-4). 연령은 전체적으로 40대 이하(28.2개)가 가장 많았고, 40대(25.4개), 50대(25.2개) 순으로 나타났음($p<0.001$). 배달 직종에서 40대 이하(29.1개)가 가장 많았고, 50대(26.6개), 40대(25.6개) 순으로 나타났음($p<0.001$). 월간음주율은 전체적으로 있음(25.4개)이 많게 나타났고($p=0.004$), 택배 직종에서도 있음(25.4개)이 많게 나타났음($p=0.003$).

○ 20개 이상 치아 보유율

-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20개 이상 치아 보유율은 전체 85.3%이었고, 직종별로는 대리 84.1%, 택배 79.0%, 배달 95.0%이었음($p=0.028$)(표 3-5). 연령은 전체적으로 40대 이하(100%)가 가장 높았고, 40대(90.5%), 50대(88.4%) 순으로 나타났음($p=0.001$).

로 나타났음($p=0.002$). 월간음주율은 택배 직종에서 있음(86.0%)이 높게 나타났음($p=0.018$).

○ 무치악자율

-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무치악자율은 전체 2.0%이었고, 직종별로는 대리 3.2%, 택배 2.5%, 배달 0.0%이었음(표 3-6). 연령은 전체적으로 60대 이상(6.2%)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p=0.033$). 최근 1년 구강검진은 전체적으로 아니오(3.9%)가 높게 나타났음($p=0.045$).

○ 저작불편 호소율

-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저작불편 호소율은 전체 33.3%이었고, 직종별로는 대리 34.9%, 택배 38.3%, 배달 25.0%이었음(표 3-7). 연령은 전체적으로 60대 이상(46.2%)이 가장 높았고, 50대(34.8%), 40대(31.0%) 순으로 나타났음($p=0.001$). 택배 직종에서 60대 이상(51.4%)이 가장 높았고, 40대(41.7%), 50대(28.0%) 순으로 나타났음($p=0.042$). 배달 직종에서 60대 이상(60.0%)이 가장 높았고, 40대(32.0%), 50대(30.0%) 순으로 나타났음($p=0.040$). 교육 수준은 전체적으로 고졸 이하(39.8%)가 높게 나타났고($p=0.028$), 택배 직종에서도 고졸 이하(46.8%)가 높게 나타났음($p=0.004$).

(3) 보철물 상태

○ 의치 보유자율

-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의치 보유자율은 전체 40.2%이었고, 직종별로는 대리 41.3%, 택배 46.9%, 배달 30.0%이었음(표 3-8). 연령은 전체적으로 60대 이상(56.9%)이 가장 높았고, 40대(40.5%), 50대(37.7%) 순으로 나타났음($p<0.001$). 택배 직종에서 60대 이상(62.2%)이 가장 높았고, 50대(48.0%), 40대(25.0%) 순으로 나타났음($p=0.008$). 배달 직종에서 40대(48.0%)가 가장 높았

고, 60대 이상(40.0), 50대(30%) 순으로 나타났음($p=0.018$). 교육 수준은 전체적으로 고졸 이하(47.8%)가 높게 나타났음($p=0.014$). 평생흡연은 택배 직종에서 있음(54.4%)이 높게 나타났음($p=0.038$).

○ 임플란트 보유자율

-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임플란트 보유자율은 전체 19.1%이었고, 직종별로는 대리 23.8%, 택배 19.8%, 배달 13.3%이었음(표 3-9). 월간음주율은 택배 직종에서 없음(37.5%)이 높게 나타났음($p=0.009$).

(4) 치과 진료 필요자율

○ 의치 필요자율

-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의치 필요자율은 전체 40.2%이었고, 직종별로는 대리 42.9% 택배 48.1%, 배달 26.7%이었음($p=0.032$)(표 3-10). 연령은 전체적으로 50대(56.9%)가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46.2%), 40대(35.7%) 순으로 나타났음($p=0.003$). 배달 직종에서 60대 이상(80.0%)이 가장 높았고, 50대(30.0%), 40대(28.0%) 순으로 나타났음($p=0.017$). 교육 수준은 택배 직종에서 고졸 이하(54.8%)가 높게 나타났음($p=0.029$).

○ 치면세마 필요자율

-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치면세마 필요자율은 전체 71.6%이었고, 직종별로는 대리 76.2% 택배 64.2%, 배달 76.7%이었음(표 3-11). 신체활동은 택배 직종에서 실천안함(71.7%)이 높게 나타났음($p=0.018$). 최근 1년 구강검진은 전체적으로 아니오(80.6%)가 높게 나타났고($p=0.004$), 배달 직종에서도 아니오(96.3%)가 높게 나타났음($p=0.001$).

○ 발치 필요자율

-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발치 필요자율은 전체 31.9%이었고, 직종별로는 대리 30.2% 택배 29.6%, 배달 36.7%이었음(표 3-12). 교육 수준은 대리 직종에서 고졸 이하(47.6%)가 높게 나타났음($p=0.033$).

○ 치아 손상 경험률

-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치아 손상 경험률은 전체 27.0%이었고, 직종별로는 대리 30.2%, 택배 19.8%, 배달 33.3%이었음(표 3-13). 월간음주율은 택배 직종에서 있음(26.3%)이 높게 나타났음($p=0.022$).

○ 치아 손상 경험 원인(교통사고)

-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치아 손상 경험 원인(교통사고)는 전체 20.0%이었고, 직종별로는 대리 15.8%, 택배 6.3%, 배달 35.0%이었음(표 3-14). 연령은 대리 직종에서 60대 이상(42.9%)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p=0.047$). 평생흡연은 전체 적으로 있음(26.2%)이 높게 나타났음($p=0.039$).

2) 구강건강 의식 조사 결과

(1) 구강건강 인식 상태

○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좋음)

-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좋음)은 전체 46.4%이었고, 직종별로는 대리 46.0% 택배 49.3%, 배달 43.3%이었음(표 3-15). 월간음주율은 택배 직종에서 있음(56.9%)이 높게 나타났음($p=0.050$). 신체활동은 택배 직종에서 실천함(73.3%)이 높게 나타났음($p=0.037$).

(2) 구강건강 행태

○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전체 24.0%이었고, 직종별로는 대리 30.2% 택배 16.0%, 배달 28.3%이었음(표 3-16). 평생 흡연은 대리 직종에서 없음(52.9%)이 높게 나타났음($p=0.017$).

○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율

-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율은 전체 31.4%이었고, 직종별로는 대리 38.1% 택배 23.1%, 배달 36.7%이었음(표 3-17). 교육 수준은 전체적으로 대졸 이상(39.6%)이 높게 나타났고($p=0.024$), 대리 직종에서도 대졸 이상(47.6%)이 높게 나타났음($p=0.028$). 월간음주율은 택배 직종에서 없음(37.5%)이 높게 나타났음($p=0.032$). 신체활동은 택배 직종에서 실천함(38.1%)이 높게 나타났음($p=0.042$).

○ 일일 칫솔질 횟수

-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일일 칫솔질 횟수는 전체평균 2.2회이었고, 직종별로는 대리 2.3회, 택배 2.1회, 배달 2.2회이었음(표 3-18). 평생흡연은 대리 직종에서 없음(2.9회)이 많게 나타났음($p=0.002$). 최근 1년 구강검진은 전체적으로 예(2.3회)가 많게 나타났고($p=0.043$), 배달 직종에서도 예(2.4회)가 많게 나타났음($p=0.042$).

○ 구강 보조용품 사용률

-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구강보조용품 사용률은 전체 57.8%이었고, 직종별로는 대리 54.0%, 택배 50.6%, 배달 71.7%이었음($p=0.033$)(표 3-19). 교육 수준은 전체적으로 대졸 이상(74.7%)이 높게 나타났음($p<0.001$). 대리 직종에서도 대졸 이상(69.0%)이 높게 나타났고($p=0.001$), 택배 직종에서도 대졸 이상(78.9%)이 높게 나타났음($p=0.005$).

(3) 건강행태

○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전체 23.5%이었고, 직종별로는 대리 27.0%, 택배 25.9%, 배달 16.7%이었음(표 3-20).

○ 평생흡연율

-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평생흡연율은 전체 73.0%이었고, 직종별로는 대리 73.0%, 택배 70.4%, 배달 76.7%이었음(표 3-21). 성별은 전체적으로 남성(74.9%)이 높게 나타났음($p < 0.001$). 대리 직종에서도 남성(75.4%)이 높게 나타났고($p = 0.018$), 택배 직종에서도 남성(73.1%)이 높게 나타났음($p = 0.007$).

○ 현재 흡연율

-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현재 흡연율은 전체 47.1%이었고, 직종별로는 대리 47.6%, 택배 38.3%, 배달 58.3%이었음(표 3-22). 성별은 전체적으로 남성(48.2%)이 높게 나타났음($p = 0.033$). 연령은 전체적으로 40대(57.1%)가 가장 높았고, 40대 이하(53.6%), 50대(52.2%) 순으로 나타났음($p = 0.035$).

○ 월간음주율

-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월간음주율은 전체 68.0%이었고, 직종별로는 대리 55.3%, 택배 70.4%, 배달 78.0%이었음($p = 0.025$)(표 3-23).

(4) 치과의료 이용실태

○ 연간 구강 검진율

-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최근 1년 구강검진은 전체 49.5%이었고, 직종별로는 대리 49.2%, 택배 45.7%, 배달 55.0%이었음(표 3-24). 신체활동은 대리 직종에서 실천함(82.4%)이 높게 나타났음($p = 0.001$).

○ 연간 치과 진료율

-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최근 1년간 치과 진료 여부는 전체 62.3%이었고, 직종별로는 대리 61.9% 택배 65.4%, 배달 58.3%이었음(표 3-25). 교육 수준은 택배 직종에서 대졸 이상(84.2%)이 높게 나타났음($p=0.049$).

○ 연간 미충족 치과의료율

-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미충족 치과의료율은 전체 40.4%이었고, 직종별로는 대리 41.3% 택배 36.3%, 배달 45.0%이었음(표 3-26). 평생흡연은 대리 직종에서 없음(64.7%)이 많게 나타났음($p=0.022$). 최근 1년 구강검진은 전체적으로 아니오(48.0%)가 높게 나타났고($p=0.026$), 택배 직종에서도 아니오(48.8%)가 높게 나타났음($p=0.012$).

○ 미충족 치과의료 원인 중 경제적 이유

-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미충족 치과의료의 원인 중 경제적 이유는 전체 32.5%이었고, 직종별로는 대리 40.7% 택배 20.7%, 배달 37.0%이었음(표 3-27). 연령은 대리 직종에서 60대 이상(50.0%)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p=0.039$). 배달 직종에서도 60대 이상(100%)이 가장 높았고, 50대(42.9%), 40대(30.8%) 순으로 나타났음($p=0.042$). 월간음주율은 전체적으로 없음(52.0%)이 높게 나타났음($p=0.013$).

3) 경제활동

○ 근무경력

-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근무경력(연)은 전체평균 11.3년이었고, 직종별로는 대리 9.6년, 택배 15년, 배달 8.1년이었음($p<0.001$)(표 3-28). 성별은 택배 직종에서 남성(9.9년)이 높았고($p=0.043$), 연령은 전체적으로 60대 이상(14.9년)이 가장 높았고, 50대(11.0년), 40대(10.4년) 순으로 나타났음($p<0.001$). 택배 직종에서

도 60대 이상(18.8년)이 가장 높았고, 50대(14.9년), 40대(10.5년) 순으로 나타났음($p < 0.001$). 교육 수준은 전체적으로 고졸 이하(14.1년)가 높게 나타났고($p < 0.001$), 택배 직종에서도 고졸 이하(16.9년)가 높게 나타났음($p = 0.001$).

○ 근무 형태

-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종사상지위는 전체적으로 자영업자와 고용주(54.1%)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표 3-29). 임금근로자 내 근로 형태는 전체적으로 상용직(43.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금근로자 내 정규직 여부는 비정규직(86.4%)이 높게 나타났음.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주 근로 시간대는 전체적으로 주간 근무(50.0%)가 가장 높았고, 밤 근무(19.6%), 저녁 근무(14.5%) 순으로 나타났음.
-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주 근로 시간대는 대리 직종에서 밤 근무(52.2%), 택배 직종에서 주간 근무(86.7%), 배달 직종에서 주간 근무(43.8%)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주당 평균 근로 시간

-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전체평균 44.2시간이었고, 직종별로는 대리 40.5시간, 택배 44.6시간, 배달 47.6시간이었음(표 3-30). 성별은 전체적으로 남성(44.7시간)이 높게 나타났고($p = 0.008$), 택배 직종에서도 남성(45.5시간)이 높게 나타났음($p = 0.015$). 연령은 전체적으로 40대(51.5시간)가 가장 높았고, 50대(44.1시간), 40대 이하(41.6시간) 순으로 나타났음($p = 0.022$).

표 3-1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N	전체		직중		배달		
			분율	n	분율	n			
전체		204	100.0	63	30.9	81	39.7	60	29.4
성별	남	199	97.5	61	96.8	78	96.3	60	100.0
	여	5	2.5	2	3.2	3	3.7	-	-
연령	≥60	65	31.9	23	36.5	37	45.7	5	8.3
	50-59	69	33.8	34	54.0	25	30.9	10	16.7
	40-49	42	20.6	5	7.9	12	14.8	25	41.7
	≤39	28	13.7	1	1.6	7	8.6	20	33.3
교육	고졸 이하	113	55.4	21	33.3	62	76.5	30	50.0
	대졸 이상	91	44.6	42	66.7	19	23.5	30	50.0
월간음주율	있음	138	67.6	35	55.6	57	70.4	46	78.0
	없음	65	31.9	28	44.4	24	29.6	13	22.0
	Missing	1	0.5						
평생흡연여부	있음	149	73.0	46	73.0	57	70.4	46	76.7
	없음	55	27.0	17	27.0	24	29.6	14	23.3
신체활동	실천안 함	156	76.5	46	73.0	60	74.1	50	83.3
	실천함	48	23.5	17	27.0	21	25.9	10	16.7
최근 1년 구강검진	아니오	103	50.5	32	50.8	44	54.3	27	45.0
	예	101	49.5	31	49.2	37	45.7	33	55.0

표 3-2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영구치우식경험률

특성	구분		전체		대리		직중		배달		
	N	n	N	분율	N	분율	N	분율	N	분율	
전체	204	189	63	92.6	58	92.1	81	90.1	60	58	96.7
성별		p=0.524			p=0.673			p=0.331			
남	199	184	61	92.5	56	91.8	78	89.7	60	85	96.7
여	5	5	2	100.0	2	100.0	3	100.0	-	-	-
연령		p=0.047			p=0.674			p=0.278			p=0.460
≥60	65	56	23	86.2	20	87.0	37	83.8	5	5	100.0
50-59	69	64	34	92.8	32	94.1	25	92.0	10	9	90.0
40-49	42	42	5	100.0	5	100.0	12	100.0	25	25	100.0
≤39	28	27	1	96.4	1	100.0	7	100.0	20	19	95.0
교육		p=0.709			p=0.742			p=0.441			p=0.150
고졸 이하	113	104	21	92.0	19	90.5	62	88.7	30	30	100.0
대졸 이상	91	85	42	93.4	39	92.9	19	94.7	30	28	93.3
월간음주율		p=0.644			p=0.835			p=0.763			p=0.444
있음	138	127	35	92.0	32	91.4	57	89.5	46	44	95.7
없음	65	61	28	93.8	26	92.9	24	91.7	13	13	100.0
평생흡연여부		p=0.979			p=0.714			p=0.763			p=0.364
있음	149	138	46	92.6	42	91.3	57	89.5	46	45	97.8
없음	55	51	17	92.7	16	94.1	24	91.7	14	13	92.9
신체활동		p=0.738			p=0.157			p=0.950			p=0.198
실천안 함	156	144	46	92.3	41	89.1	60	90.0	50	49	98.0
실천함	48	45	17	93.8	17	100.0	21	90.5	10	9	90.0
최근 1년 구강검진		p=0.066			p=0.173			p=0.625			p=0.112
아니오	103	92	32	89.3	28	87.5	44	88.6	27	25	92.6
예	101	97	31	96.0	30	96.8	37	91.9	33	33	100.0

표 3-3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영구치우식유병률

특성	구분	전체			대리			직종					
		N	n	분율	N	n	분율	N	n	분율			
전체		204	89	43.6	63	26	41.3	81	31	38.3	60	32	53.3
성별	남	199	87	43.7	61	25	41.0	78	30	38.5	60	32	53.3
	여	5	2	40.0	2	1	50.0	3	1	33.3	-	-	-
연령	≥60	65	27	41.5	23	11	47.8	37	14	37.8	5	2	40.0
	50-59	69	25	36.2	34	13	38.2	25	8	32.0	10	4	40.0
	40-49	42	21	50.0	5	2	40.0	12	6	50.0	25	13	52.0
	≤39	28	16	57.1	1	-	-	7	3	42.9	20	13	65.0
교육	고졸 이하	113	52	46.0	21	11	52.4	62	26	41.9	30	15	50.0
	대졸 이상	91	37	40.7	42	15	35.7	19	5	26.3	30	17	56.7
월간음주율	있음	138	63	45.7	35	13	37.1	57	26	45.6	46	24	52.2
	없음	65	25	40.0	28	13	46.4	24	5	20.8	13	8	61.5
평생흡연여부	있음	149	68	45.6	46	22	47.8	57	22	38.6	46	24	52.2
	없음	55	21	38.2	17	4	23.5	24	9	37.5	14	8	57.1
신체활동	실천안 함	156	73	46.8	46	20	43.5	60	27	45.0	50	26	52.0
	실천함	48	16	33.3	17	6	35.3	21	4	19.0	10	6	60.0
최근 1년 구강검진	아니오	103	48	46.6	32	13	40.6	44	22	50.0	27	13	48.1
	예	101	41	40.6	31	13	41.9	37	9	24.3	33	19	57.6

표 3-4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현존 자연치아 수

특성	구분			전체			직종					
	N	M	SD	N	M	SD	대리		택배		배달	
전체	204	24.7	6.4	63	23.7	7.3	81	23.9	6.9	60	26.7	3.7
성별		$p=0.757$			$p=0.861$			$p=0.543$				
남	199	24.6	6.4	61	23.7	7.6	78	23.8	7.0	60	26.7	3.7
여	5	26.4	2.2	2	26.0	2.8	3	26.7	2.3			
연령		$p<0.001$			$p=0.212$			$p=0.450$			$p<0.001$	
≥60	65	22.1	8.3	23	21.3	9.5	37	22.6	8.0	5	22.4	5.9
50-59	69	25.2	5.2	34	24.8	5.5	25	25.1	5.3	10	26.6	3.2
40-49	42	25.4	5.0	5	27.8	0.8	12	23.8	8.1	25	25.6	3.2
≤39	28	28.2	2.5	1	23.0	-	7	26.6	2.1	20	29.1	2.0
교육		$p=0.288$			$p=0.719$			$p=0.556$			$p=0.519$	
고졸 이하	113	24.3	6.7	21	22.6	8.7	62	23.8	6.9	30	26.4	3.7
대졸 이상	91	25.1	6.0	42	24.3	6.5	19	24.2	7.3	30	26.9	3.6
월간임주율		$p=0.004$			$p=0.362$			$p=0.003$			$p=0.767$	
있음	138	25.4	5.9	35	23.9	7.5	57	25.4	5.9	46	26.6	4.0
없음	65	23.1	7.2	28	23.5	7.1	24	20.5	8.2	13	26.9	2.2
평생출연여부		$p=0.268$			$p=0.738$			$p=0.238$			$p=0.149$	
있음	149	24.3	6.8	46	23.8	7.4	57	23.1	7.7	46	26.3	3.9
없음	55	25.7	5.1	17	23.4	7.0	24	26.0	4.2	14	27.9	2.5
신체활동		$p=0.829$			$p=0.154$			$p=0.622$			$p=0.310$	
실천안 함	156	24.7	6.4	46	23.1	7.8	60	24.2	6.6	50	26.9	3.7
실천함	48	24.5	6.5	17	25.5	5.5	21	23.1	8.0	10	25.6	3.6
최근 1년 구강검진		$p=0.643$			$p=0.580$			$p=0.532$			$p=0.456$	
아니오	103	24.5	6.9	32	23.0	8.3	44	24.3	7.2	27	26.6	3.6
예	101	24.8	5.8	31	24.5	6.1	37	23.5	6.7	33	26.7	3.7

표 3-5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20개 이상 차야 보유율

특성	구분	전체		대리		직종		분율	분율	분율	분율
		N	n	N	n	N	n				
전체		204	174	63	53	81	64	79.0	60	57	95.0
			p=0.347		p=0.532		p=0.028				
성별	남	199	169	61	51	78	61	78.2	60	57	95.0
	여	5	5	2	2	3	3	100.0	-	-	-
			p=0.002		p=0.109		p=0.420				p=0.219
연령	≥60	65	47	23	16	37	27	73.0	5	4	80.0
	50-59	69	61	34	31	25	20	80.0	10	10	100.0
	40-49	42	38	5	5	12	10	83.3	25	23	92.0
	≤39	28	28	1	1	7	7	100.0	20	20	100.0
			p=0.179		p=0.626		p=0.525				p=0.554
교육	고졸 이하	113	93	21	17	62	48	77.4	30	28	93.3
	대졸 이상	91	81	42	36	19	16	84.2	30	29	96.7
			p=0.150		p=0.758		p=0.018				p=0.345
월간음주율	있음	138	121	35	29	57	49	86.0	46	43	93.5
	없음	65	52	28	24	24	15	62.5	13	13	100.0
			p=0.352		p=0.815		p=0.224				p=0.327
평생흡연여부	있음	149	125	46	39	57	43	75.4	46	43	93.5
	없음	55	49	17	14	24	21	87.5	14	14	100.0
			p=0.366		p=0.815		p=0.712				p=0.427
신체활동	실천안 함	156	135	46	39	60	48	80.0	50	48	96.0
	실천함	48	39	17	14	21	16	82.4	10	9	90.0
			p=0.736		p=0.525		p=0.499				p=0.439
최근 1년 구강검진	아니오	103	87	32	26	44	36	81.8	27	25	92.6
	예	101	87	31	27	37	28	75.7	33	32	91.0

표 3-6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무치악지율

특성	구분			전체			대리			직종 택배			배달		
	N	n	분율	N	n	분율	N	n	분율	N	n	분율	N	n	분율
전체	204	4	2.0	63	2	3.2	81	2	2.5	60	-	0.0			
성별	199	4	2.0	61	2	3.3	78	2	2.6	60	-	-			
	5	-	-	2	-	-	3	-	-	-	-	-			
연령	65	4	6.2	23	2	8.7	37	2	5.4	5	-	-			
	69	-	-	34	-	-	25	-	-	10	-	-			
	42	-	-	5	-	-	12	-	-	25	-	-			
	28	-	-	1	-	-	7	-	-	20	-	-			
교육	113	3	2.7	21	1	4.8	62	2	3.2	30	-	-			
	91	1	1.1	42	1	2.4	19	-	-	30	-	-			
월간임주율	138	2	1.4	35	1	2.9	57	1	1.8	46	-	-			
	65	2	3.1	28	1	3.6	24	1	4.2	13	-	-			
평생출연여부	149	4	2.7	46	2	4.3	57	2	3.5	46	-	-			
	55	-	-	17	-	-	24	-	-	14	-	-			
신체활동	156	3	1.9	46	2	4.3	60	1	1.7	50	-	-			
	48	1	2.1	17	-	-	21	1	4.8	10	-	-			
최근 1년 구강검진	103	4	3.9	32	2	6.3	44	2	4.5	27	-	-			
	101	-	-	31	-	-	37	-	-	33	-	-			

표 3-7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저직불편호소율

특성	구분	전체		대리		직종		배달			
		N	n	N	n	N	n				
전체		204	68	63	22	81	31	60	15	25.0	
성별	남	199	68	61	22	78	31	60	15	25.0	
	여	5	-	2	-	3	-	-	-	-	
연령	≥60	65	30	46.2	23	8	19	51.4	5	60.0	
	50-59	69	24	34.8	34	14	7	28.0	10	30.0	
	40-49	42	13	31.0	5	-	5	41.7	25	32.0	
	≤39	28	1	3.6	1	-	7	-	20	5.0	
교육	고졸 이하	113	45	39.8	21	8	29	46.8	30	26.7	
	대졸 이상	91	23	25.3	42	14	2	10.5	30	23.3	
월간음주율	있음	138	47	34.1	35	13	23	40.4	46	11	23.9
	없음	65	21	32.3	28	9	8	33.3	13	4	30.8
평생흡연여부	있음	149	50	33.6	46	15	24	42.1	46	11	23.9
	없음	55	18	32.7	17	7	7	29.2	14	4	28.6
신체활동	실천안 함	156	56	35.9	46	16	26	43.3	50	14	28.0
	실천함	48	12	25.0	17	6	5	23.8	10	1	10.0
최근 1년 구강검진	아니오	103	40	38.8	32	13	19	43.2	27	8	29.6
	예	101	28	27.7	31	9	12	32.4	33	7	21.2

표 3-8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의치 보유자율

특성	구분			전체			직종				
	N	n	분율	N	n	분율	대리	택배	배달		
전체	204	82	40.2	63	26	41.3	81	38	60	18	30.0
성별											
남	199	81	40.7	61	25	41.0	78	38	60	18	30.0
여	5	1	20.0	2	1	50.0	3	-	-	-	-
연령											
≥60	65	37	56.9	23	12	52.2	37	23	5	2	40.0
50-59	69	26	37.7	34	11	32.4	25	12	10	3	30.0
40-49	42	17	40.5	5	2	40.0	12	3	25	12	48.0
≤39	28	2	7.1	1	1	100.0	7	-	20	1	5.0
교육											
고졸 이하	113	54	47.8	21	1	52.4	62	32	30	11	36.7
대졸 이상	91	28	30.8	42	15	35.7	19	6	30	7	23.3
월간임주율											
있음	138	52	37.7	35	13	37.1	57	25	46	14	30.4
없음	65	30	46.2	28	13	46.4	24	13	13	4	30.8
평생출연여부											
있음	149	64	43.0	46	17	37.0	57	31	46	16	34.8
없음	55	18	32.7	17	9	52.9	24	7	14	2	14.3
신체활동											
실천안 함	156	65	41.7	46	22	47.8	60	28	50	15	30.0
실천함	48	17	35.4	17	4	23.5	21	10	10	3	30.0
최근 1년 구강검진											
예	103	42	40.8	32	14	43.8	44	20	27	8	29.6
예	101	40	39.6	31	12	38.7	37	18	33	10	30.3

표 3-9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임플란트 보유자율

특성	구분	전체			대리			직종					
		N	n	분율	N	n	분율	N	n	분율			
전체		204	39	19.1	63	15	23.8	81	16	19.8	60	8	13.3
성별	남	199	39	19.6	61	15	24.6	78	16	20.5	60	8	13.3
	여	5	-	-	2	-	-	3	-	-	-	-	-
연령	≥60	65	13	20.0	23	6	26.1	37	6	16.2	5	1	20.0
	50-59	69	15	21.7	34	8	23.5	25	6	24.0	10	1	10.0
	40-49	42	9	21.4	5	-	-	12	3	25.0	25	6	24.0
	≤39	28	2	7.1	1	1	100.0	7	1	14.3	20	-	-
교육	고졸 이하	113	19	16.8	21	3	14.6	62	10	16.1	30	6	20.0
	대졸 이상	91	20	22.0	42	12	28.6	19	6	31.6	30	2	6.7
			p=0.180			p=0.321			p=0.009			p=0.828	
월간음주율	있음	138	23	16.7	35	10	28.6	57	7	12.3	46	6	13.0
	없음	65	16	24.6	28	5	17.9	24	9	37.5	13	2	15.4
평생흡연여부	있음	149	30	20.1	46	10	21.7	57	13	22.8	46	7	15.2
	없음	55	9	16.4	17	5	29.4	24	3	12.5	14	1	7.1
신체활동	실천안 함	156	30	19.2	46	12	26.1	60	11	18.3	50	7	14.0
	실천함	48	9	18.8	17	3	17.6	32	5	23.8	10	1	10.0
최근 1년 구강검진	아니오	103	21	20.4	32	9	28.1	44	8	18.2	27	4	14.8
	예	101	18	17.8	31	6	19.4	37	8	21.6	33	4	12.1

표 3-10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의치 필요자율

특성	구분			전체			직종					
	N	n	분율	N	n	분율	대리	택배	배달			
전체	204	82	40.2	63	27	42.9	81	39	48.1	60	16	26.7
성별												
남	199	80	40.2	61	26	42.6	78	38	48.7	60	16	26.7
여	5	2	40.0	2	1	50.0	3	1	33.3	-	-	-
연령												
≥60	65	30	46.2	23	9	39.1	37	17	20.0	5	4	80.0
50-59	69	34	49.3	34	18	52.9	25	13	52.0	10	3	30.0
40-49	42	15	35.7	5	-	-	12	8	66.7	25	7	28.0
≤39	28	3	10.7	1	-	-	7	1	14.3	20	2	10.0
교육												
고졸 이하	113	52	46.0	21	10	47.6	62	34	54.8	30	8	26.7
대졸 이상	91	30	33.0	42	17	40.5	19	5	26.3	30	8	26.7
월간음주율												
있음	138	51	37.0	35	12	34.3	57	26	45.6	46	13	28.3
없음	65	31	47.7	28	15	53.6	24	13	54.2	13	3	23.1
평생출연여부												
있음	149	63	42.3	46	19	41.3	57	30	52.6	46	14	30.4
없음	55	19	34.5	17	8	47.1	24	9	37.5	14	2	14.3
신체활동												
실천안 함	156	66	42.3	46	21	45.7	60	32	53.3	50	13	26.0
실천함	48	16	33.3	17	6	35.3	21	7	33.3	10	3	30.0
최근 1년 구강검진												
아니오	103	50	48.5	32	15	46.9	44	25	56.8	27	10	37.0
예	101	32	31.7	31	12	38.7	37	14	37.8	33	6	18.2

표 3-12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발치 필요지침

특성	구분			전체			대리			직중 택배			배달		
	N	n	분율	N	n	분율	N	n	분율	N	n	분율	N	n	분율
전체	204	65	31.9	63	19	30.2	81	24	29.6	60	22	36.7			
성별															
남	199	63	31.7	61	18	29.5	78	23	29.5	60	22	36.7			
여	5	2	40.0	2	1	50.0	3	1	33.3	-	-	-			
연령															
≥60	65	22	33.8	23	8	34.8	37	13	35.1	5	1	20.0			
50-59	69	18	26.1	34	10	29.4	25	6	24.0	10	2	20.0			
40-49	42	16	38.1	5	1	20.0	12	4	33.3	25	11	44.0			
≤39	28	9	32.1	1	-	-	7	1	14.3	20	8	40.0			
교육															
고졸 이하	113	40	35.4	21	10	47.6	62	18	29.0	30	12	40.0			
대졸 이상	91	25	27.5	42	9	21.4	19	6	31.6	30	10	33.3			
월간음주율															
있음	138	47	34.1	35	9	25.7	57	20	35.1	46	18	39.1			
없음	65	18	27.7	28	10	35.7	24	4	16.7	13	4	30.8			
평생출연여부															
있음	149	48	32.2	46	15	32.6	57	15	26.3	46	18	39.1			
없음	55	17	30.9	17	4	23.5	24	9	37.5	14	4	28.6			
신체활동															
실천안 함	156	53	34.0	46	15	32.6	60	20	33.3	50	18	36.0			
실천함	48	12	25.0	17	4	23.5	21	4	19.0	10	4	40.0			
최근 1년 구강검진															
아니오	103	36	35.0	32	8	25.0	44	18	38.6	27	11	40.7			
예	101	29	28.7	31	11	35.5	37	7	18.9	33	11	33.3			

표 3-13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치아 손상 경험률

특성	구분	전체			직중								
		N	n	분율	대리	택배	배달						
전체		204	55	27.0	63	19	30.2	81	16	19.8	60	20	33.3
성별	남	199	54	27.1	61	19	31.1	78	15	19.2	60	20	33.3
	여	5	1	20.0	2	-	-	3	1	33.3			
연령	≥60	65	13	20.0	23	7	30.4	37	3	8.1	5	3	60.0
	50-59	69	21	30.4	34	11	32.4	25	7	28.0	10	3	30.0
	40-49	42	14	33.3	5	1	20.0	12	4	33.3	25	9	36.0
	≤39	28	7	25.0	1	-	-	7	2	28.6	20	5	25.0
교육	고졸 이하	113	29	25.7	21	6	28.6	62	11	17.7	30	12	40.0
	대졸 이상	91	26	28.6	42	13	31.0	19	5	26.3	30	8	26.7
월간음주율	있음	138	37	26.8	35	9	25.7	57	15	26.3	46	13	28.3
	없음	65	18	27.7	28	10	35.7	24	1	4.2	13	7	53.8
평생흡연여부	있음	149	42	28.2	46	14	30.4	57	13	22.8	46	15	32.6
	없음	55	13	23.6	17	5	29.4	24	3	12.5	14	5	35.7
신체활동	실천안 함	156	40	25.6	46	12	26.1	60	11	18.3	50	17	34.0
	실천함	48	15	31.3	17	7	41.2	21	5	23.8	10	3	30.0
최근 1년 구강검진	아니오	103	21	23.3	32	7	21.9	44	9	20.5	27	8	29.6
	예	101	31	30.7	31	12	38.7	37	7	18.9	33	12	36.4

표 3-14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차아 손상 경험 원인(교통사고)

특성	구분			전체			다리			직중 택배			배달		
	N	n	분율	N	n	분율	N	n	분율	N	n	분율	N	n	분율
전체	55	11	20.0	19	3	15.8	16	1	6.3	20	7	35.0			
성별	54	11	20.4	19	3	15.8	15	1	6.7	20	7	35.0			
남															
여	1	-	-	-	-	-	1	-	-	-	-	-			
연령	13	3	23.1	7	3	42.9	3	-	-	3	-	-			
≥60															
50-59	21	1	4.8	11	-	-	7	-	-	3	1	33.3			
40-49	14	5	35.7	1	-	-	4	-	-	9	5	55.6			
≤39	7	2	28.6	-	-	-	2	1	50.0	5	1	20.0			
교육	29	7	24.1	6	2	33.3	11	1	9.1	12	4	33.3			
고졸 이하															
대졸 이상	26	4	15.4	13	1	7.7	5	-	-	8	3	37.5			
월간음주율	37	8	21.6	9	1	11.1	15	1	6.7	13	6	46.2			
있음															
없음	18	3	16.7	10	2	20.0	1	-	-	7	1	14.3			
평생출연여부	42	11	26.2	14	3	21.4	13	1	7.7	15	7	46.7			
있음															
없음	13	-	-	5	-	-	3	-	-	5	-	-			
신체활동	40	8	20.0	12	3	25.0	11	-	-	17	5	29.4			
실천안 함															
실천함	15	3	20.0	7	-	-	5	1	20.0	3	2	66.7			
최근 1년 구강검진	24	6	25.0	7	1	14.3	9	1	11.1	8	4	50.0			
예	31	5	16.1	12	2	16.7	7	-	-	12	3	25.0			

표 3-15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 (좋은)

특성	구분	전체			대리			직종					
		N	n	분율	N	n	분율	N	n	분율			
전체		196	91	46.4	63	29	46.0	73	36	49.3	60	26	43.3
						p=0.538				p=0.787			
성별	남	191	88	46.1	61	28	45.9	70	34	48.6	60	26	43.3
	여	5	3	60.0	2	1	50.0	3	2	66.7	-	-	-
						p=0.094				p=0.349			p=0.075
연령	≥60	63	27	42.9	23	11	47.8	35	15	42.9	5	1	20.0
	50-59	67	33	49.3	34	14	41.2	23	13	56.5	10	6	60.0
	40-49	40	14	35.0	5	3	60.0	10	4	40.0	25	7	28.0
	≤39	26	17	65.4	1	1	100.0	5	4	80.0	20	12	60.0
						p=0.643				p=0.727			p=1.000
교육	고졸 이하	109	49	45.0	21	8	38.1	58	28	48.3	30	13	43.3
	대졸 이상	87	42	48.3	42	21	50.0	15	8	53.3	30	13	43.3
						p=0.741				p=0.050			p=0.343
월간음주율	있음	132	62	47.0	35	15	42.9	51	29	56.9	46	18	39.1
	없음	63	28	44.4	28	14	50.0	22	7	31.8	13	7	53.8
						p=0.274				p=0.108			p=0.565
평생흡연여부	있음	143	63	44.1	46	22	47.8	51	22	43.1	46	19	41.3
	없음	53	28	52.8	17	7	41.2	22	14	63.6	14	7	50.0
						p=0.055				p=0.037			p=0.641
신체활동	실천안 함	154	66	42.9	46	20	43.5	58	25	43.1	50	21	42.0
	실천함	42	25	59.5	17	9	52.9	15	11	73.3	10	5	50.0
						p=0.385				p=0.729			p=0.714
최근 1년 구강검진	아니오	97	42	43.3	32	13	40.6	38	18	47.4	27	11	40.7
	예	99	49	49.5	31	16	51.6	35	18	51.4	33	15	45.5

표 3-16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점심 식사 후 치솔질 실천율

특성	구분			전체			직종					
	N	n	분율	N	n	분율	대리	택배	배달			
전체	204	49	24.0	63	19	30.2	81	13	16.0	60	17	28.3
									p=0.094			
성별	199	47	23.6	61	18	29.5	78	12	15.4	60	17	28.3
	5	2	40.0	2	1	50.0	3	1	33.3	-	-	-
									p=0.406			
연령	65	16	24.6	23	8	34.8	37	8	21.6	5	-	-
	69	13	18.8	34	8	23.5	25	2	8.0	10	3	30.0
	42	13	31.0	5	2	40.0	12	1	8.3	25	10	40.0
	28	7	25.0	1	1	100.0	7	2	28.6	20	4	20.0
									p=0.334			
									p=0.226			
교육	113	24	21.2	21	7	33.3	62	9	14.5	30	8	26.7
	91	25	27.5	42	12	28.6	19	4	21.1	30	9	30.0
									p=0.497			
									p=0.774			
월간음주율	138	29	21.0	35	9	25.7	57	8	14.0	46	12	26.1
	65	19	29.2	28	10	35.7	24	5	20.8	13	4	30.8
									p=0.447			
									p=0.737			
평생출연여부	149	31	20.8	46	10	21.7	57	8	14.0	46	13	28.3
	55	18	32.7	17	9	52.9	24	5	20.8	14	4	28.6
									p=0.447			
									p=0.982			
신체활동	156	37	23.7	46	13	28.3	60	9	15.0	50	15	30.0
	48	12	25.0	17	6	35.3	21	4	19.0	10	2	20.0
									p=0.664			
									p=0.522			
최근 1년 구강검진	103	21	20.4	32	9	28.1	44	6	13.6	27	6	22.2
	101	28	27.7	31	10	32.3	37	7	18.9	33	11	33.3
									p=0.519			
									p=0.342			

표 3-17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접자기 전 칫솔질 실천율

특성	구분	전체			직중						
		N	n	분율	대리	택배	배달				
전체		204	64	31.4	63	24	38.1	81	60	22	36.7
				p=0.126			p=0.260				p=0.072
성별	남	199	64	32.2	61	24	39.3	78	60	22	36.7
	여	5	-	-	2	-	-	3	-	-	-
				p=0.209			p=0.889				p=0.707
연령	≥60	65	15	23.1	23	9	39.1	37	5	1	20.0
	50-59	69	21	30.4	34	13	38.2	25	5	3	30.0
	40-49	42	17	40.5	5	2	40.0	12	4	11	44.0
	≤39	28	11	39.3	1	-	-	7	4	7	35.0
						p=0.024					p=1.000
교육	고졸 이하	113	28	24.8	21	4	19.0	62	13	11	36.7
	대졸 이상	91	36	39.6	42	20	47.6	19	5	11	36.7
											p=0.032
월간음주율	있음	138	37	26.8	35	12	34.3	57	9	16	34.8
	없음	65	27	41.5	28	12	42.9	24	9	6	46.2
											p=0.583
평생흡연여부	있음	149	45	30.2	46	18	39.1	57	11	16	34.8
	없음	55	19	34.5	17	6	35.3	24	7	6	42.9
											p=0.632
신체활동	실천안 함	156	45	28.8	46	16	34.8	60	10	19	38.0
	실천함	48	19	39.6	17	8	47.1	21	8	3	30.0
											p=0.628
최근 1년 구강검진	아니오	103	29	28.2	32	11	34.4	44	9	27	33.3
	예	101	35	34.7	31	13	41.9	37	9	13	39.4

표 3-19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구강 보조용품 사용률

특성	구분	전체			대리			직종					
		N	n	분율	N	n	분율	N	n	분율			
전체		204	118	57.8	63	34	54.0	81	41	50.6	60	43	71.7
			p=0.310				p=0.909				p=0.033		
성별	남	199	114	57.3	61	33	54.1	78	38	48.7	60	43	71.7
	여	5	4	80.0	2	1	50.0	3	3	100.0	-	-	-
			p=0.088				p=0.723				p=0.420		
연령	≥60	65	33	50.8	23	12	52.2	37	16	43.2	5	5	100.0
	50-59	69	38	55.1	34	19	55.9	25	12	48.0	10	7	70.0
	40-49	42	25	59.5	5	2	40.0	12	7	58.3	25	16	64.0
	≤39	28	22	78.6	1	1	100.0	7	6	85.7	20	15	75.0
			p<0.001				p=0.001				p=0.005		
교육	고졸 이하	113	50	44.2	21	5	23.8	62	26	41.9	30	19	63.3
	대졸 이상	91	68	74.7	42	29	69.0	19	15	78.9	30	24	80.0
			p=0.811				p=0.572				p=0.281		
월간음주율	있음	138	81	58.7	35	20	57.1	57	29	50.9	46	32	69.6
	없음	65	37	56.9	28	14	50.0	24	12	50.0	13	11	84.6
			p=0.150				p=0.831				p=0.112		
평생흡연여부	있음	149	87	58.4	46	25	54.3	57	30	52.6	14	11	78.6
	없음	55	31	56.4	17	9	52.9	24	11	45.8	46	32	69.6
			p=0.455				p=0.638				p=0.159		
신체활동	실천안 함	156	88	56.4	46	24	52.2	60	30	50.0	50	34	68.0
	실천함	48	30	62.5	17	10	58.8	21	11	52.4	10	9	90.0
			p=0.310				p=0.167				p=0.054		
최근 1년 구강검진	아니오	103	56	54.4	32	20	62.5	44	20	45.5	27	16	59.3
	예	101	62	61.4	31	14	45.2	37	21	56.8	33	27	81.8

표 3-20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특성	구분				전체				직종					
	N	n	분율	N	N	n	분율	N	N	n	분율	N	n	분율
전체	204	48	23.5	63	17	27.0	81	21	25.9	60	10	16.7		
														$p=0.325$
성별	199	48	24.1	61	17	27.9	78	21	26.9	60	10	16.7		
남														$p=0.296$
여	5	-	-	2	-	-	3	-	-	-	-	-		
														$p=0.207$
연령	65	13	20.0	23	6	26.1	37	7	18.9	5	-	-		
50-59	69	16	23.2	34	9	26.5	25	7	28.0	10	-	-		
40-49	42	10	23.8	5	2	40.0	12	3	25.0	25	5	20.0		
≤39	28	9	32.1	1	-	-	7	4	57.1	20	5	25.0		
														$p=0.241$
														$p=0.520$
교육	113	23	20.4	21	4	19.0	62	15	24.2	30	4	13.3		
고졸 이하														$p=0.488$
대졸 이상	91	25	27.5	42	13	31.0	19	6	31.6	30	6	20.0		

표 3-21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평생학습율

특성	구분				전체				직종						
	N	n	분율		N	n	분율		N	n	분율		N	n	분율
진체	204	249	73.0		63	46	73.0		81	57	70.4		60	46	76.7
															<i>p=0.707</i>
성별	199	149	74.9		61	46	75.4		78	57	73.1		60	46	76.7
	5	-	-		2	-	-		3	-	-		-	-	<i>p=0.007</i>
연령	65	47	72.3		23	18	78.3		37	25	67.6		5	4	80.0
	69	49	71.0		34	23	67.6		25	20	80.0		10	6	60.0
	42	33	78.6		5	4	80.0		12	8	66.7		25	21	84.0
	28	20	71.4		1	1	100.0		7	4	57.1		20	15	75.0
															<i>p=0.590</i>
교육	113	83	73.5		21	14	66.7		62	45	72.6		30	24	80.0
	91	66	72.5		42	32	76.2		19	12	63.2		30	22	73.3
															<i>p=0.431</i>
															<i>p=0.542</i>

표 3-22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현재 흡연율

특성	구분			전체			지중					
	N	n	분율	N	n	분율	대리		택배		배달	
전체	204	96	47.1	63	30	47.6	81	31	38.3	60	35	58.3
성별	199	96	48.2	61	30	49.2	78	31	39.7	60	35	58.3
여	5	-	-	2	-	-	3	-	-	-	-	-
연령	65	21	32.3	23	10	43.5	37	9	24.3	5	2	40.0
50-59	69	36	52.2	34	18	52.9	25	13	52.0	10	5	50.0
40-49	42	24	57.1	5	2	40.0	12	6	50.0	25	16	64.0
≤39	28	15	53.6	1	-	-	7	3	42.9	20	12	60.0
교육	113	51	45.1	21	10	47.6	62	25	40.3	30	16	53.3
대졸 이상	91	45	49.5	42	20	47.6	19	6	31.6	30	19	63.3

표 3-23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월간음주율

특성	구분			전체			자종					
	N	n	분율	N	n	분율	대리		택배		배달	
전체	203	138	68.0	63	35	55.3	81	57	70.4	59	46	78.0
성별												
남	198	135	68.2	61	34	55.7	78	55	70.5	59	45	78.0
여	5	3	60.0	2	1	50.0	3	2	66.7	-	-	-
연령												
≥60	65	40	61.5	23	12	52.2	37	25	67.6	5	3	60.0
50-59	68	44	64.7	34	19	55.9	25	18	72.0	9	7	77.8
40-49	42	33	78.6	5	3	60.0	12	9	75.0	25	21	84.0
≤39	28	21	75.0	1	1	100.0	7	5	71.4	20	15	75.0
교육												
고졸 이하	113	77	68.1	21	11	52.4	62	41	66.1	30	25	83.3
대졸 이상	90	61	67.8	42	24	57.1	19	16	84.2	29	21	72.4

표 3-24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연간 구강검진 여부

특성	구분			전체			대리			직중			
	N	n	분율	N	n	분율	N	n	분율	N	n	분율	
전체	204	101	49.5	63	31	49.2	81	37	45.7	60	33	55.0	
												p=0.548	
성별													p=0.662
남	199	99	49.7	61	30	49.2	78	36	46.2	60	33	55.0	
여	5	2	40.0	2	1	50.0	3	1	33.3	-	-	-	
													p=0.822
연령													p=0.718
≥60	65	31	47.7	23	12	52.2	37	17	45.9	5	2	40.0	p=0.904
50-59	69	36	52.2	34	16	47.1	25	14	56.0	10	6	60.0	
40-49	42	22	52.4	5	3	60.0	12	5	41.7	25	14	56.0	
≤39	28	12	42.9	1	-	-	7	1	14.3	20	11	55.0	
													p=0.790
교육													p=0.373
고졸 이하	113	55	48.7	21	12	57.1	62	25	40.3	30	18	60.0	p=0.436
대졸 이상	91	46	50.5	42	19	45.2	19	12	63.2	30	15	50.0	

표 3-25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연강 차과 진료 여부

특성	구분			전체			직종					
	N	n	분율	N	n	분율	대리		택배		배달	
전체	204	127	62.3	63	39	61.9	81	53	65.4	60	35	58.3
성별												
남	199	125	62.8	61	38	62.3	78	52	66.7	60	35	58.3
여	5	2	40.0	2	1	50.0	3	1	33.3	-	-	-
연령												
≥60	65	43	66.2	23	16	69.6	37	25	67.6	5	2	40.0
50-59	69	44	63.8	34	19	55.9	25	18	72.0	10	7	70.0
40-49	42	24	57.1	5	3	60.0	12	7	58.3	25	14	56.0
≤39	28	16	57.1	1	1	100.0	7	3	42.9	20	12	60.0
교육												
고졸 이하	113	71	62.8	21	15	71.4	62	37	59.7	30	19	63.3
대졸 이상	91	56	61.5	42	24	57.1	19	16	84.2	30	16	53.3

표 3-26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연간 미충족 차이의료율

특성	구분			전체			대리			직중			배달		
	N	n	분율	N	n	분율	N	n	분율	N	n	분율	N	n	분율
전체	203	82	40.4	63	25	41.3	80	29	36.3	60	27	45.0			
성별	198	80	40.4	61	25	41.0	77	28	36.4	60	27	45.0			
	5	2	40.0	2	1	50.0	3	1	33.3	60	27	45.0			
연령	65	22	33.8	23	10	43.5	37	10	27.0	5	2	40.0			
	68	31	45.6	34	15	44.1	24	9	37.5	10	7	70.0			
	42	20	47.6	5	1	20.0	12	6	50.0	25	13	52.0			
	28	9	32.1	1	-	-	7	4	57.1	20	5	25.0			
교육	112	46	41.1	21	9	42.9	61	23	37.7	30	14	46.7			
	91	36	39.6	42	17	40.5	19	6	31.6	30	13	43.3			
월간임주율	138	57	41.3	35	14	40.0	57	21	36.8	46	22	47.8			
	64	25	39.1	28	12	42.9	23	8	34.8	13	5	38.5			
평생출연여부	149	57	38.3	46	15	32.6	57	23	40.4	46	19	41.3			
	54	25	46.3	17	11	64.7	23	6	26.1	14	8	57.1			
신체활동	156	63	40.4	46	20	43.5	60	19	31.7	50	24	48.0			
	47	19	40.4	17	6	35.3	20	10	50.0	10	3	30.0			
최근 1년 구강검진	102	49	48.0	32	14	43.8	43	21	48.8	27	14	51.9			
	101	33	32.7	31	12	38.7	37	8	21.6	33	13	39.4			

표 3-27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연간 미충족 차과의료 이유(경제적 이유)

특성	구분	전체			대리			직중					
		N	n	분율	N	n	분율	N	n	분율			
전체		83	27	32.5	27	11	40.7	29	6	20.7	27	10	37.0
				p=0.221			p=0.223			p=0.603			
성별	남	80	27	33.8	25	11	44.0	28	6	21.4	27	10	37.0
	여	3	-	-	2	-	-	1	-	-	-	-	-
연령				p=0.573			p=0.039			p=0.227			p=0.042
	≥60	22	12	54.5	10	5	50.0	10	5	50.0	2	2	100.0
	50-59	32	10	31.3	16	6	37.5	9	1	11.1	7	3	42.9
	40-49	20	4	20.0	1	-	-	6	-	-	13	4	30.8
	≤39	9	1	11.1	-	-	-	4	-	-	5	1	20.0
교육				p=0.120			p=0.093			p=0.785			p=0.883
	고졸 이하	47	12	25.5	10	2	20.0	23	5	21.7	14	5	35.7
	대졸 이상	36	15	41.7	17	9	52.9	6	1	16.7	13	5	38.5
월간음주율				p=0.013			p=0.096			p=0.168			p=0.239
	있음	58	14	24.1	15	4	26.7	21	3	14.3	22	7	31.8
	없음	25	13	52.0	12	7	58.3	8	3	37.5	5	3	60.0
평생흡연여부				p=0.461			p=0.930			p=0.160			p=0.401
	있음	57	20	35.1	15	6	40.0	23	6	23.1	19	8	42.1
	없음	26	7	26.9	12	5	41.7	6	-	-	8	2	25.0
신체활동				p=0.920			p=0.601			p=0.947			p=0.888
	실천안 함	64	21	32.8	21	8	38.1	19	4	21.1	24	9	37.5
	실천함	19	6	31.6	6	3	50.0	10	2	20.0	3	1	33.3
최근 1년 구강검진				p=0.613			p=0.581			p=0.502			p=0.148
	아니오	49	17	34.1	14	5	35.7	21	5	23.8	14	7	50.0
	예	34	10	29.4	13	6	46.2	8	1	12.5	13	3	23.1

표 3-28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근무경력

특성	구분			전체			직종					
	N	M	SD	N	M	SD	N	M	SD			
전체	204	11.3	10.1	63	9.6	10.5	81	15.0	9.9	60	8.1	8.1
		p=0.061			p=0.332			p<0.001				
성별	199	11.5	10.2	61	9.8	10.7	78	15.4	9.9	60	8.1	8.3
	5	4.2	3.6	2	4.0	1.4	3	4.3	4.9	-	-	-
		p<0.001			p=0.755			p<0.001			p=0.354	
연령	65	14.9	9.8	23	9.9	7.1	37	18.8	10.0	5	8.4	6.6
	69	11.0	8.6	34	7.9	6.0	25	14.9	9.3	10	11.6	10.9
	42	10.4	12.9	25	8.3	8.8	12	10.5	6.6	25	8.3	8.8
	28	5.2	5.3	1	6.0	-	7	3.3	2.9	20	5.8	6.0
		p<0.001			p=0.164			p=0.001			p=0.165	
교육	113	14.1	9.9	21	10.7	7.8	62	16.9	9.8	30	10.6	9.8
	91	7.8	9.3	42	9.0	11.7	19	8.7	7.7	30	5.5	5.4
		p=0.569			p=0.884			p=0.771			p=0.213	
월간임주율	138	11.3	9.0	35	8.9	6.9	57	14.7	9.3	46	8.8	8.8
	65	11.5	12.2	28	10.4	13.9	24	15.7	11.4	13	5.8	5.9
		p=0.139			p=0.470			p=0.097			p=0.481	
평생출연여부	149	11.5	9.0	46	9.0	6.5	57	16.0	9.7	46	8.4	8.3
	55	10.7	12.6	17	11.0	17.6	24	12.7	10.4	14	6.9	8.2
		p=0.797			p=0.179			p=0.125			p=0.841	
신체활동	156	11.1	9.4	46	8.2	6.6	60	16.0	10.3	50	7.9	8.0
	48	11.8	12.2	17	13.4	16.9	21	12.1	8.4	10	8.6	9.8
		p=0.311			p=0.217			p=0.218			p=0.564	
최근 1년 구강검진	103	10.5	9.4	32	7.8	6.4	44	14.2	11.0	27	7.7	7.4
	101	12.1	10.8	31	11.4	13.4	37	16.0	8.6	33	8.3	9.0

표 3-29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근무 형태

특성	구분	전체		대리		직종		배달	
		N	분율	n	분율	n	분율		
총사상지위	임금근로자	93	45.4	32	50.0	26	32.5	35	57.4
	자영업자와 고용주	111	54.1	32	50.0	54	67.5	25	41.0
	무급가족종사자	1	0.5	-	-	-	-	1	1.6
p=0.838									
임금근로자 내 근로 형태	상용직	39	43.8	16	51.6	11	42.3	12	37.5
	임시직	25	28.1	7	22.6	8	30.8	10	31.3
	일용직	25	28.1	8	25.8	7	26.9	10	31.3
p=0.081									
임금근로자 내 정규직 여부	정규직	12	13.6	7	22.6	4	15.4	1	3.2
	비정규직	76	86.4	24	77.4	22	84.6	30	96.8
주 근로 시간대	주간 근무	107	50.0	7	10.4	72	86.7	28	43.8
	저녁 근무	31	14.5	16	23.9	2	2.4	13	20.3
	밤 근무	42	19.6	35	52.2	2	2.4	5	7.8
	주야간 규칙적 교대근무	2	0.9	1	1.5	-	-	1	1.6
	24시간 교대근무	1	0.5	1	1.5	-	-	-	-
	분할 근무	9	4.2	4	6.0	0	0	5	7.8
	불규칙 교대근무	8	3.7	1	1.5	5	6.0	2	3.1
	기타	14	6.5	2	3.0	2	2.4	10	15.6



제4장

국민건강영양조사 성인 및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 남성의 구강건강 상태 및 행태 분석 결과

01 국민건강영양조사 성인 남성
분석 결과

02 국민건강영양조사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 남성 분석 결과

1. 국민건강영양조사 성인 남성 분석 결과

1) 구강건강 상태 조사 결과

(1) 일반적 특성(표 4-1)

○ 성인 전체 대상자 13,199명이 분석대상이었음.

- 이 중 남성은 5,793명(42.5%)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 이하 27.9%, 40대 17.7%, 50대 19.8%, 60대 이상 34.5%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은 고졸 이하가 62.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에서도 58.8%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월간 음주율은 있음이 53.5%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에서 69.9%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1년간 구강검진 여부는 아니오가 64.6%로 나타났으며, 남성에서 65.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2) 구강건강 상태(표 4-2)

○ 20개 이상 치아 보유율

- 성인 남성 대상자의 20개 이상 치아 보유율은 82.3%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 이하 99.5%, 40대 96.9%, 50대 87.2%, 60대 이상 58.0%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교육 수준은 고졸 이하 75.4%, 대졸 이상 93.9%로 대졸 이상이 15%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p < 0.001$).

○ 무치악자율

- 성인 남성 대상자의 무치악자율은 2.9%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 0.1%, 50대 1.3%, 60대 이상 7.7%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p < 0.001$). 교육 수준은 고졸 이하 4.3%, 대졸 이상 0.7%로 고졸 이하가 5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p < 0.001$),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p < 0.001$).

(3) 보철물 상태(표 4-3)

○ 의치 보유자율

- 성인 남성 대상자의 의치 보유자율은 41.9%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 이하 9.5%, 40대 25.6%, 50대 48.7%, 60대 이상 74.0%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p < 0.001$). 교육 수준은 고졸 이하 49.6%, 대졸 이상 30.3%로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p < 0.001$),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임플란트 보유자율

- 성인 남성 대상자의 임플란트 보유자율은 18.4%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 이하 5.7%, 40대 14.0%, 50대 25.5%, 60대 이상 27.8%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p < 0.001$). 교육 수준은 고졸 이하 18.3%, 대졸 이상 18.4%로 나타났으며($p < 0.001$),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음($p = 0.017$).

(4) 치과 진료 필요자율(표 4-4, 4-5)

○ 의치 필요자율

- 성인 남성 대상자의 의치 필요자율은 14.6%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 이하 5.7%, 40대 14.0%, 50대 25.5%, 60대 이상 27.8%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p < 0.001$). 교육 수준은 고졸 이하 18.3%, 대졸 이상 18.4%로 나타났으며($p < 0.001$),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음($p = 0.017$).

○ 치면세마 필요자율

- 성인 남성 대상자의 치면세마 필요자율은 66.8%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 이하 55.4%, 40대 69.7%, 50대 74.1%, 60대 이상 71.9%로 나타났다($p < 0.001$). 교육 수준은 고졸 이하 69.8%, 대졸 이상 62.0%로 고졸 이하가 5%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p < 0.001$),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음($p = 0.003$).

○ 발치 필요자율

- 성인 남성 대상자의 발치 필요자율은 16.5%로 나타났음. 연령은 40대 이하 16.9%, 40대 16.6%, 50대 13.9%, 60대 이상 17.4%로 나타났음. 교육 수준은 고졸 이하 18.5%, 대졸 이상 13.5%로 고졸 이하가 5% 높게 나타났으며 ($p<0.001$),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음($p<0.001$).

○ 치아 손상 경험률

- 성인 남성 대상자의 치아 손상 경험률은 17.0%로 나타났음. 연령은 40대 이하 15.4%, 40대 16.8%, 50대 20.0%, 60대 이상 16.9%로 나타났음($p<0.001$). 교육 수준은 고졸 이하 18.1%, 대졸 이상 15.8%로 고졸 이하가 높게 나타났으며 ($p=0.049$),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치아 손상 경험 원인(교통사고)

- 성인 남성 대상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치아 손상 경험률은 10.4%로 나타났음. 연령은 40대 이하 8.3%, 40대 12.2%, 50대 8.9%, 60대 이상 12.2%로 나타났음. 교육 수준은 고졸 이하 12.6%, 대졸 이상 6.9%로 고졸 이하가 5%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p<0.001$),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2) 구강건강 인식 조사 결과

(1) 구강건강 인식 상태(표 4-6)

○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좋음)

- 성인 남성 대상자의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좋음)은 60.0%로 나타났음. 연령은 40대 이하 73.0%, 40대 63.9%, 50대 56.0%, 60대 이상 49.2%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음($p<0.001$). 교육 수준은 고졸 이하 53.9%, 대졸 이상 69.4%로 대졸 이상이 15%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p<0.001$),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음($p=0.017$).

(2) 구강건강 행태(표 4-7)

○ 구강 보조용품 사용률

- 성인 남성 대상자의 구강 보조용품 사용률은 45.8%로 나타났음(표 00). 연령은 40대 이하 51.0%, 40대 54.8%, 50대 49.6%, 60대 이상 35.2%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음($p<0.001$). 교육 수준은 고졸 이하 36.9%, 대졸 이상 59.4%로 대졸 이상이 20%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p<0.001$),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음($p<0.001$).

(3) 건강행태(표 4-8)

○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 성인 남성 대상자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47.4%로 나타났음(표 00). 연령은 40대 이하 59.7%, 40대 49.9%, 50대 41.8%, 60대 이상 38.1%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음($p<0.001$). 교육 수준은 고졸 이하 42.0%, 대졸 이상 55.1%로 대졸 이상이 10%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p<0.001$),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음($p<0.001$).

○ 평생흡연율

- 성인 남성 대상자의 평생흡연율은 27.8%로 나타났음(표 00). 연령은 40대 이하 43.0%, 40대 21.1%, 50대 20.6%, 60대 이상 21.7%로 나타났음($p<0.001$). 교육 수준은 고졸 이하 25.2%, 대졸 이상 31.9%로 대졸 이상이 높게 나타났으며($p=0.001$),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월간음주율

- 성인 남성 대상자의 월간음주율은 30.1%로 나타났음(표 00). 연령은 40대 이하 25.6%, 40대 22.4%, 50대 27.6%, 60대 이상 39.0%로 나타났음. 교육 수준은 고졸 이하 33.8%, 대졸 이상 24.9%로 고졸 이하가 5%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p<0.001$),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음($p<0.001$).

(4) 치과의료 이용실태(표 4-9)

○ 연간 구강 검진율

- 성인 남성 대상자의 최근 1년간 구강 검진율은 34.8%로 나타났음(표 00). 연령은 40대 이하 31.2%, 40대 42.1%, 50대 39.1%, 60대 이상 31.2%로 나타났음($p < 0.001$). 교육 수준은 고졸 이하 28.6%, 대졸 이상 44.1%로 대졸 이상이 15%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p < 0.001$),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음($p = 0.017$).

○ 연간 치과 진료율

- 성인 남성 대상자의 최근 1년간 치과 진료율은 57.4%로 나타났음(표 00). 연령은 40대 이하 50.4%, 40대 57.5%, 50대 64.7%, 60대 이상 59.6%로 나타났음($p < 0.001$). 교육 수준은 고졸 이하 54.8%, 대졸 이상 61.0%로 대졸 이상이 5%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p < 0.001$),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음($p < 0.001$).

표 4-1 국건영 성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전체			남성		
		N	분율	(SE)	N	분율	(SE)
전체		13,199	100	0.0	5,793	100	0.0
연령	≥60	4,623	34.5	0.9	1,996	34.8	1.0
	50-59	2,493	19.8	0.5	1,064	18.5	0.6
	40-49	2,419	17.7	0.5	1,041	16.6	0.6
	≤39	3,664	27.9	0.7	1,692	30.0	0.9
교육	고졸 이하	7,890	62.9	0.9	3,234	58.8	1.1
	대졸 이상	4,676	37.1	0.9	2,255	41.2	1.1
소득	하	2,650	20.0	0.7	1,159	19.6	0.8
	중하	2,655	19.8	0.5	1,170	20.1	0.6
	중	2,682	20.0	0.5	1,170	20.2	0.6
	중상	2,634	20.4	0.6	1,140	20.2	0.7
	상	2,540	19.7	0.8	1,135	19.8	0.9

특성	구분	전체			남성		
		N	분율	(SE)	N	분율	(SE)
월간음주율	있음	6,987	53.5	0.6	4,022	69.9	0.8
	없음	6,082	46.5	0.6	1,726	30.1	0.8
평생흡연여부	있음	4,880	36.3	0.5	4,184	72.2	0.7
	없음	8,182	63.7	0.5	1,560	27.8	0.7
신체활동	실천안 함	7,196	56.0	0.7	2,960	52.6	0.9
	실천함	5,357	44.0	0.7	2,528	47.4	0.9
최근 1년 구강검진	아니오	8,474	64.6	0.6	3,756	65.2	0.8
	예	4,587	35.4	0.6	1,988	34.8	0.8

표 4-2 국건영 성인 남성 대상자의 구강건강 상태

특성	구분	20개 이상 치아 보유율				무치악자율		
		N	n	분율	전체 (SE)	n	분율	(SE)
전체		5,793	4,793	82.3	0.5	168	2.9	0.3
		<i>p<0.001</i>				<i>p<0.001</i>		
연령	≥60	1,996	1,163	58.0	1.4	157	7.7	0.7
	50-59	1,064	936	87.2	1.2	10	1.3	0.5
	40-49	1,041	1,009	96.9	0.6	1	0.1	0.1
	≤39	1,692	1,685	99.5	0.2	-	-	-
		<i>p<0.001</i>				<i>p<0.001</i>		
교육	고졸 이하	3,234	2,443	75.4	1.0	140	4.3	0.4
	대졸 이상	2,255	2,126	93.9	0.6	17	0.7	0.2
		<i>p<0.001</i>				<i>p=0.017</i>		
소득	하	1,159	880	75.5	1.6	48	4.3	0.8
	중하	1,170	962	82.2	1.4	40	3.4	0.6
	중	1,170	969	82.5	1.4	33	2.8	0.6
	중상	1,140	958	82.9	1.4	28	2.5	0.5
	상	1,135	1,009	88.5	1.2	19	1.7	0.4

표 4-3 국건영 성인 남성 대상자의 보철물 상태

특성	구분	의치 보유자율				임플란트 보유자율			
		N	n	분율	전체 (SE)	n	분율	(SE)	
전체		5,793	2,417	41.9	0.9	1,020	18.4	0.6	
		<i>p<0.001</i>				<i>p<0.001</i>			
연령	≥60	1,996	1,472	74.0	1.2	540	27.8	1.3	
	50-59	1,064	514	48.7	1.8	262	25.5	1.6	
	40-49	1,041	266	25.6	1.5	149	14.0	1.2	
	≤39	1,692	165	9.5	0.8	99	5.7	0.6	
		<i>p<0.001</i>				<i>p<0.001</i>			
교육	고졸 이하	3,234	1,603	49.6	1.1	584	18.3	0.8	
	대졸 이상	2,255	671	30.3	1.2	406	18.4	1.0	
		<i>p=0.276</i>				<i>p=0.017</i>			
소득	하	1,159	512	44.7	1.8	154	14.2	1.2	
	중하	1,170	475	40.6	1.8	175	15.5	1.3	
	중	1,170	485	39.8	1.8	216	18.2	1.3	
	중상	1,140	461	41.3	1.8	228	19.9	1.5	
	상	1,135	475	42.9	1.8	273	24.4	1.5	

표 4-4 국건영 성인 남성 대상자의 치과 진료 필요자율

특성	구분	의치 필요자율				치면세마 필요자율				발치 필요자율			
		N	n	분율	(SE)	N	n	분율	(SE)	N	n	분율	(SE)
전체		5,793	890	14.6	0.6	5,545	3,769	66.8	1.1	5,793	932	16.5	0.6
		<i>p<0.001</i>				<i>p<0.001</i>				<i>p=0.219</i>			
연령	≥60	1,996	442	21.3	1.2	1,769	1,284	71.9	1.4	1,996	344	17.4	1.1
	50-59	1,064	203	17.4	1.3	1,046	791	74.1	1.7	1,064	156	13.9	1.3
	40-49	1,041	129	12.9	1.2	1,039	734	69.7	1.8	1,041	160	16.6	1.4
	≤39	1,692	116	6.0	0.7	1,961	960	55.4	1.7	1,692	272	16.9	1.2
		<i>p<0.001</i>				<i>p<0.001</i>				<i>p<0.001</i>			
교육	고졸 이하	3,234	618	17.5	0.9	3,027	2,142	69.8	1.3	3,234	587	18.5	0.9
	대졸 이상	2,255	208	9.4	0.8	2,233	1,420	62.0	1.6	2,255	292	13.5	0.8
		<i>p<0.001</i>				<i>p=0.003</i>				<i>p<0.001</i>			
소득	하	1,159	274	22.2	1.5	1,085	776	70.8	2.0	1,159	258	23.5	1.6
	중하	1,170	209	16.8	1.2	1,111	780	69.2	1.9	1,170	222	19.2	1.3
	중	1,170	159	12.4	1.2	1,127	779	67.2	1.7	1,170	184	16.1	1.3
	중상	1,140	128	12.0	1.2	1,098	724	64.6	2.0	1,140	150	14.2	1.3
	상	1,135	112	9.3	1.0	1,105	695	61.9	2.0	1,135	116	9.7	1.1

표 4-5 국건영 성인 남성 대상자의 치아 손상 경험률과 원인

특성	구분	치아 손상 경험률				치아 손상 경험 원인(교통사고)			
		N	n	분율	(SE)	N	n	분율	(SE)
전체		5,743	973	17.0	0.6	973	110	10.4	1.1
		<i>p=0.046</i>				<i>p=0.453</i>			
연령	≥60	1,969	328	16.9	1.0	328	47	12.2	2.1
	50-59	1,055	209	20.0	1.4	209	20	8.9	2.3
	40-49	1,032	172	16.8	1.2	172	21	12.2	2.9
	≤39	1,687	264	15.4	1.0	264	22	8.3	1.7
		<i>p=0.049</i>				<i>p=0.011</i>			
교육	고졸 이하	3,227	583	18.1	0.8	583	79	12.6	1.5
	대졸 이상	2,252	351	15.8	0.9	351	26	6.9	0.9
		<i>p=0.526</i>				<i>p=0.108</i>			
소득	하	1,148	212	18.1	1.2	212	34	14.4	2.6
	중하	1,163	204	17.6	1.3	204	25	10.7	2.5
	중	1,159	172	15.3	1.2	172	18	11.5	3.1
	중상	1,133	191	16.5	1.2	191	19	10.1	2.4
	상	1,127	191	17.4	1.3	191	13	5.1	1.6

표 4-6 국건영 성인 남성 대상자의 구강건강 인식 상태

특성	구분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좋음)			
		N	n	분율	(SE)
전체		5,792	3,446	60.0	1.0
		<i>p<0.001</i>			
연령	≥60	1,996	980	49.2	1.5
	50-59	1,064	579	56.0	1.9
	40-49	1,041	662	63.9	1.9
	≤39	1,692	1,225	73.0	1.4
		<i>p<0.001</i>			
교육	고졸 이하	3,234	1,741	53.9	1.2
	대졸 이상	2,255	1,542	69.4	1.3
		<i>p<0.001</i>			
소득	하	1,158	584	49.4	1.9
	중하	1,170	663	56.7	1.9
	중	1,170	698	60.8	1.7
	중상	1,140	731	65.2	1.8
	상	1,135	756	67.6	1.6

표 4-7 국건영 성인 남성 대상자의 구강건강 관련 행태

특성	구분	구강보조용품 사용률			
		N	n	분율	(SE)
전체		5,793	2,656	45.8	0.8
<i>p<0.001</i>					
연령	≥60	1,996	698	35.2	1.4
	50-59	1,064	518	49.6	1.8
	40-49	1,041	567	54.8	1.9
	≤39	1,692	873	51.0	1.4
<i>p<0.001</i>					
교육	고졸 이하	3,234	1,198	36.9	1.1
	대졸 이상	2,255	1,342	59.4	1.2
<i>p<0.001</i>					
소득	하	1,159	434	36.8	1.6
	중하	1,170	499	43.9	1.7
	중	1,170	500	42.4	1.8
	중상	1,140	584	51.5	1.7
	상	1,135	632	54.7	1.7

표 4-8 국건영 성인 남성 대상자의 건강 관련 행태

특성	구분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평생흡연율				월간음주율			
		N	n	분율	(SE)	N	n	분율	(SE)	N	n	분율	(SE)
전체		5,488	2,528	47.4	0.9	5,744	1,560	27.8	0.7	5,748	1,726	30.1	0.8
		<i>p<0.001</i>				<i>p<0.001</i>				<i>p<0.001</i>			
연령	≥60	1,880	686	38.1	1.4	1,970	424	21.7	1.1	1,973	787	39.0	1.3
	50-59	998	409	41.8	1.9	1,055	211	20.6	1.5	1,055	288	27.6	1.6
	40-49	981	482	49.9	1.8	1,032	225	21.1	1.4	1,033	233	22.4	1.6
	≤39	1,629	951	59.7	1.5	1,687	700	43.0	1.5	1,687	418	25.6	1.3
		<i>p<0.001</i>				<i>p<0.001</i>				<i>p<0.001</i>			
교육	고졸 이하	3,223	1,314	42.0	1.1	3,227	777	25.2	1.0	3,228	1,086	33.8	1.0
	대졸 이상	2,251	1,211	55.1	1.2	2,252	717	31.9	1.0	2,252	556	24.9	1.1
		<i>p<0.001</i>				p=0.340				<i>p<0.001</i>			
소득	하	1,097	449	41.6	1.6	1,148	296	27.0	1.6	1,148	402	35.2	1.7
	중하	1,101	491	45.4	1.9	1,163	291	25.7	1.8	1,164	356	31.1	1.5
	중	1,103	497	46.8	1.8	1,159	326	30.3	1.6	1,161	344	28.9	1.6
	중상	1,083	514	50.0	1.9	1,133	315	27.7	1.6	1,133	337	30.7	1.8
	상	1,094	575	53.0	1.8	1,127	330	28.6	1.7	1,127	281	24.3	1.6

표 4-9 국건강 성인 남성 대상자의 치과의료 이용 실태

특성	구분	최근 1년간 구강검진 여부				최근 1년간 치과진료 여부			
		N	n	분율	(SE)	N	n	분율	(SE)
전체		5,744	1,988	34.8	0.8	5,744	3,305	57.4	0.7
		<i>p<0.001</i>				<i>p<0.001</i>			
연령	≥60	1,970	602	31.2	1.3	1,970	1,193	59.6	1.3
	50-59	1,055	413	39.1	1.8	1,055	679	64.7	1.7
	40-49	1,032	423	42.1	1.7	1,032	585	57.5	1.7
	≤39	1,687	550	32.1	1.2	1,687	848	50.4	1.3
		<i>p<0.001</i>				<i>p<0.001</i>			
교육	고졸 이하	3,227	942	28.6	1.0	3,227	1,793	54.8	1.0
	대졸 이상	2,252	968	44.1	1.3	2,252	1,363	61.0	1.2
		<i>p<0.001</i>				<i>p<0.001</i>			
소득	하	1,148	304	27.7	1.6	1,148	589	51.7	1.8
	중하	1,163	343	29.0	1.7	1,163	614	52.3	1.6
	중	1,159	391	33.9	1.5	1,159	663	56.4	1.7
	중상	1,133	432	37.2	1.7	1,133	676	59.3	1.7
	상	1,127	518	46.6	1.7	1,127	758	67.5	1.6

2. 국민건강영양조사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 남성 분석 결과

1) 구강건강 상태 조사 결과

(1) 일반적 특성

○ 성인 남성 대상자 5,793명 중 이동노동자 직업군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이하 8번 직종) 564명, 단순 노무 종사자(이하 9번 직종) 408명이었으며, 비교 직업군인 사무 종사자(이하 3번 직종) 670명으로 나타났음(표 4-10). 연령은 3번 직종의 50대 이상과 비교 시 8번, 9번 직종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교육 수준은 3번 직종의 고졸 이하와 비교 시 8번, 9번 직종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음. 소득수준은 3번 직종의 중하 이하와 비교 시 8번, 9번 직종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최근 1년간 구강검진 여부는 3번 직종의 예와 비교 시 8번, 9번 직종에서 비교적 낮게 나타났음.

(2) 구강건강 상태

○ 영구치우식경험률

- 성인 남성 대상자의 영구치우식경험률은 90.2%로 나타났으며,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인 8번 직종 90.1%, 9번 직종 88.2%, 비교 직업군인 3번 직종 91.0%로 나타났음(표 4-11). 연령은 3번 직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2$), 월간 음주율은 8번 직종에서 없음보다 있음이 5% 이상 높게 나타났음($p=0.002$).

○ 영구치우식유병률

- 성인 남성 대상자의 영구치우식유병률은 31.7%로 나타났으며,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인 8번 직종 32.5%, 9번 직종 35.4%, 비교 직업군인 3번 직종 21.9%로 나타났음(표 4-12). 연령은 모든 직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5$), 특히 비교 직업군인 3번 직종의 경우 5% 이상 낮게 나타났음($p=0.010$). 소득수준은 3번 직종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졌으며($p<0.001$), 최근 1년 구강검진 여부는 8번 직종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8$), 3번 직종 아니오가 약 10% 높게 나타났음($p=0.017$).

○ 현존 자연치아 수

- 성인 남성 대상자의 자연치아 수는 24.3개로 나타났으며,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인 8번 직종 25.4개, 9번 직종 22.0개, 비교 직업군인 3번 직종 27.3개로 나타났음(표 4-13). 연령은 모든 직업군에서 높을수록 적게 나타났으며, 특히 9번 직종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급격하게 적어지는 경향을 보였음. 교육 수준은 모든 직업군에서 낮을수록 더 적게 나타났으며, 특히 9번 직종의 경우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가 5% 이상 나타났음. 소득수준은 8번, 9번 직종에서 낮을수록 더 적게 나타났으며, 특히 9번 직종의 경우 비교 직업군인 3번 직종에 비해 4개 이상 적게 나타났음. 평생 흡연이 있는 경우 더 적게 나타났으며, 신체활동은 실천하지 않는 경우 더 적게 나타났음. 최근 1년 구강검진은 받지 않았으면 더 적게 나타났음.

○ 치주질환유병률

- 성인 남성 대상자의 치주질환유병률은 37.7%로 나타났으며,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인 8번 직종 46.4%, 9번 직종 48.1%, 비교 직업군인 3번 직종 29.3%로 나타났음(표 4-14). 연령은 8, 9번 직종의 경우 3번 직종에 비해 40대 이상부터 35% 이상 급격하게 높아졌으며($p < 0.001$), 교육 수준은 8번, 3번 직종에서 낮을 수록 높았고, 특히 8번 직종의 고졸 이하는 3번 직종 고졸 이하에 비해 10% 이상 높게 나타났음($p < 0.005$). 평생 흡연은 모든 직종에서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났으며, 3번 직종에 비해 10% 이상 높게 나타났음($p < 0.001$).

○ 저작불편 호소율

- 성인 남성 대상자의 저작불편 호소율은 23.1%로 나타났으며,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인 8번 직종 26.4%, 9번 직종 29.6%, 비교 직업군인 3번 직종 10.9%로 나타났음(표 4-15). 연령은 모든 직종에서 높을수록 높아졌으며($p < 0.005$) 특히 40대 이상에서 3번 직종과 비교 시 1.5배 이상 높게 나타났음. 교육 수준은 9번, 3번 직종 내에서 고졸 이하가 1.5배 이상 높았으며, 3번 직종과 비교 시에도 1.5배 이상 높게 나타났음($p < 0.005$). 월간 음주율은 3번 직종에서 없음이 1.5배 이상 높았으며($p = 0.019$), 평생 흡연은 9번, 3번 직종 내에서 있음이 1.5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3번 직종과 비교 시에도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음($p < 0.05$).

2) 구강건강 의식 조사 결과

(1) 구강건강 행태

○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 성인 남성 대상자의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41.8%로 나타났으며,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인 8번 직종 40.2%, 9번 직종 34.0%, 비교 직업군인 3번 직종 57.7%로 나타났음(표 4-16). 연령은 3번 직종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033$), 교육 수준 역시 3번 직종에서 높을수록 15% 이상 높게 나타났음

($p=0.001$). 평생 흡연은 9번, 3번 직종에서 있음이 15% 이상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3번 직종과 비교 시에도 20% 이상 높게 나타났음($p<0.005$). 신체활동은 8번 직종에서 실천함이 15%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p=0.002$), 3번 직종에서는 5% 이상 높게 나타났음($p=0.018$). 최근 1년 구강검진은 3번 직종에서 아니오가 10% 이상 낮게 나타났음($p=0.003$).

○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율

- 성인 남성 대상자의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율은 42.3%로 나타났으며,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인 8번 직종 41.1%, 9번 직종 29.4%, 비교 직업군인 3번 직종 50.7%로 나타났음(표 4-17). 연령은 모든 직종에서 높을수록 낮아졌으며 ($p<0.05$), 교육 수준은 8번, 3번 직종에서 대졸 이상이 10% 이상 높게 나타났음 ($p<0.05$). 소득수준은 9번 직종에서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p=0.034$), 신체 활동은 8번 직종에서 실천함이 10% 이상 높게 나타났음($p=0.006$).

○ 일일 칫솔질 횟수

- 성인 남성 대상자의 일일 칫솔질 횟수는 2.4회로 나타났으며,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인 8번 직종 2.5회, 9번 직종 2.2회, 비교 직업군인 3번 직종 2.7회로 나타났음(표 4-18). 특히 9번 직종의 경우 3번 직종과 비교 시 약간 낮게 나타났음.

(2) 치과의료 이용실태

○ 연간 미충족 치과의료율

- 성인 남성 대상자의 미충족 치과의료율은 28.8%로 나타났으며,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인 8번 직종 38.6%, 9번 직종 30.4%, 비교 직업군인 3번 직종 23.2%로 나타났음(표 4-19). 교육 수준은 3번 직종에서 대졸 이상이 10% 이상 낮게 나타났음($p=0.003$). 소득수준은 9번, 3번 직종에서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으며 ($p<0.05$), 최근 1년 구강검진은 모든 직종에서 아니오가 10%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9번 직종의 경우 2배 이상, 3번 직종의 경우 5배 이상의 격차가 나타났음 ($p<0.001$).

○ 미충족 치과의료 원인 중 경제적 이유

- 성인 남성 대상자의 미충족 치과의료의 원인 중 경제적 이유는 24.6%로 나타났으며,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인 8번 직종 21.0%, 9번 직종 24.2%, 비교 직업군인 3번 직종 13.0%로 나타났음(표 4-20). 연령은 3번 직종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37$), 소득수준은 3번 직종에서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음($p=0.001$). 월간 음주율은 8번 직종에서 없음이 1.5배 이상 높게 나타났음($p=0.022$).

3) 경제활동

○ 근무 형태

- 이동노동자 직업군 중 8번 직종의 종사상지위는 임금근로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표 4-21). 임금근로자 내 근로 형태는 상용직, 정규직 여부는 정규직, 주 근로 시간대는 주간 근무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9번 직종의 종사상지위는 임금근로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임금근로자 내 근로 형태는 상용직, 정규직 여부는 비정규직, 주 근로 시간대는 주간 근무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비교 직업군인 3번 직종의 종사상지위는 임금근로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임금근로자 내 근로 형태는 상용직, 정규직 여부는 정규직, 주 근로 시간대는 주간 근무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주당 평균 근로 시간

- 성인 남성 대상자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42.9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인 8번 직종 47.4시간, 9번 직종 41.2시간, 비교 직업군인 3번 직종 42.1시간으로 나타났음(표 4-22). 연령은 3번 직종의 50대와 비교하여 8번, 9번 직종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교육 수준은 3번 직종의 대졸 이상과 비교하여 8번, 9번 직종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표 4-10 국건강 이통노동자 관련 직업군 남성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전체		이통노동자 직업군				비교 직업군		
		N	분율 (SE)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n	분율 (SE)	9. 단순노무 종사자 n	분율 (SE)	3. 사무 종사자 n	분율 (SE)	
전체		5,793	100	564	100	408	100	670	100	0.0
연령	≥60	1,996	34.8	134	25.1	209	51.9	67	9.9	1.3
	50-59	1,064	18.5	175	33.6	75	18.4	131	19.5	1.7
	40-49	1,041	16.6	138	20.9	40	9.2	209	29.4	2.1
	≤39	1,692	30.0	117	20.4	84	20.5	263	41.2	2.4
교육	고졸 이하	3,234	58.8	427	76.7	346	84.5	161	23.3	1.9
	대졸 이상	2,255	41.2	137	23.3	62	15.5	509	76.7	1.9
소득	하	1,159	19.6	82	13.0	96	21.9	57	9.7	1.5
	중하	1,170	20.1	138	22.4	111	27.3	103	15.0	1.5
	중	1,170	20.2	142	26.8	89	21.5	142	21.3	1.9
	중상	1,140	20.2	128	23.5	65	18.3	170	24.4	2.0
	상	1,135	19.8	73	14.3	47	11.0	198	29.7	2.3
월간주출	있음	4,022	69.9	389	70.3	287	71.7	557	83.0	1.5
	없음	1,726	30.1	175	29.7	121	28.3	112	17.0	1.5
평생흡연여부	있음	4,184	72.2	449	80.2	301	71.8	488	72.9	1.8
	없음	1,560	27.8	115	19.8	106	28.2	181	27.1	1.8
신체활동	실천안 함	2,960	52.6	346	61.5	218	50.8	313	45.6	2.1
	실천함	2,528	47.4	217	38.5	189	49.2	357	54.4	2.1
최근 1년 구강검진	아니오	3,756	65.2	355	64.4	290	71.9	365	54.0	2.2
	예	1,988	34.8	209	35.6	117	28.1	304	46.0	2.2

표 4-11 국간영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 남성의 영구치우식경험률

특성	구분	전체			이동노동자 직업군						비교 직업군						
		N	n	분율 (SE)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N	n	분율 (SE)	9. 단순노무 종사자 N	n	분율 (SE)	3. 사무 종사자 N	n	분율 (SE)				
전체		5,793	5,224	90.2	0.5	564	515	90.1	1.6	408	365	88.2	1.9	670	614	91.0	1.3
연령																	p=0.002
	≥60	1,996	1,819	91.8	0.7	134	122	92.2	2.3	209	184	85.5	3.1	67	59	88.0	3.9
	50-59	1,064	965	90.4	1.0	175	156	87.3	3.0	75	66	90.0	3.4	131	127	98.0	1.0
	40-49	1,041	924	88.6	1.1	138	125	89.0	3.1	40	35	87.3	5.5	209	183	85.1	2.9
	≤39	1,692	1,516	89.0	0.9	117	112	93.1	3.4	84	80	94.0	3.2	263	245	92.6	2.1
																	p=0.588
교육																	p=0.844
	고졸 이하	3,234	2,894	89.4	0.6	427	392	90.9	1.9	346	312	88.7	2.1	161	148	90.5	2.9
	대졸 이상	2,255	2,052	91.0	0.7	137	123	87.4	3.4	62	53	85.9	4.8	509	466	91.2	1.5
																	p=0.390
소득																	p=0.673
	하	1,159	1,050	90.6	0.9	82	74	89.2	3.7	96	88	91.0	3.1	57	54	92.5	4.6
	중하	1,170	1,046	90.2	1.0	138	125	90.3	2.6	111	95	82.8	4.8	103	91	87.1	4.0
	중	1,170	1,052	89.4	1.1	142	129	88.2	3.6	89	81	92.7	2.8	142	131	91.9	2.5
	중상	1,140	1,027	89.8	1.1	128	121	93.2	3.0	65	58	87.0	5.2	170	160	93.3	2.1
	상	1,135	1,032	90.8	1.0	73	65	88.8	4.0	47	43	89.3	5.1	198	178	90.0	2.7
																	p=0.450
월간음주율																	p=0.678
	있음	4,022	3,644	90.7	0.5	389	360	92.7	1.4	287	260	89.1	2.3	557	510	90.8	1.4
	없음	1,726	1,542	89.2	0.9	175	155	84.0	3.6	121	105	86.0	3.5	112	103	92.0	2.7
																	p=0.974
평생흡연여부																	p=0.355
	있음	4,184	3,785	90.6	0.5	449	409	89.6	2.0	301	266	87.1	2.3	488	447	91.0	1.4
	없음	1,560	1,397	89.3	0.9	115	106	92.1	2.6	106	98	91.1	3.1	181	166	91.1	2.7
																	p=0.876
신체활동																	p=0.129
	실천안 함	2,960	2,690	90.7	0.6	346	315	90.5	1.8	218	196	87.9	2.9	313	292	93.1	1.5
	실천함	2,528	2,256	89.3	0.7	217	199	89.5	2.7	189	168	88.5	2.6	357	322	89.3	2.1
																	p=0.301
최근 1년 구강검진 여부																	p=0.913
	아니오	3,756	3,361	89.6	0.6	355	321	88.2	2.3	290	260	89.5	1.9	365	331	90.9	1.9
	예	1,988	1,821	91.4	0.7	209	194	93.5	1.7	117	104	84.7	4.6	304	282	91.2	1.8

표 4-12 국민영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 남성의 영구치우식유병률

특성	구분	전체			이동노동자 직업군						비교 직업군						
		N	n	분율 (SE)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N	n	분율 (SE)	9. 단순노무 종사자 N	n	분율 (SE)	3. 사무 종사자 N	n	분율 (SE)				
전체		5,793	1,879	31.7	0.9	564	182	32.5	2.5	408	155	35.4	2.9	656	154	21.9	1.8
			$p<0.001$				$p=0.009$					$p=0.009$				$p=0.010$	
연령	≥60	1,996	560	27.1	1.3	134	32	28.6	4.8	209	67	30.3	3.6	67	15	19.0	4.6
	50-59	1,064	316	28.3	1.7	175	48	35.3	5.1	75	24	30.1	6.4	131	31	24.6	4.5
	40-49	1,041	344	32.4	1.8	138	48	35.3	5.1	40	20	44.5	8.9	209	52	22.5	3.2
	≤39	1,692	659	38.6	1.6	117	54	46.2	5.2	84	44	49.1	6.2	263	98	34.9	3.4
			$p=0.051$				$p=0.203$					$p=0.467$				$p=0.974$	
교육	고졸 이하	3,234	1,096	32.9	1.1	427	134	31.1	2.7	346	131	34.7	3.1	161	45	27.6	3.7
	대졸 이상	2,255	687	29.9	1.3	137	48	37.3	4.6	62	24	39.4	6.1	509	151	27.7	2.4
			$p<0.001$				$p=0.647$					$p=0.080$				$p<0.001$	
소득	하	1,159	459	39.2	1.8	82	30	33.5	5.2	96	47	43.8	7.0	57	31	52.4	7.7
	중하	1,170	430	36.5	1.6	138	49	37.1	4.7	111	42	32.5	5.0	103	32	29.4	4.8
	중	1,170	373	31.2	1.7	142	45	31.5	4.5	89	30	36.9	5.9	142	39	27.0	4.4
	중상	1,140	341	29.8	1.9	128	40	33.5	5.0	65	14	22.0	5.5	170	54	31.2	4.3
	상	1,135	274	22.3	1.5	73	18	25.4	6.3	47	22	45.6	7.5	198	40	16.3	2.8
			$p=0.689$				$p=0.432$					$p=0.961$				$p=0.217$	
월간음주율	있음	4,022	1,330	32.0	1.1	389	130	33.6	3.0	287	110	35.3	3.2	557	161	26.6	2.3
	없음	1,726	538	31.3	1.4	175	52	29.9	3.9	121	45	35.6	5.3	112	35	33.2	5.1
			$p=0.001$				$p=0.070$					$p=0.222$				$p=0.769$	
평생흡연여부	있음	4,184	1,392	32.9	1.0	449	149	34.5	2.8	301	119	37.7	3.1	488	140	27.4	2.4
	없음	1,560	474	28.7	1.5	115	33	24.6	4.4	106	36	30.1	5.5	181	56	28.6	3.7
			$p=0.088$				$p=0.686$					$p=0.805$				$p=0.941$	
신체활동	실천안 함	2,960	1,014	32.9	1.1	346	106	31.7	2.9	218	83	34.8	3.8	313	97	27.5	3.0
	실천함	2,528	770	30.4	1.3	217	75	33.7	4.1	189	72	36.1	4.1	357	99	27.8	2.8
			$p<0.001$				$p=0.008$					$p=0.262$				$p=0.017$	
최근 1년 구강검진 여부	아니오	3,756	1,350	35.1	1.1	355	132	36.9	3.1	290	116	37.4	3.5	365	122	32.1	2.9
	예	1,988	516	25.3	1.2	209	50	34.6	3.5	117	39	30.7	4.8	304	74	22.6	2.8

표 4-13 국건영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 남성의 현존 자연치아 수

특성	구분	전체		이동노동자 직업군				비교 직업군					
		N	Mean	(SE)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N	Mean	(SE)	9. 단순노무 종사자 N	Mean	(SE)	3. 시무 종사자 N	Mean	(SE)
전체		5,793	24.3	0.16	564	25.4	0.30	408	22.0	0.59	670	27.3	0.18
연령	≥60	1,996	18.6	0.27	134	21.7	0.81	209	17.5	0.92	67	22.3	1.04
	50-59	1,064	25.1	0.22	175	24.9	0.54	75	24.1	0.95	131	26.0	0.42
	40-49	1,041	27.5	0.12	138	27.6	0.32	40	28.1	0.38	209	27.5	0.23
	≤39	1,692	28.6	0.05	117	28.6	0.18	84	28.6	0.24	263	28.8	0.13
교육	고졸 이하	3,234	22.7	0.21	427	25.0	0.36	346	21.2	0.68	161	26.4	0.48
	대졸 이상	2,255	26.9	0.12	137	26.9	0.41	62	26.7	0.52	509	27.5	0.18
소득	하	1,159	22.8	0.34	82	24.5	0.83	96	21.7	1.62	57	28.3	0.36
	중하	1,170	24.2	0.29	138	26.2	0.45	111	22.2	0.98	103	26.8	0.45
	중	1,170	24.4	0.27	142	25.1	0.70	89	22.5	1.14	142	27.6	0.32
	중상	1,140	24.7	0.27	128	25.7	0.62	65	21.0	1.42	170	26.9	0.45
	상	1,135	25.4	0.23	73	25.4	0.78	47	22.8	1.58	198	27.2	0.27
월간 음주율	있음	4,022	25.0	0.15	389	25.5	0.38	287	22.4	0.68	557	27.3	0.19
	없음	1,726	22.8	0.28	175	25.2	0.55	121	21.0	1.09	112	26.9	0.44
평생흡연여부	있음	4,184	23.6	0.17	449	25.1	0.33	301	21.3	0.67	488	26.9	0.22
	없음	1,560	26.3	0.20	115	26.8	0.65	106	23.9	1.08	181	28.4	0.22
신체활동	실천안 함	2,960	23.3	0.20	346	24.7	0.38	218	20.9	0.77	313	26.9	0.28
	실천함	2,528	25.7	0.16	217	26.4	0.48	189	23.1	0.81	357	27.4	0.21
최근 1년 구강검진 여부	아니오	3,756	23.8	0.19	365	25.3	0.37	290	21.5	0.69	365	27.2	0.25
	예	1,988	25.4	0.17	209	25.7	0.47	117	24.9	0.53	304	27.3	0.24

표 4-14 국건영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 남성의 치주질환유병률

특성	구분	전체		이동노동자 직업군						비교 직업군							
		N	n	분율 (SE)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N	n	분율 (SE)	9. 단순노무 종사자 N	n	분율 (SE)	3. 사무 종사자 N	n	분율 (SE)				
전체		5,545	2,128	37.7	0.9	557	261	46.4	2.4	374	177	48.1	2.9	664	199	29.3	2.2
연령						<i>p<0.001</i>									<i>p<0.001</i>		
	≥60	1,769	967	54.3	1.6	130	80	62.9	4.6	177	98	56.0	4.2	63	32	51.3	7.4
	50-59	1,046	536	49.7	1.8	172	95	52.5	4.3	73	46	63.5	5.8	131	66	46.3	5.0
	40-49	1,039	404	39.2	1.9	138	62	44.6	5.0	40	19	55.1	8.9	208	70	35.4	3.8
	≤39	1,691	221	12.6	1.0	117	24	18.7	4.2	84	14	14.9	4.0	262	31	11.8	2.2
교육						<i>p<0.001</i>											
	고졸 이하	3,027	1,336	43.8	1.2	427	215	51.4	2.8	313	156	50.4	3.1	158	62	41.2	4.5
	대졸 이상	2,233	663	28.7	1.2	137	46	30.3	4.1	61	21	36.7	7.4	506	137	25.7	2.3
소득						<i>p=0.002</i>											
	하	1,085	459	42.8	2.1	81	45	52.0	6.0	88	45	47.7	5.5	57	16	30.0	7.6
	중하	1,111	451	40.2	1.8	136	65	46.4	4.9	98	55	59.4	5.8	103	31	30.7	4.8
	중	1,127	436	37.0	1.7	139	64	46.6	5.0	83	40	43.7	6.5	140	37	22.7	3.8
	중상	1,098	393	34.7	1.8	127	55	43.7	5.2	62	25	44.3	7.3	168	52	32.0	4.2
	상	1,105	379	34.1	1.8	73	31	44.7	6.9	43	12	35.5	7.8	196	63	30.8	4.0
월간 음주율						<i>p=0.790</i>											
	있음	3,900	1,488	37.5	1.1	384	177	46.5	2.9	268	127	48.6	3.7	552	158	27.9	2.4
	없음	1,605	620	38.0	1.5	173	84	46.1	4.5	106	50	46.5	5.0	111	41	36.2	5.0
평생흡연여부						<i>p<0.001</i>											
	있음	3,968	1,743	43.6	1.1	442	227	51.0	2.6	273	144	54.6	3.4	483	163	33.7	2.7
	없음	1,533	362	22.8	1.2	115	34	28.0	4.9	100	32	31.5	5.6	180	36	17.5	2.9
신체활동						<i>p<0.001</i>											
	실천안 함	2,803	1,201	43.0	1.2	339	171	49.7	3.1	198	101	49.7	4.0	309	101	32.2	3.0
	실천함	2,456	800	31.5	1.3	217	89	41.1	3.8	175	76	46.5	4.1	355	98	26.8	2.7
최근 1년 구강검진 여부						<i>p=0.024</i>											
	아니오	3,540	1,406	38.9	1.1	351	170	48.0	3.0	259	126	48.2	3.6	361	114	30.8	2.8
	예	1,961	699	35.4	1.3	206	91	43.6	4.2	114	50	47.0	5.3	302	85	27.6	3.2

표 4-15 국건강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 남성의 저자별면호소율

특성	구분	전체		이동노동자 직업군				비교 직업군					
		N	n	분율 (SE)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N	n	분율 (SE)	9. 단순노무 종사자 N	n	분율 (SE)	3. 사무 종사자 N	n	분율 (SE)
전체		5,742	1,334	23.1 0.7	564	141	26.4 2.3	407	127	29.6 2.6	669	78	10.9 1.3
연령	≥60	1,969	758	37.3 1.3	134	50	38.6 5.0	208	89	39.8 4.0	66	13	18.6 4.9
	50-59	1,055	284	27.3 1.7	175	53	33.5 4.9	75	24	32.1 5.4	131	24	18.5 3.7
	40-49	1,031	141	15.0 1.2	138	26	16.6 3.7	40	7	18.7 7.3	209	19	8.7 2.1
	≤39	1,687	151	8.8 0.8	117	12	9.6 2.8	84	7	6.7 2.5	263	22	7.1 1.6
교육	고졸 이하	3,226	982	30.3 1.0	427	116	28.6 2.8	345	117	31.9 2.8	161	26	16.2 3.2
	대졸 이상	2,252	284	12.6 0.8	137	25	19.1 3.9	62	10	16.9 5.0	508	52	9.4 1.3
소득	하	1,147	376	33.1 1.6	82	25	32.3 5.9	96	34	37.2 5.0	57	10	16.4 4.9
	중하	1,163	290	23.8 1.5	138	31	23.8 4.2	111	35	30.2 5.3	102	14	12.8 3.3
	중	1,159	254	22.0 1.4	142	32	27.6 4.8	88	33	30.7 5.5	142	13	6.9 2.1
	중상	1,133	203	18.6 1.4	128	32	24.5 4.7	65	13	21.7 5.6	170	14	9.2 2.8
	상	1,127	207	18.3 1.3	73	20	24.6 6.3	47	12	23.6 7.2	198	27	12.6 2.5
월간 음주율	있음	4,021	877	21.8 0.8	389	101	27.6 2.8	287	91	29.7 3.1	557	58	9.5 1.3
	없음	1,721	457	26.3 1.4	175	40	23.4 3.6	120	36	29.3 4.5	112	20	18.1 3.8
평생출연여부	있음	4,183	1,114	26.8 0.8	449	119	26.9 2.5	301	104	33.4 3.1	488	65	12.7 1.6
	없음	1,559	220	13.7 1.1	115	22	24.0 5.7	106	23	19.8 4.1	181	13	6.2 1.9
신체활동	심천안 함	2,951	805	27.7 1.0	346	96	28.6 3.0	217	69	32.4 3.6	313	35	10.5 1.7
	심천함	2,525	461	17.7 0.9	217	44	22.6 3.9	189	57	26.5 3.6	356	43	11.3 1.8
최근 1년 구강검진 여부	예	3,754	961	25.7 0.9	355	87	26.6 2.9	290	98	32.0 3.0	365	47	11.8 1.9
	아니오	1,988	373	18.3 1.0	209	54	25.9 3.7	117	29	23.5 4.4	304	31	9.9 1.9

표 4-16 국간영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 남성의 점심 식사 후 찜질실 실천율

특성	구분	전체			이동노동자 직업군						비교 직업군		
		N	n	분율 (SE)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N	n	분율 (SE)	N	n	분율 (SE)
전체		5,744	2,372	41.8 0.8	117	41	40.2 5.2	407	132	34.0 2.7	669	388	57.7 2.1
			<i>p</i> <0.001			<i>p</i> =0.875			<i>p</i> =0.444		<i>p</i> =0.033		
연령	≥60	1,970	648	33.8 1.3	134	46	34.9 5.0	208	72	35.5 3.9	66	29	38.5 7.1
	50-59	1,055	425	40.9 1.8	175	59	37.5 4.8	75	23	36.6 7.1	131	76	58.3 4.7
	40-49	1,032	503	48.8 1.8	138	54	39.2 4.2	40	9	20.5 6.7	209	129	60.7 3.6
	≤39	1,687	796	47.6 1.5	117	41	40.2 5.2	84	28	34.3 5.5	263	154	59.7 3.4
			<i>p</i> <0.001			<i>p</i> =0.292			<i>p</i> =0.168		<i>p</i> =0.001		
교육	고졸 이하	3,227	1,202	33.5 1.2	427	145	36.4 3.1	345	118	35.7 3.1	161	76	45.1 4.2
	대졸 이상	2,252	1,202	53.5 1.2	137	55	42.3 4.6	62	14	25.1 6.2	508	312	61.5 2.3
			<i>p</i> <0.001			<i>p</i> =0.099			<i>p</i> =0.063		<i>p</i> =0.070		
소득	하	1,148	336	28.8 1.6	82	19	26.5 5.4	96	25	23.5 4.5	57	25	43.4 7.6
	중하	1,163	430	38.5 1.7	138	57	45.1 4.6	111	36	35.6 5.6	103	54	49.2 4.9
	중	1,159	485	42.5 1.7	142	45	31.9 4.7	88	34	39.3 5.7	142	88	63.8 4.6
	중상	1,133	509	45.8 1.8	128	49	43.2 5.7	65	18	28.7 6.1	170	100	59.3 4.0
	상	1,127	607	53.1 1.7	73	30	39.0 6.7	47	19	49.9 8.7	198	121	60.8 4.3
			<i>p</i> =0.021			<i>p</i> =0.322			<i>p</i> =0.065		<i>p</i> =0.393		
월간 음주율	있음	4,021	1,708	42.8 0.9	389	133	36.3 3.0	287	84	30.8 3.1	557	330	58.5 2.3
	없음	1,723	664	39.3 1.4	175	67	41.1 4.1	120	48	42.4 5.6	112	58	53.6 5.2
			<i>p</i> <0.001			<i>p</i> =0.130			<i>p</i> =0.002		<i>p</i> =0.001		
평생흡연여부	있음	4,184	1,599	38.5 0.9	449	150	36.0 2.9	301	88	28.6 2.9	488	266	53.5 2.4
	없음	1,560	773	50.2 1.6	115	50	44.9 5.4	106	44	47.9 5.6	181	122	68.8 3.7
			<i>p</i> <0.001			<i>p</i> =0.002			<i>p</i> =0.088		<i>p</i> =0.018		
신체활동	실천안 함	2,952	1,062	36.0 1.1	346	101	31.9 3.2	217	66	29.3 3.4	313	169	52.6 3.0
	실천함	2,525	1,206	48.3 1.2	217	99	47.1 4.0	189	66	38.9 4.3	356	219	61.9 2.7
			<i>p</i> <0.001			<i>p</i> =0.126			<i>p</i> =0.172		<i>p</i> =0.003		
최근 1년 구강검진 이니오	예	3,756	1,366	36.6 1.0	355	111	34.9 3.5	290	89	31.9 3.2	365	190	51.1 3.2
	아니오	1,988	1,006	51.6 1.3	209	89	43.0 3.8	117	43	39.6 4.8	304	198	65.4 3.1

표 4-17 국건영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 남성의 접자기 전 척도실 설문

특성	구분	전체		이동노동자 직업군						비교 직업군					
		N	n	분율 (SE)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전체		5,744	2,411	42.3	237	41.1	2.5	407	121	29.4	2.7	669	332	50.7	2.2
연령	≥60	1,970	522	27.4	40	28.4	4.2	208	49	23.0	3.4	66	19	33.2	7.0
	50-59	1,055	371	34.9	58	33.7	4.6	75	18	25.0	6.0	131	58	41.5	4.6
	40-49	1,032	512	50.1	73	51.8	4.7	40	14	34.8	8.9	209	110	52.9	4.1
	≤39	1,687	1,006	59.7	66	57.8	5.3	84	40	47.1	6.0	263	145	57.8	3.8
교육	고졸 이하	3,227	1,157	36.5	161	37.0	2.8	345	104	30.7	3.0	161	67	42.4	4.2
	대졸 이상	2,252	1,171	52.2	137	54.5	5.1	62	17	22.4	5.1	508	265	53.3	2.7
소득	하	1,148	421	36.3	30	36.0	6.0	96	21	19.2	4.2	57	27	52.4	7.7
	중하	1,163	455	39.2	62	46.0	5.0	111	34	29.8	4.9	102	53	50.8	4.9
	중	1,159	473	40.6	52	35.8	4.7	88	24	25.0	4.6	142	83	54.4	4.8
	중상	1,133	541	48.4	64	49.5	5.1	65	24	37.2	6.8	170	82	48.7	4.2
	상	1,127	514	47.1	28	33.1	5.2	47	18	44.2	8.2	198	87	49.2	3.9
월간 음주율	있음	4,021	1,766	44.1	158	40.7	3.0	287	96	31.9	3.2	557	277	51	2.4
	없음	1,723	645	38.3	79	42.0	4.2	120	25	22.9	4.3	112	55	49.6	5.0
평생흡연여부	있음	4,184	1,713	41.1	185	40.0	2.7	301	90	29.3	3.1	488	247	50.9	2.6
	없음	1,560	698	45.7	52	45.3	5.5	106	31	29.7	5.1	181	85	50.4	4.6
신체활동	실천안 함	2,952	1,109	37.5	128	36.1	3.0	217	57	25.4	3.3	313	162	52.7	3.1
	실천함	2,525	1,220	49.1	108	48.9	3.9	189	64	33.6	4.0	357	170	49.1	3.1
최근 1년 구강검진 여부	아니오	3,756	1,513	40.6	142	38.6	3.1	290	85	31.2	3.2	365	185	51.9	2.9
	예	1,988	898	45.5	95	45.5	3.9	117	36	24.9	4.2	304	147	49.4	3.2

표 4-18 국건강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 남성의 일일 척슬질 횡수

특성	구분	전체		이동노동자 직업군				비교 직업군		
		N	Mean (SE)	8. 징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SE)	Mean (SE)	9. 단순노무 종사자 (SE)	Mean (SE)	3. 사무 종사자 (SE)		
전체		5,793	2.4	0.0	2.5	0.04	2.2	0.06	2.7	0.04
연령	≥60	1,996	2.2	0.03	2.4	0.09	2.1	0.09	2.3	0.16
	50-59	1,064	2.4	0.04	2.4	0.08	2.4	0.15	2.7	0.08
	40-49	1,041	2.6	0.04	2.5	0.08	2.1	0.15	2.8	0.07
	≤39	1,692	2.6	0.03	2.5	0.09	2.4	0.11	2.8	0.06
교육	고졸 이하	3,234	2.2	0.02	2.4	0.05	2.2	0.07	2.6	0.08
	대졸 이상	2,255	2.7	0.02	2.6	0.10	2.3	0.12	2.8	0.05
소득	하	1,159	2.1	0.04	2.1	0.10	1.9	0.12	2.7	0.13
	중하	1,170	2.3	0.03	2.6	0.09	2.1	0.10	2.6	0.09
	중	1,170	2.4	0.04	2.4	0.09	2.2	0.11	2.9	0.09
	중상	1,140	2.5	0.03	2.6	0.10	2.1	0.15	2.7	0.07
	상	1,135	2.7	0.04	2.5	0.11	3.0	0.20	2.7	0.08
월간 음주율	있음	4,022	2.5	0.02	2.4	0.05	2.2	0.07	2.7	0.05
	없음	1,726	2.3	0.03	2.5	0.08	2.1	0.14	2.7	0.11
평생흡연여부	있음	4,184	2.4	0.02	2.4	0.05	2.1	0.07	2.7	0.05
	없음	1,560	2.5	0.03	2.6	0.10	2.4	0.13	2.8	0.07
신체활동	실시간 함	2,960	2.3	0.02	2.3	0.06	2.0	0.09	2.7	0.06
	실시간 함	2,528	2.6	0.02	2.7	0.07	2.3	0.09	2.8	0.05
최근 1년 구강검진 여부	아니오	3,756	2.3	0.02	2.4	0.06	2.1	0.08	2.6	0.05
	예	1,988	2.7	0.03	2.6	0.08	2.4	0.09	2.8	0.07

표 4-19 국간영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 남성의 미충족 치과의료율

특성	구분	전체		이동노동자 직업군						비교 직업군							
		N	n	분율	(SE)	N	n	분율	(SE)	N	n	분율	(SE)				
전체		4,580	1,342	28.8	0.8	455	173	38.6	2.7	320	102	30.4	2.8	543	128	23.2	1.9
			$p=0.007$				$p=0.212$				$p=0.051$				$p=0.610$		
연령	≥60	1,613	448	27.7	1.3	134	105	47.5	5.8	174	53	29.1	4.0	50	12	27.2	8.1
	50-59	896	275	29.4	1.7	146	45	32.1	5.0	62	13	22.0	5.5	114	26	24.1	4.6
	40-49	857	286	34.1	2.0	118	48	40.1	5.6	36	20	51.8	9.8	174	36	19.1	3.0
	≤39	1,214	333	36.4	1.4	86	34	37.3	5.9	48	16	31.3	7.2	205	54	25.0	3.3
			$p<0.001$				$p=0.693$				$p=0.349$				$p=0.003$		
교육	고졸 이하	2,564	821	31.7	1.1	351	136	39.1	3.0	270	91	31.6	3.0	129	44	33.9	4.5
	대졸 이상	1,790	449	24.8	1.2	104	37	36.7	5.5	50	11	24.3	6.7	414	84	19.9	2.1
			$p<0.001$				$p=0.045$				$p=0.065$				$p=0.035$		
소득	하	924	364	37.9	1.8	67	36	53.2	6.7	75	32	40.1	6.9	45	20	37.4	7.4
	중하	899	297	32.5	1.8	105	45	45.1	5.3	88	32	32.8	5.6	75	22	31.0	5.5
	중	921	267	30.5	1.9	115	39	38.0	5.8	70	22	34.3	6.2	117	24	20.3	4.1
	중상	890	232	25.2	1.6	105	36	34.8	5.5	51	13	22.1	6.2	140	35	24.3	4.0
	상	936	177	18.3	1.5	62	17	25.0	5.9	36	3	10.6	6.4	166	27	16.7	3.4
			$p=0.924$				$p=0.949$				$p=0.867$				$p=0.759$		
월간 음주율	있음	3,229	951	28.8	0.9	321	121	38.7	3.2	225	73	30.7	3.4	457	107	23.4	2.1
	없음	1,351	391	28.9	1.6	134	52	38.4	4.8	95	29	29.7	4.9	86	21	21.9	4.6
			$p<0.001$				$p=0.327$				$p=0.792$				$p=0.119$		
평생흡연여부	있음	3,384	1,042	30.8	0.9	367	145	40.0	3.0	239	74	30.9	3.3	402	96	25.0	2.3
	없음	1,196	300	23.3	1.4	88	28	32.6	6.6	81	28	29.2	5.5	141	32	18.3	3.3
			$p=0.003$				$p=0.571$				$p=0.500$				$p=0.078$		
신체활동	실천안 함	2,351	735	30.9	1.1	277	106	39.8	3.7	174	55	32.3	3.9	247	67	27.1	3.0
	실천함	2,003	536	26.4	1.1	177	66	36.5	4.2	145	47	28.5	4.0	296	61	20.2	2.4
			$p<0.001$				$p<0.001$				$p<0.001$				$p<0.001$		
최근 1년 구강검진	아니오	2,655	1,029	38.6	1.1	255	117	48.2	3.6	205	82	39.3	3.6	246	101	42.6	3.5
	예	1,925	313	15.6	0.9	200	56	25.6	3.4	115	20	14.5	3.5	297	27	7.7	1.6

표 4-20 국건강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 남성의 미충족 치과의료 원인 중 경제적 이유

특성	구분	전체		이동노동자 직업군						비교 직업군				
		N	n	분율 (SE)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전체		1,342	315	24.6 (1.6)	173	38	21.0 (4.4)	102	25	24.2 (5.0)	128	19	13.9 (3.0)	
연령						p<0.001							p=0.257	
	≥60	448	143	32.9 (2.7)	46	7	13.3 (5.2)	53	14	26.4 (7.6)	12	5	39.5 (16.1)	
	50-59	275	68	24.3 (3.4)	45	11	28.7 (11.0)	13	3	17.0 (9.6)	26	1	3.9 (3.8)	
	40-49	286	59	23.4 (3.0)	48	15	26.4 (7.4)	20	7	37.2 (12.3)	36	4	10.3 (3.0)	
	≤39	333	45	14.4 (42.2)	34	5	14.4 (6.4)	16	1	7.1 (6.9)	54	9	14.8 (4.9)	
교육						p<0.001							p=0.913	
	고졸 이하	821	238	30.2 (2.1)	136	33	22.4 (5.2)	91	23	23.9 (5.2)	44	8	18.6 (6.0)	
	대졸 이상	449	64	15.4 (2.0)	37	5	15.3 (7.2)	11	2	25.8 (16.5)	84	11	11.4 (3.4)	
소득						p<0.001							p=0.101	
	하	364	139	40.5 (2.9)	36	11	26.4 (7.4)	32	10	34.0 (10.3)	20	8	43.7 (12.1)	
	중하	297	81	28.6 (3.0)	45	9	23.8 (8.3)	32	9	23.3 (7.7)	22	5	19.0 (8.0)	
	중	267	41	16.2 (2.7)	39	8	21.8 (8.5)	22	3	17.4 (9.6)	24	2	8.3 (5.8)	
	중상	232	34	15.5 (3.4)	36	9	18.1 (6.3)	13	1	4.7 (4.7)	35	3	6.2 (3.9)	
	상	177	19	12.1 (2.9)	17	1	7.7 (6.8)	3	2	68.9 (6.4)	27	1	3.5 (3.5)	
월간 음주율						p<0.001							p=0.485	
	있음	951	199	21.0 (1.6)	121	22	17.1 (4.1)	73	16	22.3 (5.6)	107	16	13.8 (3.3)	
	없음	391	116	33.2 (3.1)	52	16	31.3 (7.7)	29	9	29.3 (9.3)	21	3	14.1 (7.6)	
평생흡연여부						p=0.112							p=0.132	
	있음	735	183	25.7 (2.2)	145	30	21.2 (5.1)	74	16	19.6 (5.3)	96	14	12.6 (3.2)	
	없음	536	119	23.6 (2.2)	28	8	19.9 (7.7)	28	9	36.8 (11.2)	32	5	18.6 (8.1)	
신체활동						p=0.460							p=0.340	
	실천안 함	735	183	25.7 (2.2)	106	24	21.2 (5.9)	55	11	20.3 (6.4)	67	7	8.0 (3.1)	
	실천함	536	119	23.6 (2.2)	66	13	19.8 (5.7)	47	14	28.9 (7.1)	61	12	19.8 (5.3)	
최근 1년 구강검진 여부						p=0.700							p=0.315	
	아니오	1,029	244	24.9 (1.8)	117	27	22.3 (5.8)	82	19	21.8 (5.5)	101	14	12.6 (3.2)	
	예	313	71	23.6 (2.7)	56	11	17.6 (5.4)	20	6	35.1 (12.8)	27	5	19.5 (8.5)	

표 4-21 국건강 이동노동자 관련 직업군 남성의 근무 형태

특성	구분	N	전체 분율	(SE)	이동노동자 직업군				비교 직업군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n	분율	(SE)	9. 단순노무 종사자 n	분율	(SE)	3. 사무 종사자 n	분율	(SE)
전체		5,492	100	0.0	564	100	0.0	408	100	0.0	670	100	0.0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2,633	47.2	1.2	364	62.6	2.5	344	84.1	2.2	597	88.4	1.5
	자영업자와 고용주	1,242	22.4	1.1	195	36.3	2.4	49	11.5	1.9	73	11.6	1.5
	무급가족종사자	71	1.3	0.3	5	1.1	0.5	15	4.4	1.3	-	-	-
	비해당(무직)	1,545	29.1	0.9	-	-	-	-	-	-	-	-	-
임금근로자 내 근로 형태	상용직	2,064	77.7	1.0	313	83.6	2.5	166	49.2	3.0	557	93.6	1.1
	임시직	386	15.0	0.9	34	11.8	2.2	104	29.4	2.8	36	5.8	1.1
	일용직	182	7.3	0.7	17	4.6	1.4	74	21.5	2.7	4	0.6	0.3
임금근로자 내 정규직 여부	정규직	1,572	58.5	1.2	233	61.1	3.3	61	18.3	2.7	490	80.8	1.8
	비정규직	1,060	41.5	1.2	131	38.9	3.3	283	81.7	2.7	107	19.2	1.8
주 근로 시간대	주간 근무	3,634	65.4	0.7	440	79.7	2.1	304	71.7	2.8	624	93.2	1.1
	저녁 근무	292	5.7	0.5	28	4.7	1.0	27	7.8	1.7	16	2.4	0.7
	밤 근무	106	2.1	0.3	16	2.9	0.8	11	2.8	0.9	4	0.6	0.3
	주야간 규칙적 교대근무	182	3.2	0.4	62	9.6	1.5	16	4.1	1.1	19	2.9	0.7
	24시간 교대근무	89	1.8	0.3	11	2.1	0.6	45	12.7	2.1	3	0.3	0.2
	분할근무	24	0.4	0.1	-	-	-	2	0.3	0.2	2	0.4	0.3
	불규칙 교대근무	17	0.3	0.1	6	0.9	0.4	1	0.2	0.2	1	0.2	0.2
	기타	5	0.1	0.1	1	0.1	0.1	1	0.5	0.5	-	-	-
비해당(무직)	1,139	21.0	0.8	-	-	-	-	-	-	-	-	-	

표 4-22 국경여 이동을동자 관련 직업군 남성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

특성	구분	전체		이동노동자 직업군			비교 직업군		
		N	Mean (SE)	8. 장기·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n	Mean (SE)	9. 단순노무 종사자 n	Mean (SE)	3. 사무 종사자 n	
전체		4,348	42.9 0.3	564	47.4 0.65	407	41.2 1.09	669	42.1 0.46
연령	≥60	1,054	38.1 0.80	134	42.9 1.70	208	37.8 1.57	67	34.8 2.23
	50-59	915	45.2 0.53	175	47.6 0.92	75	49.1 2.08	131	40.3 0.93
	40-49	949	46.6 0.49	138	50.5 1.32	40	46.4 2.99	208	43.0 0.74
	≤39	1,430	42.7 0.50	117	49.5 1.23	84	40.3 2.01	263	44.0 0.67
교육	고졸 이하	2,351	42.0 0.47	427	47.3 0.72	345	39.8 1.15	161	39.9 1.24
	대졸 이상	1,997	44.0 0.37	137	47.7 1.31	62	48.8 2.46	508	42.7 0.44
소득	하	733	42.0 0.87	82	50.8 1.86	95	34.9 2.25	57	40.3 2.18
	중하	900	43.5 0.71	138	48.7 1.26	111	39.5 1.77	103	42.9 1.30
	중	914	43.6 0.54	142	47.4 1.14	89	41.5 2.33	142	43.4 0.80
	중상	913	42.7 0.58	128	46.2 1.37	65	47.1 2.34	170	42.0 0.68
	상	883	42.7 0.66	73	44.7 1.49	47	47.2 3.30	197	41.4 0.87
월간 음주율	있음	3,220	43.1 0.35	389	46.3 0.81	286	42.6 1.27	557	42.3 0.51
	없음	1,123	42.6 0.60	175	50.0 1.07	121	37.7 2.21	111	41.1 1.15
평생출연여부	있음	3,167	43.7 0.38	449	47.5 0.77	301	41.7 1.25	488	42.4 0.54
	없음	1,175	41.0 0.58	115	46.9 1.63	105	40.2 2.14	180	41.1 0.89
신체활동	실천함	2,273	43.7 0.46	346	48.2 0.80	218	39.7 1.65	312	41.3 0.70
	실천함	2,070	42.1 0.38	217	46.2 1.12	188	42.8 1.33	357	42.8 0.59
최근 1년 구강검진 여부	아니오	2,766	42.8 0.42	355	47.3 0.86	290	40.1 1.37	365	41.8 0.64
	예	1,576	43.2 0.45	209	47.6 1.01	116	44.4 1.74	303	42.4 0.69



제5장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 심층 면접 분석 결과

01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 심층 면접 분석 결과

1.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 심층 면접 분석 결과

1) 패러다임 모형 구축

- Strauss & Corbin 근거이론(Grounded theory)에 기초하여 심층 면접 질적 분석을 시행하였음
 -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의미 있는 진술을 개방 코딩(open coding)하고, 축 코딩(axial coding)과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 과정을 통해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침.
 - 개방 코딩 과정에는 참여자에 의해 진술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인 비보 코딩(in vivo coding)방식을 선택하였음.
 - 이를 통해 대상자의 경험이나 실제로 도출된 개념을 통해 서울시 이동노동자의 구강건강 행태 및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였음(그림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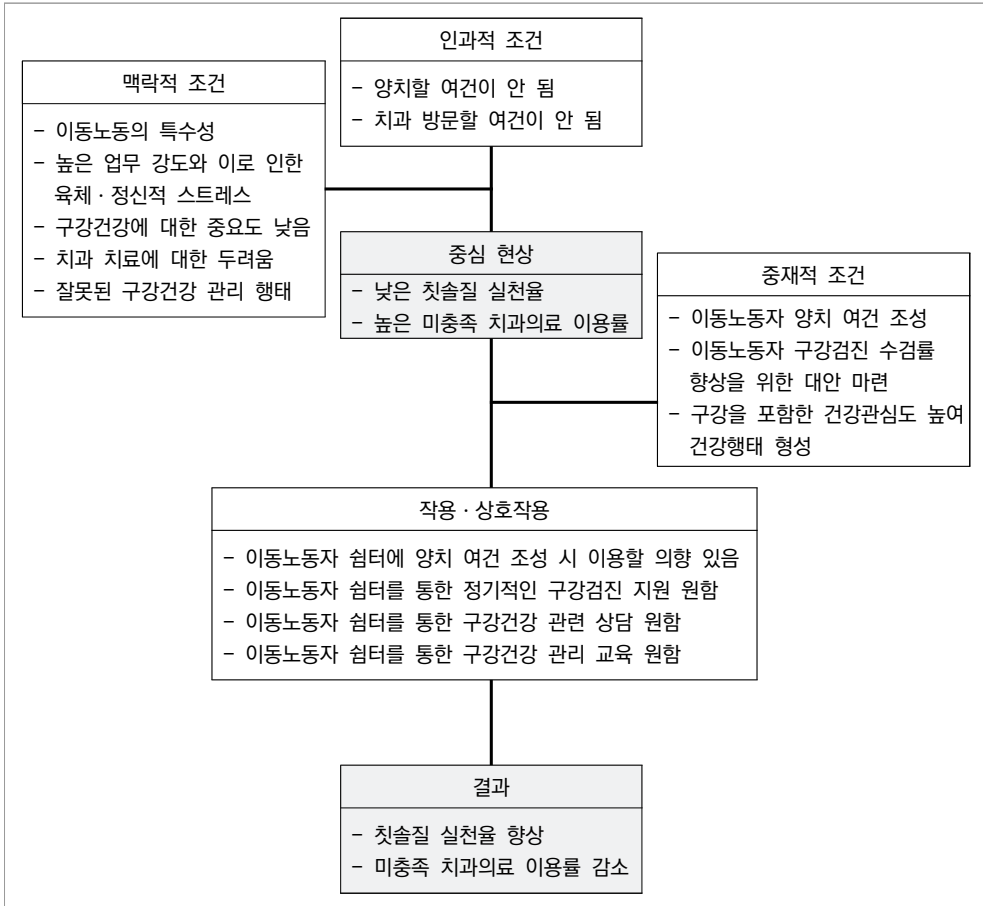
2) 중심 현상: 낮은 칫솔질 실천율, 높은 미충족 치과의료 이용률

- 축 코딩을 통해 확인된 중심 현상은 이동노동자의 낮은 칫솔질 실천율과 높은 미충족 치과의료 이용률이었음. 이동노동자 대부분은 근무 중 칫솔질 수행이 어렵거나, 필요한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존재함.

3) 인과적 조건

- 인과적 조건은 중심 현상을 유발한 원인 요소를 의미함. 양치 장소나 도구, 시간, 외부인으로 양치 시설 이용하기의 어려움 등으로 양치할 여건이 안 되거나, 이동노동자의 특성상 치과 예약 시간을 지키거나 예약 장소로 이동하기가 어렵거나, 근무복을 입고 방문하는 게 부끄럽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 방문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구술하였음.

그림 5-1 서울시 이동노동자의 구강건강 행태 및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1) 양치할 여건이 안 됨

○ 양치 장소가 없음

- 이동노동자들은 양치할 장소가 없어 근무 중 칫솔질을 실천하기 어렵다고 진술함. 이는 고정된 근로 장소가 없는 이동노동자의 특성에 기반하는 것으로 세면대를 이용할 수 있는 고정된 장소가 없어 다른 장소를 이용해야 하는 특성이 있었음. 대안으로 이동노동자 쉼터나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근무 시간이 야간인 경우도 많아 이용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아무래도 고정된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 화장실도 잘 안 보이고, 밤에 (화장실) 찾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대부분 들어가서 양치할 공간을 찾기가 어려워요. 화장실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다 잠가두잖아요. 밤 9~10시에는 거의 잠가놓고.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낮에는 되어 있지만... 일하는 중에는 양치하기 힘들어요... 고정된 장소가 없다는 게 한 70% 되는 것 같아요. 양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게 매우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5점이에요.”(하00, 53세, 대리)

“마땅히 들어가서 양치할 데가 없다, 그런 것도 있죠. 하물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디 화장실 갈 때도 뭐 마땅한 데 없고요. 다 잠가 놓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데... 건물 같은 데, 올라가고 이럴 때는요. 참고 참았던 건데, 뭐 환장하는 거죠. 화장실 찾느라고 뛰어다니고 그럴 때 많아요. 양치를 어떻게 해요. 화장실도 하물며 갈 데가 없는데...”(김00, 56세, 배달)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거... 항상 새로운 장소잖아요. 목적지가 거의 다 뭐 99% 달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쉽지 않지... 장소도 이동 중이라 마땅치 않고, 찾아서 들어가기도 힘들고. 찾아서 들어가도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거 자체가 부담스럽고 눈치를 그쪽에서도 준다는 거죠. 어떤 때 쉴 때도 보면 쉬는 곳 찾기도 힘들어”(진00, 62세, 대리4)

○ 양치 도구가 없음

- 이동하는 직업의 특성상 고정된 곳에 양치 도구를 놓아둘 수 없어서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데, 이동용 도구를 마련하고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였음.

“전업 때는 이렇게 (양치 도구) 안 갖고 다녔어요. 분실위험이 가장 크고 밤에 또 찾기가 어려우니까... 양치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대리할 때 공간 없는 거랑 양치 도구 가지고 다니기 좀 번거로운 거. 그리고 분실할까 봐 양치 용품을 가지고 다니기 힘들고... 갖고 다니기 불편한 게 30%”(하00, 53세, 대리)

“양치 도구도 안 갖고 다니죠. 배가 고파도 간식도 못 먹는데, 양치를 어떻게 해요. 화장실도 하물며 갈 데가 없는데... (만약에) 양치 도구도 있고 공중화장실도 있어요? 그러면 양치할 수 있으면 하죠.”(김00, 56세, 배달)

“(근무 중 첫술질은) 못하고 있죠. 뭐. 내가 직장인이면, 사무실 한편에 첫술 놓고 하면 되고 알 텐데, 그게 아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동하다 보니까... 사업할 때는 사무실에 (양치 도구)가 있으니까 그때는 세 번 양치하기도 했죠”(우00, 61세, 쿡)

○ 양치할 시간이 없음

- 근무 시간이 분 단위로 이루어지고 시간이 곧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보니 따로 양치할 시간을 따로 내서 칫솔질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진술함.

“아무래도 근무하는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게. 이동을 계속해야 하니까, 저의 같은 경우는 (바빠서) 밥도 편하게 못 먹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정00, 64세, 배달)

“점심때 양치는 거의 다 거르죠... 시간상으로도 쫓기고. 빨리 갖다줘야 하니까... 밥을 식당에 가서 먹을 시간도 안 되니까. 양치는 (더 안되지). (밥도) 밖에서 먹으니깐. 거의 (양치도) 거르지... 칫솔, 치약. 그거는 내가 가지고 다니지. 가끔. 갖고는 다니는 데 시간에 쫓겨서 잘 못 해. 근무 중에 양치해야 한다고 해도 시간 때문에 못 해. 만약에 퀵서비스가 시간을 덜 쫓기면, 그러면 양치하겠죠”(김00, 69세, 킥)

“일이 바쁠 때, 택배하고 와서 타이밍을 놓치면 안 하게 되는 거죠. 타이밍을 놓쳐서 점심시간에 안 하고, 바쁘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지... 갑자기 한 번에 물건이 들어온다거나, 급히 전해줘야 한다거나 그런 게 많으니까... 일이 갑자기 또 바빠질 수도 있잖아요. 식사하고 여유가 있으면 쉬면서 할 수 있지만, 일이 바쁘다 보면 바로 이동해야 할 때가 많아서... 배송 업무는 건당인데, 건건이 먹는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손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해서... 일할 때 시간에 쫓기고 이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양치하는 걸 힘들게 하는 거죠”(이00, 61세, 택배)

○ 외부인으로 양치 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부끄러움

- 고정된 근무 장소가 없어 외부의 양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외부인으로 양치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그들 자신을 포함하여 부정적 시선을 보이고 있었음.

“집에서는 100% 하는데 나가서 하는 건 좀... 직장 다닐 때는 했었죠. 사무실에서는 했는데, 그것도 나가서는 안 했죠. 나가서 남의 화장실에서는 안 하고... 그건 나 자신이 좀 민폐 같아. 내가 양치를 마음 편하게 하는 공간이 없다는 거. 내가 하는 데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회사 직원들만 있는 사무실은 괜찮은데, 너무 공용공간에서는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 자신이 보기 안 좋아요. 자기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좋은데, 내가 볼 때는 이물질이 뵈면 또 소리가 탁하게 나고. 좀 그렇죠”(천00, 60세, 대리)

“공중화장실에서 양치하는 행위 자체가 좀 부끄럽고 민폐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독립된 공간, 또는 양치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설 이런 게 있으면, 장소가 제공되면 양치하죠…. 근데 회사 같은 데 다닌다든지 제가 당구장을 운영할 때든지 그럴 때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그런 화장실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했었죠”(길00, 46세, 배달)

“찾아서 들어가도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거 자체가 부담스럽고 그쪽에서도 눈치를 준다는 거죠. 어떤 때는 쉬는 곳 찾기도 힘들어, 우리는. 화장실이 없는 데도 있고, 2층에 가야 하는 데도 있고, 이게 건물마다 다르잖아요”(우00, 61세, 쿡)

“구강용품이 있어도 밖에서 양치하는 게 꺼려지고”(진00, 62세, 대리)

“저희가 밥을 먹는 장소가 저기 건물인데 거기 화장실이 좀 커요. 거기서 양치하는 라이더들 많이 있던 한데. 근데 저는 공중화장실에서 양치하면 약간 노숙자 같은 느낌도 들고. 그냥 하기 싫더라고.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양치하지 말라는 문구 본 적 있어요. 어제도 한 군데에서 본 적 있어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에서 양치하는 행위 자체가 좀 부끄럽고 좀 민폐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길00, 46세, 배달)

“식당에서 양치하는 건 그렇죠. 식당에서 밥 먹고 바로 이빨 닦기가 애매하죠. 양치 도구는 항상 갖고 다니는데. 이동할 때도. 자기 사무실이 아닌 밖에 있는 화장실에서는 양치하면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유난 떠다고 볼 수도 있고. 조금 멋쩍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지”(이00, 61세, 택배)

(2) 치과 방문할 여건이 안 됨

○ 치과 예약 시간을 지키거나 예약 장소로 이동하기 어려움

-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불규칙하며, 밤늦게 혹은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곧 수익이 되는 구조 등으로 인해 정해진 시간에 운영하는 치과를 방문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다고 지적함.

“시간도 부족하고 토요일에 좀 쉬어야 하는데, 가야 하니까…. 전업으로 할 때는 토요일도 거의 못 갔어요. 왜냐하면 금요일에 밤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전업으로 할 때는 병원에 거의 못 갔다고 보면 돼요”(하00, 53세, 대리)

“그냥 시간적인 게 더 큰 거 같아요. 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치료하려면 예약하고 가야 해서. 가려면 시간을 빼야 하는데,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면 잠깐 가면 되는데 일 자체가 불규칙적이라. 또 일이 우선이 되다 보니 그 시간에 치과 가는 게 쉽지 않죠. 치과가 거주하는 지역에 가까우면 그냥 잠깐 갔다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치과도 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치료하기 위해서 서너 시간 왔다 갔다 하면 비워야 하니까...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게 아니다 보니 시간 내기가 쉽지 않죠”(김OO, 50세, 배달)

“(의료급여 2종이라서) 경제적 문제는 거의 없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간 거. 그것도 있죠. 보통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치과가 빨리 여는 데가 보통 평균 9시 반이예요. 그러면 10시에 예약했어, 그러면 오전 일을 못 합니다. 그리고 치과 근처에서 킥서비스를 해야 하고... 치과 진료받지 못했던 주된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 하루에 반이 날아가 버린다니까... 병원 예약하려면 오전이나 오후를 포기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약속하면, 예를 들면 한 시간 했잖아요, 한 시간인 줄 알아요. 오후 포기한 거야 왜? 10시 넘고부터는 방향이 이런 거(치과 동선 쪽)만 잡아야 해. 다른 데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가면 안 돼”(현OO, 57세, 킥)

○ 근무복(작업복)을 입고 방문하기 부끄러움

- 택배나 킥서비스, 배달의 경우 근무 시간에 주로 근무복을 입기 때문에 근무 중간에 치과 가려면 근무복을 입은 채로 방문해야 하는 점이 주로 도로 위에서 활동하는 직업의 특성상 매연이 묻어 있고, 주변의 시간으로 인해 부끄럽다고 진술했음. 이는 이전의 근무복을 입은 채로 다른 장소를 방문하였을 때의 경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저도 (근무복 입고) 이렇게 (치과든) 어디 안 다녀요. 킥을 하고 있지만 어디 간다면 사복으로 갈아입고 가야지... 그게 (작업복은) 바람하고 매일 매연이 묻어나니까 안 좋죠. (근무복을 입고) 식당 가도 대우가 그만큼 낮아지지. 지금도 식당가면 그래요. 셀러리맨들하고 저처럼 입고 온 사람들과 벌써 대하는 게 틀려요. 식당도... 치과 방문할 때 작업복도 갈아입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죠... 두 번 갈 거, 한 번 가게 만들죠”(우OO, 61세, 킥)

“동네에 가지 않는 한 복장도 다 갖춰요. 그렇게 하고 치과 가기가 뭐해서, 일반 복장으로 가지. 가서 검사하고 뭐하고. 다시 집에서 가서 또 복장 갖춰야 해. 이러면 하루에 반이 날아가 버린다니까”(현OO, 57세, 킥)

○ 경제적 어려움

- 치과의 경우 비보험도 많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도 구강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생각이 있어 가게 되면 돈이 많이 들 것이라는 예상으로 치과 방문 자체가 두렵다고 진술하였음.

“경제적인 거 있죠... 우리는 딱 시간에 따라 돈 버는 거니까. 이거는 거짓말 못해요.”(천OO, 60세, 대리)

“치과는 좀 담을 쌓고 사는데... 왜냐면 치과는 한번 가면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의료보험도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지키고 살자, 주의죠. 경제적인 게 가장 강력하죠”(최OO, 68세, 대리)

“가면 일단 천오백? 2천? 들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임플란트할 때도 한 달에 조금씩 내고 그랬거든요. 한 일 년 가까이 냈던 거 같아요. 근데 매월 조금씩 분납으로 낼 수 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하고 싶어요... 치료가 필요한 거를 0에서 5점이고 한다면 절실하니까 5점... 경제적 이유를 %로 치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정OO, 64세, 배달)

“시간을 다른 데다 쓰면 그만큼 돈을 못 버는 거니까. 시간이 돈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직장 인들은 구강검진이나 건강검진을 나가면 휴가 처리도 아니고 그냥 일하는 걸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일하는 걸로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치과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났을 때는 하필 돈이 없었어요... 그때 경제적인 것 때문에 못 하고 나서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안 갔죠. 아예 그냥 한 번 신경 안 쓰니까 또 안 가게 되더라고”(길OO, 46세, 배달)

“경제적인 게 100%. 30~40만 원이 있으면 바로 임플란트하죠. 그래서 경제적인 게 제일 크다, 그렇지... 아프면 치과에 무조건 가야지. 이빨은 아프면 치과 안 가고 못 배기니까... 지원해 준다고 하면 하지. 근데 치과 가면 검진하고 치료하라고 하니깐. 나는 돈이 없는데”(김OO, 69세, 쿡)

4)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중심 현상의 발생에도 기여하고, 중심 현상에 대한 개인의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접적 영향을 주는 범주들의 모임을 뜻함. 소속이나 고정된 사무실이 없는 이동노동의 특수성, 높은 업무 강도와 이로 인한 육체·정신적 스트레스, 구강건강에 대한 낮은 비중이 해당 요인으로 제시되었음.

(1) 이동노동의 특수성

- 소속이나 고정된 사무실이 없고, 주로 이동하거나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
 - 이동노동의 특성상 고정된 근무 장소가 없어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양치나 치과 방문의 여건 조성이 더욱 어려움. 고정된 사무실이 없어 양치 도구를 두고 다닐 수 없고, 근무 장소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치과 가려면 이동하는 업무를 포기해야 하는 등 이러한 근무 조건이 양치나 치과 방문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진술하였음.

“일단 고정된 사무실이 없어서 업무하는 중에는 양치하기가 힘든 것도 있고, 분실할까 봐 양치 용품을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고... 일하는 중에는 양치하기 힘들죠”(하00, 53세, 대리)

“(근무 중 치솔질은) 못 하죠. 내가 직장인이라면, 사무실 한편에 치솔 놓고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동하다 보니까”(우00, 61세, 쿵)

“어제 갔던 데를 갈 수 있지만 안 가던 데를 가니까. 항상 새로운 장소잖아요. 목적지가 거의 다 뭐 한 99%가 달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가 쉽지 않지... 장소도 이동 중이고 장소도 마땅치 않고 찾아서 들어가기도 힘들고”(우00, 61세, 쿵)

“일정에 따라 이동해야 하니까 점심도 딱 정해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여러 가지 환경이 집처럼 갖춰지기 쉽지 않으니까 (양치를) 주로 집에서 하게 되고, 낮에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김00, 50세, 배달)

“하루에도 몇 번씩 이동하다 보니까”(우00, 61세, 쿵)

- 근무 여건상 같은 직종 내 혹은 업무로 인해 맺는 사회적 관계가 부족함
 - 이들은 대부분 단독으로 근무하고, 동료나 소속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라이더유니온처럼 별도의 활동하지 않는 경우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또한 업무 중 대화의 기회가 적어 사회적 교류를 맺는 상대의 부재로 업무 중 구강위생에 대해 신경을 잘 쓰지 않게 되면서 의식적으로 치아를 닦고, 적극적으로 치과 진료 받는 경우가 일반 직장인보다 적은 것 같다고 진술함. 또한 업무 중 외로움을 호소하기도 함.

“내가 사무실에 있었으면 사람도 만나고 대화하면서 의식이 돼서라도 양치를 한 번 더 하게 돼요. 그리고 치과도 더 자주 갔겠죠. 시간을 내서”(우OO, 61세, 킷)

“사람마다 여행, 책, 사람, 술, 노름, 여러 가지 그런 자기만의 낙이 있잖아요, 취미 생활처럼. 근데 저는 취미 생활할 시간이 없잖아요…. 다른 여유 시간이나 이런 것도 없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혼자 하는 일이다 보니까 혼자서 대화를 정말 하루 동안 안 할 때도 많다는 거죠”(선OO, 52세, 배달)

- 특수고용직으로 직장 구강검진의 부재, 치과 진료 비용을 본인이 전부 부담
 - 이동노동자 대부분은 특수고용직으로 직장 구강검진이 없고, 이를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며, 구강검진을 가더라도 근무 중으로 처리되지 못함.

“직장을 다니면 직장 건강보험 이런 게 있잖아요, 소속이 있으면. 근데 대리는 따로 그런 직장 건강보험이 없어요”(최OO, 68세, 대리)

“지금 건강검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강검진 같은 건 그런 게 없잖아요…. 직장인은 사실 직장 구강검진 때 돈이 나오거든요…. 검사를 받든 뭘 하든 시간을 일한 걸로 인정해주니까. 그리고 건강 검진받으러 간다 그러면 제약이 없잖아요. 그런 건 반차도 아니죠. 그냥 근무가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보장이…. 개인 자영업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그런 게 안 되지. 그러니까 개인이 모든 걸 해결해야 하거든요”(김OO, 56세, 배달)

“직장인들은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서 나가고 그런 게 있는데…. 저도 딸이 건강검진을 해줘서 1~2년에 한 번씩은 해요. (직장인은 건강 검진하면) 거기는 봉급이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점심시간에도 많이 가고…. 킷서비스는 구강이든 건강검진이든 지원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직종으로 분류가 안 돼 있으니까요. 불만이 많죠. 정당한 직종으로 인정받고, 의무도, 권리도 인정받고 싶죠. 이전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누구는 죽고 상해 입어도 보장 안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소득이 워낙 들쭉날쭉하니깐 (코로나 손실보전금 등) 한 푼도 못 받았지”(우OO, 61세, 킷)

(2) 높은 업무 강도와 이로 인한 육체·정신적 스트레스

- 경제적 어려움으로 무엇보다 생계가 우선함
 - 이동노동자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구강건강이나

치과 치료를 받을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 또한 치과 진료에 대한 비용적 부담으로 아프지 않으면 치과를 방문하지 않고, 아프더라도 미루는 경향이 있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경제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 제가 돈을 번다고 해도 다른 쪽으로 먼저 지출이 돼 버리고…. 내가 치료받고 싶었는데 못 받은 거에 대한 어려움은 굉장히 절실해요. 이걸 받아야겠다. 빨리 치료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절실한데 제 생활 여건상 순서에서 항상 밀리고. 가장 뒤쪽으로 밀린 거죠. 돈 벌면 우선 지출해야 하는 게 있어서 하고 나면 저한테 쥐어지는 게 없다 보니 그런 데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구나, 조금 절박한 하다는 생각도 드니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바로 하고 싶어요”(정OO, 64세, 배달)

“근데 아프지 않고 정말 괴팍한 상황이 아니면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일단은 생계가, 생계가 우선이고 벌어야 하니까, 그런 거고. 생계가 우선이라는 거는 더 많은 꼴을 받아야 하니까. 그렇죠. 돈을 벌어야 하니까”(김OO, 56세, 배달)

“근무하는 동안 양치한 건 대리하면서는 없는데…. 사실 그 시간에 그냥 콜 하나 더 하고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나름대로 수입이 있어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안 들어요. 빨리 콜 하나라도 더 잡아야겠다는 생각이니까. (양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는 거죠…. 특히나 지금은 콜 잡는 게 더 어려워져서 일할 때 여유가 좀 부족하죠”(진OO, 62세, 대리)

○ 소득의 불확실성, 고정된 기본 소득 부재, 시간의 금액화로 일 중심 사고

- 이동노동자들은 고정된 기본 소득이 없으므로 일반 직장인보다 외부 상황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큼. 선행연구와 같이 이동노동자는 대부분 자신의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었음. 플랫폼 노동의 경우 일감 한 개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이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서 자신이 보유한 시간을 휴식, 인간관계, 봉사활동 등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자원으로 환산하는 경향이 강했음. 이러한 특성은 일 중독을 유발하여 근무 시간 내 찻술질 실천이나, 치과 방문과 같이 일하지 않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이에 따라 초과근무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근무환경이 전신 건강 및 구강건강의 악화를 초래하여 건강의 악화를

경험했다고 보고함.

“초창기 때는 하루에 18시간 하고 그랬어요. 탁송도 하고. 그때는 생활비를 300% 벌어야 해서 집에 돈을 갖다주려면 아침에 7~8시까지도 콜 잡아... 옛날에는 18시간 일했죠. 초창기 때는 더 많이 했는데... 체력소모도 크고, 힘이 없고, 피로가 회복되지 않아서 건강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밤이 뒤바뀐다는 게 엄청난 체력소모고. 조물주가 만들 때 낮에 일하고 밤에 쉬라고 한 건데, 우리가 오죽했으면 밤에 일하겠냐고... 그리고 밤에 일하는 게 힘은 안 들어요. 근데 맥이 없어. 사람이 괜히 힘이 없어”(전OO, 60세, 대리)

“코로나 전에는 밤새우고 그랬죠. 거의 15년을 최근 1~2년 빼고는 거의 밤새웠죠. 한 10년은 밤새웠을 거예요”(전OO, 60세, 대리)

“최근에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게 구강에 염증이 생기던데 인터넷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피곤하면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잇몸도 다 붓고 그래서 치과에 가서 치료받긴 해야 하는데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약만 먹고 있는데. 먹으면 좀 나아지는 해요”(김OO, 50세, 배달)

“밤 6시부터 11시 40분까지 약 5시간 40분 정도만 자고 나머지는 다 일. 그러니까 비 오는 날 같은 때는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문도 비 오는 날은 늦어지니까... 이일을 20년 했죠.”(선OO, 52세, 배달)

“(일일) 약 14시간 정도. 거의 22년 정도... 돈을 벌려고 자정까지 일했어요. 보통 8시에 시작 하죠. 자정까지 거의 종일. 한 5년 전부터 줄였고요. 피로가 회복되지 않아서 건강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갑상샘 기능 이상으로 피로를 많이 느끼죠. 피로도 높고. 꽤 오래됐어요... 회사에서 일했을 때랑 비교하면 지금이 더 나쁘죠. 체력이 망가졌어요, 일하면서. 이걸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주 엄청난 노동이죠. 처음에는 제가 채무도 있고 이러니까 돈을 벌려고 자정까지 일했어요... 나중에는 갑상샘까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평생 약 먹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오후 되면 엄청 피곤해요. 저도 그 갑상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기운이 없어요. 이게 밤낮이 바뀐 사람들이나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난다던데. 이거 때문에 그런 거 같고”(이OO, 61세, 쿵)

○ 대부분 시간에 쫓기면서 근무하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큼

- 시간에 쫓기면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리적 압박을 자주 경험함. 정신적 스트레스와 여유가 없는 근무환경으로 치과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나, 구강건강을 챙길 여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음.

“20분 안에 픽업해야 해요. 안 그러면 연락이 와요. 신호 받고 20분 안에 픽업해야 하는데 늦으면, 다음에도 계속 그러면 콜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콜 주문들이 나오고, 여기서 올렸는데, 20분이 넘으면 나를 막아놔요. 자동으로. 시간 엄수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죠. 왜냐면 이게 점수가 돼요. 송이동에서 송북동을 가요.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타산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개 세 개 이렇게 잡아야 하는데, 세상이 나 잘되라고 여기 하나 픽업하면 또 뜨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2개 잡으면 빨리해야 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어떨 때는 화물 엘리베이터만 이용하게끔 해놓은 데도 많아요. 그런 데는 한참 걸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빨리해야죠….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더 스트레스받아요”(이00, 61세, 쿡)

“치과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안 났어요. 정신이 없었죠…. 바쁘게 생활하면서, 구강건강 챙기기 어렵기도 했고….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 더 나빠진 것 같죠. 방치했으니까. 그냥 정신없이 살고, 뭐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당뇨 이런 게 복합적으로…. 그때 경제적인 것 때문에 못 하고 나서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안 갔죠. 한 번 신경 안 쓰니까 또 안 가게 되더라고요”(갈00, 46세, 배달)

“힘들어.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더 힘들지. 직업 분류한다고 하면, 3D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 노동이니까…. ”(이00, 61세, 택배)

- 대부분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이고 혼자서 근무하다 보니, 업무상 노출되는 폭언, 비하성 발언, 혐오 등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족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음
- 면접자 다수가 업무상 비하, 혐오, 무시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음.
- 별도의 소속이 없이 혼자서 근무하다 보니 업무상 노출되는 폭언, 폭행, 비하성 발언 등에 대한 보호장치가 전혀 없음.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구강건강이 나빠진 것 같다고 지적한 예도 있었음.

“일을 시작한 시기를 기점으로, 지금 그때보다 더 나빠졌죠. 그 이유가 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 쪽이었는데, 지금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구강건강 상태가 더 나빠졌죠. 쿡,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 쿡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스트레스를 덜 받겠지. 예를 들어 고객하고 손해배상 문제라든지. 우린 그런 게 없어. 우리는 어디 소속된 게 아니잖아. 다 내가 물어야 내야 해. 받는 사람은 비 오는 거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거든. 왜 안 오냐, 이것만 따지지”(김00, 69세, 쿡)

“오토바이 타니까 신경을 항상 써야 해서 피로도 심하고. 차는 많이 밀리지 또 빨리 안 온다고 독촉하지.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예민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죠”(우00, 61세, 쿡)

(3)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도 낮음

- 아프지 않으면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여겨 치과 방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음.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과소평가가 확인됨.

“치과는 어지간하거나, 많이 아프지 않으면 안 가죠. 그냥 피가 나오면 소금으로 헹구고”(천00, 60세, 대리)

“아프지 않고 간 적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조금 아파서”(하00, 53세, 대리)

“예전에 마지막으로 받은 게 한 10년 전쯤? 일반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 받긴 해도 치과는 없어서 안 했죠. 치과는 정말 아플 때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 시간이 더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가기 더 어려워지고. 그냥 아프면 가게 돼요. 아프지 않으면 관심은 줄 알고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아파서 못 견디면 가죠. 어디가 아픈데 그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가는데, 그게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고 그러면 또 핑계일 수 있죠”(김00, 50세, 배달)

“그냥 구강검진만 한 적은 없습니다. 별로 불편한 게 없어서. 아까 사고 때문에 (치아가) 다 가짜 거거든요.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있죠? 아예 신경 쓰기가 싫고. 그냥 그렇게 많이 불편 하진 않아서. 대부분 보철이니까... 내가 구강이 안 좋은 걸 알고는 있는데, 바쁘고, 그렇게 불편 하지도 않고. 전문가들은 이게 쌓이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하겠지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신경 안 쓴 거죠”(길00, 46세, 배달)

“평소에는 치과 건강검진은 안 가죠. 일단, 안 아프니까. 안 아픈 게 제일 크고... 증세가 가볍고, 필요성을 못 느꼈고 그래서 안 간 거고”(현00, 57세, 퀵)

(4)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

- 치과 치료는 아프다는 인식이 강해서 이에 대한 공포감, 무서움 등을 경험하여 치과 재방문 의사가 낮은 예도 있었음.

“구강이 중요한 건 아는데, 가지 않은 이유가 제가 치과 치료를 여러 번 받아봤지만 진짜 아프고 안 아프고 그걸 떠나서, 치과에 앉았을 때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공포감, 맞아요. 뭐 빛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특히 마취할 때도... 제가 별별 마취를 다 해 봤거든요. 맹장도 떼보고. 근데 치과 마취가 제일 아파요. 마취도 안 아파야 하는데, 그냥 뭐 마구 찔러대는데... 이게 감각

이 없는 상태인데도 그렇게 싫더라고. 치과에 거부감과 공포심 때문에 잘 안 가게 되는 게 있죠”
(진00, 62세, 대리)

“스케일링은 꾸준히 안 받았어요. 알고 있는데, 가야 하는데 치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어릴 때도 제 의지로 치과 갔던 기억이 별로 안 나요. 아픈 곳이니까”(김00, 50세, 배달)

“평소에 치과 건강검진은 안가죠. 이유가 일단, 안 아프니까. 안 아픈 게 제일 크고. 무서워요. 무서워서 공포감 때문에”(현00, 57세, 킥)

(5) 잘못된 구강건강 관리 행태

- 일부 대상자는 잘못된 구강건강 지식이나 행태가 확인되었음. 양치를 10~20초에 끝내거나, 보철치료를 한 치아는 구강 관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나서 한 번 하고, 저녁 먹고 한 번 하고. 오래는 안 해. 보통 1분이야. 병원에서 칫솔질 너무 세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바쁘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 10초, 20초 이렇게 하니까. 막 세게,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거죠. 빨리빨리 하고 또 후다닥 나가야 하니까... 자기 전에는 따로 안 하고, 그냥 밥 먹고 10~20초 양치 2번 하고”(선00, 52세, 배달)

“대부분 보철이니까, 그리고 뭐 그렇게 불편한 게 없어서. 내가 구강이 안 좋은 걸 알고는 있는데, 바쁘고,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전문가들은 이게 쌓이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생각하겠지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신경 안 쓴 거죠.”(길00, 46세, 배달)

5) 중재적 조건

- 중재적 조건은 중심 현상의 강도를 완화하거나 변화를 주는 조건을 의미함. 양치 여건 조성, 구강검진 이행을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 구강건강을 포함한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건강행태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됨.

(1) 이동노동자의 양치 여건 조성

○ 지역 내 개방화장실 등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및 정보 공유

- 라이더유니온 등의 노조 활동을 통해 구강검진처럼 쉼터 등에서 진행하는 행사나 관할 구역 내 이용이 가능한 개방화장실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따라서 쉼터나 노동자지원센터에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서 이를 알리고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노조 활동을 하지 않는 이동노동자 대부분은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니, 이를 지역사회 내에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더욱 많은 이동노동자가 양치 시설이 갖춰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가 라이더유니온에 가입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데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 줬고, 구강 검진하는데 희망자들은 와서 받아라, 안내 문자를 받아서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겠다고 해서... 저는 라이더유니온을 통해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았지만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의 모르죠”(정OO, 64세, 배달)

“화장실이나 이런 거 다 열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큰 건물들도 화장실을 개방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가... 알고 있어서. 이게 유니온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혼자 활동하시는 분들은 힘들죠”(김OO, 56세, 배달)

○ 이동노동자 쉼터 내 양치 용품 구비

- 쉼터 내 양치 용품이 갖춰져 있다면 양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양치 용품을 지니고 다니면 분실의 위험이 있으며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진술함. 이동노동자 센터에서 양치 용품을 놓고 다닐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을 마련한다면 이동노동자의 구강건강 관리 이행률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

“양치 용품을 갖고 다닐 데가 없잖아요. 위생도 그렇고, 치약은 이런 센터만 와도 화장실에 있어요. 근데 칫솔은 개인이 가져와야 하니깐 힘들죠... 양치 도구가 상시로 구비가 가능하다면, (양치할 의향이) 5점이죠, 5점. 구비만 되면 바로바로 할 텐데”(현OO, 57세, 쿵)

○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 이동노동자 쉼터와 같은 공간 자체가 많아지면 양치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고정된 근무 장소가 없는 이동노동자가 편하게 양치할 수 있는 공간 중의 하나인 쉼터가 확대되어 이들의 양치 여건이 개선되면 치솔질 실천율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양치) 공간만 있으면 용품을 갖고 오죠…. 이빨 닦을 공간만 있어도 용품을 어떻게든 갖고 오지.”(전OO, 60세, 대리)

“독립된 공간, 또는 양치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설 이런 게 있으면, 장소가 제공되면 양치하죠…. 제가 당구장을 운영할 때는 공중화장실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그런 화장실이 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했었죠”(길OO, 46세, 배달)

○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접근성 향상

- 쉼터를 더 많은 이동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구강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높일 수 있음. 이를 위해서 우선 센터와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에 대한 활발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 또한 일부 쉼터의 경우 외진 곳에 있어서 이동노동자들이 방문하기 어렵다고 하므로 지점의 수를 늘리되 접근이 편한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함. 이를 통해 쉼터 내 양치 시설 및 구강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음.

“쉼터에서 나한테 문자가 와서 검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문자가 와도 안 오기도 하는데, 내가 잇몸이 안 좋으니까, 한번 검사받아보자. 잇몸에 대해서는 내가 신경 많이 쓴다니까. 다른 것도 쉼터에서 와요. 무료 법률 상담하라고 굉장히 많이 와요. 내가 필요하면 예약해서 가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가는데, 이거는 내가 잇몸이 안 좋으니까 바로 예약했죠. 관심이 있으니까. 잇몸이 안 좋으니까”(천OO, 60세, 대리)

“가입된 노조에서 검진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온다고 약속했으니까 와야죠. 참여해달라고 해서, 언제 오라고 약속했으니까 왔죠.”(선OO, 52세, 배달)

(2) 이동노동자의 구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

○ 특고노동자에 대한 건강검진 도입 조기 실현하여 구강검진 활성화

- 최근 정부가 특고노동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음. 이러한 정부 지원이 지속되고, 이동노동자의 건강검진 참여가 확대되면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질병도 초기에 치료하여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직장을 다니면 직장 건강보험 이런 게 있잖아요, 소속이 있으면. 근데 대리는 따로 그런 직장 건강보험이 없어요”(최00, 68세, 대리)

“구강검진이 이 일 이전에는 있었죠.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건강검진 하면 검진센터에 치과가 있으면 하는데, 요즘 검진센터에 치과 없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거 없으면 안 하고... 일반 직장인들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에 비해서 안 좋아지는 거는 당연하고”(김00, 50세, 배달)

“직장인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서 가야 하고 그런 게 있는데”(우00, 61세, 쿵)

○ 구강검진 및 치과 진료에 대한 상병수당 지급

- 이동노동자들은 근무 시간에 따라 소득이 정해지는 구조라서 근무 중 구강검진이나 치료받으면 근무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포기해야 하기에 경제 활동 외의 시간을 무의미하거나, 손해를 보는 거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특성은 적극적인 구강검진을 어렵게 하고, 치과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악화시킴. 따라서 이동노동자의 구강검진 및 치과의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구강검진 및 치과 진료에 대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시간을 다른 데다 쓰면 그만큼 돈을 못 버는 거니까. 시간이 돈이라는 생각을 원래 많이 했죠. 직장인은 강제로 갔다 와야 해요. 1년에 한 번인가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이거를 직장인들 권리라고 해놓은 건데. 근데 나는 따로 시간을 내서 가야 하나만”(길00, 46세, 배달)

(3) 구강을 포함한 건강관심도 높여 건강행태 형성

- 구강과 전신 건강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 건강행태 향상
 - 칫솔질을 아주 짧게 끝내거나, 보철치료를 하면 구강 관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도 있었음. 따라서 잘못된 구강건강 인식 및 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구강보건 교육이 시행되어야 함. 또한 구강과 전신 건강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구강과 전신 건강 모두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시행하여 건강행태를 형성할 수 있는 구강 관리 프로그램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밥 먹고 한 번 하고, 저녁 먹고 한 번 하고. 오래는 안 해. 보통 1분이야. 병원에서 칫솔질 너무 세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막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한 10초, 20초 이렇게 하니까. 막 세게,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거죠. 빨리빨리 하고 또 후다닥 나가야 하니까. 자기 전에는 따로 안 하고, 그냥 밥 먹고 10~20초 양치 2번 하고”(선00, 52세, 배달)

“대부분 보철이니까, 뭐 그렇게 불편한 게 없어서. 내가 구강이 안 좋은 걸 알고는 있는데, 바쁘고,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전문가들은 이게 쌓이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생각하겠지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신경 안 쓴 거죠.”(길00, 46세, 배달)

6) 작용, 상호작용 전략

- 이미 밝혀진 중심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대상자들의 전략적, 의도적 반응, 일상적 행위. 특정 사회현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행위 역시 대응 방식에 해당함. 이동노동자 쉼터에 양치 여건이 조성되거나 쉼터에서 정기적인 구강검진, 구강건강 관련 상담 및 관료 교육 같은 것이 이루어지면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1) 이동노동자 쉼터에 양치 여건 조성 시 이용할 의향 있음

- 이동노동자들은 쉼터에 양치할 공간이나 도구가 갖춰지면 양치할 의향이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하였으나, 일부 이동노동자의 경우 이동노동자 센터의 접근

성 문제 등으로 양치 여건이 조성되더라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따라서 쉼터뿐 아니라 개방화장실 등 다양한 대안적 장소에도 양치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휴센터나 이런 게 많아져서 행동반경에 쉼터가 많아지고, 양치할 공간이 형성되면 할 의사가 3점. 안 한다, 보다는 많죠. 지금보다는 할 것 같아요. 고정된 장소 말고도 양치 도구가 상시로 구비가 가능하다면, 5점이죠. 5점. 구비만 되면 바로바로 할 텐데. 근데 우리는 구비할 수가 없어서. 들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직장인은 한군데잖아요. 사무실에 놓으면 되는데. 그분들은 (그런 장소가) 항상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연OO, 57세, 컵)

“만약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다면, 예를 들어 휴게소나 센터 등 들릴 수 있는 곳이 생기면... 쉼터가 외지라 잘 안 오게 되는 장소예요. 배달 라이더들은 거의 없잖아요. 여기가 외지인 장소라 저희도 여기 이용을 잘 안 해요. 거의 시내 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고. 여기가 준비된다고 해도 이용을 잘 하지 않을 거 같아요. 1점에서 5점이라 한다면 1점이에요. 여기(쉼터) 진짜 이용을 안 해요. 만약에 시설이 안 되어 있어도 양치를 꼭 한다고 하면, 굳이 여기로 안 오고 다른 데서 하죠. 화장실 같은 곳에서. 필요하다면”(김OO, 50세, 배달)

(2) 이동노동자 쉼터를 통한 정기적인 구강검진 지원 원함

- 이동노동자들은 이번 실태조사와 같은 구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었음. 교육도 좋지만, 연령대가 높다 보니 교육보다 실제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진을 선호하였음. 그리고 하게 된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지속되는 전문적인 검진과 관리를 원하고 있었음.

“교육 아니면 검진, 이것 중에 저는 검진이예요. 검진이 우선 와닿는 부분이고. 저는 이빨이 절실했기 때문에 꼭 가서 한번 가봐야겠다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정OO, 64세, 배달)

“주기적인 검진하고 구강용품, 뭐 그런 걸 줬으면 좋겠지. 교육이나 이런 거는 우리 나이가 되면 실천을 안 해서. 교육을 받을 만큼 잔소리 많이 들은 거니까”(김OO, 69세, 컵)

“지금처럼 구강검진을 해 주는 거는 좋은데. 체계를 갖춰주는 게 좋아. 지속해서.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진짜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그 체계를 갖춰서 해 주면 좋겠는데 대중 와서 조사한다고 그러면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아. 내가 잇몸이 아프면 소독약을 발라주고, 스케일링해서 치석 제거해 주고 그러는 게 나한테 좋아지는 건데. 조사하고 적고 이런 거 말고”(천OO, 60세, 대리)

(3) 이동노동자 심터를 통한 구강건강 관련 상담 원함

- 또한 가능하다면 구강건강 관련 상담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음. 이동노동자의 칫솔질 실천을 향상과 미충족 치과의료율 감소를 위한 작용, 상호작용 전략으로 이동노동자 센터를 활용한 구강건강 관련 상담을 제시함.

“증상이 생기면 고민하지 말고 빨리 치과 가라. 이런 걸 방치하면 더 문제가 된다, 뭐 이런 거.”
(김OO, 50세, 배달)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한다, 조언 같은 게 듣고 싶은 거죠. 케어해 줄 수 있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입 안만 보고 끝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사님은 여기가 썩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치료해야 한다 (좀 더 자세하게). 아니면 교육도 좋죠. 치료 잘 받을 수 있는 병원. 그런 것 알려줘도 감사하고요. 나는 어디가 좋은지 몰라요. 어디 치과로 가면 좋은지. 그런 정보가 있으면 좋겠어요”(이OO, 61세, 퀵)

(4) 이동노동자 심터를 통한 구강건강 관리 교육 원함

- 일대일 교육도 좋지만 전반적인 구강건강 관리 상식 등을 문자나 SNS 등을 통해 홍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는 구강건강 실태조사에서 나눠준 양치나 구강건강 관리용품 등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더 잘 쓸 수 있겠다고 응답하였음.

“만약 예산이 되거나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대리기사들... 저는 교육적인 게 중요하다고 봐요. 사은품도 중요한데 정보도 중요해. 그러니까 듣고 싶은 사람은 올 수밖에 없거든요” (하OO, 53세, 대리)

“제가 볼 때 여기서 구강 상담을 할 게 아니라, 대리도 옮겨 다니잖아요. 핸드폰 문자라든지, SNS나 카톡이나, 거기에 이빨 닦는 요령이라든지, 그런 정보 있잖아요. 이빨을 닦아라 그런 거를 재난 문자 오는 것처럼 하루에 2~3번이라도 설문했던 사람한테 문자나 SNS로, 이빨 닦으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관리하십시오, 이런 거를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SNS나 카톡 이런 걸로 기사들한테. 귀찮지만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닦으세요, 그런 거를 지속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하OO, 53세, 대리)

“치아를 관리하는 방법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치실을 사람들이 쓰긴 쓰는데. 내 주위에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안 쓰는 걸로 보는데. 치아 주기적인 관리 방법 같은 걸 자세하게 알려주고 치아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 빨리 가서 치료해라, 그런 교육? 저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그걸 잘 몰라요. 주위에 보면 아프면 가지 그러는데...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은 받은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치아 관리하라고 치실도 주고 하는데,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요”(김OO, 50세, 배달)

“용품들 가지고 교육하는 거 그런 게 좋겠네요. 지금 치간칫솔도 그렇고 우리가 모르고 그런 거, 예를 들어 용품들 있잖아요. 하다못해 뭐 가글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효과 같은 걸 알려주면 도움이 되겠죠. 왜 하면 좋은지 그런 거. 그런 걸 아예 몰라요”(길OO, 46세, 배달)

7) 결과: 칫솔질 실천율 향상, 미충족 치과의료 이용률 감소

- 종합적으로 낮은 칫솔질 실천율과 높은 미충족 치과의료 이용률이라는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을 확인하고, 대상자들의 ‘작용·상호작용’을 강화하기 위한 ‘중재적 조건’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결론’인 양치 이행률 향상과 미충족 치과의료 이용률 감소를 이루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제6장

결론

01 요약

02 제언

1. 요약

1)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 국건영 성인 및 관련 직업군 남성의 구강건강 상태 및 행태 비교 분석 결과

- 이번 연구는 서울시 이동노동자의 구강건강 실태 및 건강증진 방안 마련을 위해 우선 서울시 이동노동자의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시행하였고, 우리나라 성인 및 관련 직종 남성과 비교하기 위해 국건영 자료 분석을 시행하였음. 해당 자료들을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결과에서 일반적인 특성으로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남성이었음(87.5%).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는 국건영 성인 및 관련 직종 남성과 서울시 이동노동자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음. 연령별로는 대리와 택배(퀵)의 경우 50대 이상이 각각 90.5%와 76.6%로 고연령자가 많았고, 배달의 경우 40대 이하가 75.5%로 다수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저연령자가 많았음. 교육 수준의 경우 국건영 성인 남성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음(대졸 이상 국건영 41.2%, 서울시 이동노동자 44.6%). 서울시 이동노동자 중에서 대리(66.7%)와 배달(50.0%)의 경우 전체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였음.
- 서울시 이동노동자의 경우 취업 형태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국건영의 2.4배 정도로 높았는데(국건영 22.4%, 서울시 이동노동자 54.1%), 택배의 경우 가장 높아서 67.5%로 나타났음. 근로 시간의 경우 주간, 저녁, 밤 근무 비율이 직종별로 달랐는데, 택배의 경우 주간 근무 비율(86.7%)이 높았고, 대리의 경우 밤 근무 비율(52.2%)이 높았음. 근무경력에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 수준이 고졸 이하에서 더욱 긴 것으로 나타났음(전체와 택배 직종에서 특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시 이동노동자의 구강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국건영보다 열악하게 나타났음. 영구치우식유병률의 경우 국건영 평균에 비해 1.4배 정도 높았음(국건영 31.7%, 서울시 이동노동자 43.6%). 자연치아 수는 국건영 평균보다 약간 적었으

며(30대 이하에서 국건영 28.6개, 서울시 이동노동자는 28.2개), 나이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특히 배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음(30대 이하 29.1개, 60대 이상 22.4개). 저작불편 호소율도 국건영보다 높게 나타났으며(국건영 23.1%, 서울시 이동노동자 33.3%), 나이와 교육 수준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특히 택배의 경우 고졸 이하에서 대졸 이상보다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고졸 이하 46.8%, 대졸 이상 10.5%).

- 서울시 이동노동자의 구강건강 행태에서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의 경우 전체적으로 국건영보다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매우 낮았음(국건영 41.8%, 서울시 이동노동자 24.0%).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율의 경우 국건영보다 낮았으며(국건영 42.3%, 서울시 이동노동자 31.4%), 교육 수준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특히 대리에서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났음(고졸 이하 19.0%, 대졸 이상 47.6%). 미충족 치과의료율의 경우 국건영에 비해서 1.4배 높게 나타났음(국건영 28.8%, 서울시 이동노동자 40.4%).
- 서울시 이동노동자의 건강행태에서 월간음주율의 경우 국건영 평균과 유사하였음(국건영 69.9%, 서울시 이동노동자 67.6%). 직종별로는 대리(55.6%)는 상대적으로 낮고, 배달(79.3%)이 약간 높았음. 대리의 직업적 특성상 음주율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배달의 경우 젊은 연령층이 많은 것이 이유일 것으로 여겨짐. 평생흡연율의 경우 국건영과 비슷하였음(국건영 72.2%, 서울시 이동노동자 73.0%). 신체활동 실천안함의 경우 국건영보다 높았으며(국건영 52.6%, 서울시 이동노동자 76.5%), 배달에서 약간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음(83.3%). 최근 1년간 구강검진 안 함의 경우에는 국건영보다 낮았으며(국건영 65.2%, 서울시 이동노동자 50.5%), 직종별로는 배달의 경우 매우 낮고(45.5%), 대리(50.8%), 택배(54.3%) 순으로 낮게 나타났음.

2)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 심층 면접 질적 분석 결과

- 직종별로 시행한 질적 면접에서는 대상자의 근무 경험, 건강 상태, 구강건강 행태, 바람직한 구강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 방향에 대한 인터뷰가 진행되었음. 인터뷰 결과를 근거이론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인과적 조건으로 양치할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과 치과에 방문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을 원인으로 제시하였음. 첫 번째 양치할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는 양치할 장소가 없거나, 양치 도구를 보관할 장소나 지니고 다니기 어렵다는 점을 뽑았음. 또한 시간적으로도 바쁜 업무로 양치할 시간이 없고, 이동노동자의 특성상 외부의 양치 시설(예, 세면대)을 이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선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두 번째로 치과를 방문할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는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불확실하여 치과 약속을 지키기 어렵고, 이동 업무 중간에 치과에 가기 어려우며, 치과 방문 시 작업복을 입고 가는 것이 부끄럽다고 응답하였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과 방문이 두렵다고 하였음.
 - 맥락적 조건으로 이동노동자라는 특성, 높은 업무 강도로 피로도가 높고 심리적 스트레스도 높다는 점, 구강건강에 대한 낮은 중요도 부여를 제시하였음. 첫 번째 이동노동자라는 특성은 소속이 없어 고정된 사무실이 없고, 휴게 공간이 따로 없이 밖에서만 생활하거나, 이동노동자 센터 등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예측 불가능한 업무 일정으로 장소 예측이 어렵고, 개별적으로 근무하는 환경이라서 사회적 교류가 없으며, 직장 구강검진이 적용되지 않아 치과 방문이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음. 두 번째로 높은 업무 강도로 피로도가 높고 심리적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는 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무엇보다도 생계가 우선하며, 소득이 불확실하며 시간당 소득을 버는 구조라서 여가를 내기 어렵다는 점, 이에 따라 근무 시간이 길어지고 정신·체력적으로 근무 강도가 높아지는 점, 업무의 특성상 시간에 쫓기며 일하게 되어 심리적 압박감이 크고, 업무 과정에 폭언, 비하성 발언 등으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커지는 상황 등이 문제라고 응답하였음. 세 번째로 구강건강에 대한 낮은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밖에서 양치하는 게 부끄럽다고 여기거나, 치과를 아프지 않으면 갈 필요성이 적다고 인식하거나, 치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였음.

- 이로 인한 중심 현상은 양치 이행률이 낮고, 미충족 치과의료 이용률이 높았음.
 - 중재적 조건으로는 이동노동자의 양치 여건 조성, 이동노동자의 구강검진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 마련, 구강건강을 포함한 건강에 관한 관심도 고취, 건강행태 형성 등이 제시되었음. 첫 번째 이동노동자의 양치 여건 조성은 이동노동자 쉼터에 양치를 권장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시설에 대한 홍보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양치 시설 내에 관련 용품(예, 치약, 칫솔, 칫솔 거치대 또는 보관대)을 갖추도록 하고, 이러한 시설을 이동노동자 쉼터뿐 아니라 지역 내 공중화장실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음. 두 번째로 이동노동자의 구강검진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으로 직장 건강검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구강검진을 의무화하고, 구강검진 및 치과 진료에 대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대책이 제시되었음. 세 번째로는 구강건강을 포함한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고취하고 건강행태를 형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음.
 -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제시된 내용은 응답자 중 다수가 첫 번째 이동노동자 센터에서 여건이 조성되며 이용할 의사가 있으며, 두 번째 해당 센터에서 정기적 구강검진이나 구강건강 관련 상담, 구강건강 관리 교육을 원한다고 응답하였음.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로 양치 이행률을 향상하고 미충족 치과료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였음.
- 위와 같은 서울시 이동노동자의 구강건강 실태조사 및 국건영 자료와의 비교 분석, 이동노동자 직업군별 질적 면접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통해 아래와 같은 제도 및 사업적 대안 마련이 제시되었음.

2. 제언

1) 이동노동자 구강검진 활성화 방안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검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표 6-1)는 기존의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중에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동항 제1호),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항 제2호)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정의하고 있었음.

표 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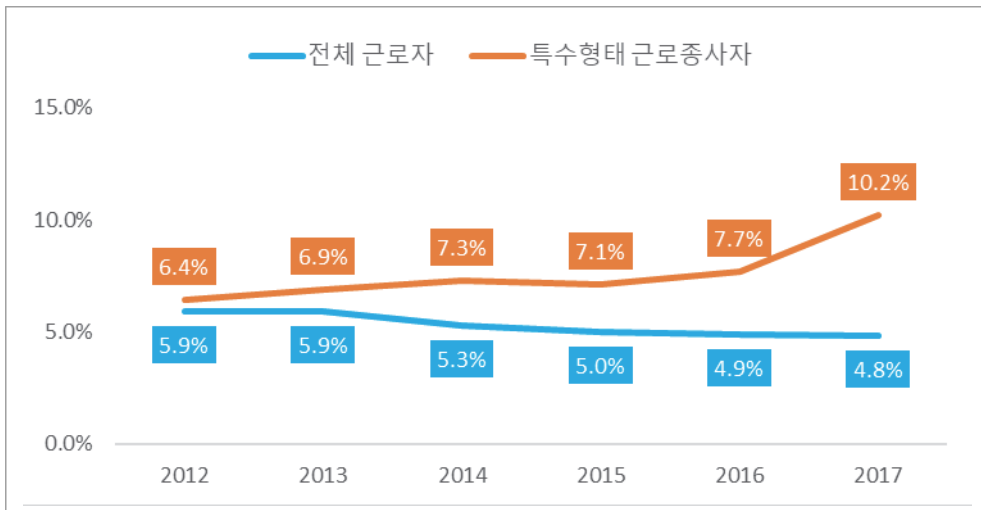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나. 삭제
 - 다. 삭제
 - 라.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5의2. 택배사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이하 이 조에서 “화물차주”라 한다)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15. 화물차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운수사업자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건강진단을 포함한 업무상 재해예방의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함.
 -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할 때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재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음.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된 사업장 외의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음.
-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 발생률이 전체 근로자는 감소하는 가운데, 점점 증가하고 있어 2017년 기준으로 2.1배에 달하였음(그림 6-1).

그림 6-1 산업재해 천인율(1,000명당 발생률) 추이



*출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 방안 연구(2018),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이에 국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였음(2022년 6월 10일 개정, 2023

년 7월 1일 시행).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새롭게 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노무 제공 특성에 맞는 보험 적용·징수 체계와 급여·보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보호 범위를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표 6-2).

표 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29호) 개정 주요 내용

-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고 관련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제91조의15제1호 신설 및 제125조 삭제).
- 나.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를 노무제공자가 재해 발생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재해 발생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제91조의15제5호 및 제6호 신설).
- 다.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제91조의18 신설).
- 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보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보험료에 대한 정정신고를 거쳐 보험급여에 대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91조의20제2항 신설).
- 마.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91조의21 신설).
- 사. 개정법률의 공포 이후 시행 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둠(부칙 제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재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시행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전액 비용 보전이 가능하나,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의 경우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음. 또한 특고노동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 계획(2021~25)년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되어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근로 여건에 맞는 검진 항목으로 직종별 건강진단이 시행될 수 있음.
- 이런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노동자의 건강보험

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되지 않는 적용 대상과 실시 주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앞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받게 되면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도 일반건강검진과 같은 형태로 실시될 수 있음(표 6-3).

-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보호 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면서 보험설계사, 택배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건설기계 운전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에 포함되었음.

표 6-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검진 확대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제18426호, 시행 2022.8.18.)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63호, 시행 2023.1.1.)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6. 그 밖에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 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② 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98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 ①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촬영
 5. AST(SGOT) 및 ALT(SGPT), γ -GTP 및 총콜레스테롤
-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 중 혈당· γ -GTP 및 총콜레스테롤 검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 방법 및 시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제196조 각 호 및 제200조 각 호에 따른 법령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검사항목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일반건강진단의 검사방법,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에도 취약계층별 근로복지 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 건강보호에 직종별 특성에 맞는 건강진단 지원이 포함되었음.

그림 6-2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모식도와 안내자료

목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아우르는] 근로복지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근로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근로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 ②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복지 격차가 시장 내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방법을 효율화 ③ 취약계층별·근로주기별 맞춤형 지원, 인프라 구축 등 공공 근로복지서비스는 필요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 													
추진과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ext-align: center;">1. 새로운 수요에 맞춘 출중한 근로복지 지원</td> <td style="background-color: #fff2cc; text-align: center;">2. 대·중소 상생을 통한 기업복지 격차 완화</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강화 ② 원활한 산업 및 노동 전환 지원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중소기업 간 복지공유 활성화 ② 근로복지기금제도 활용도 제고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ad3; text-align: center;">3. 취약계층별 근로복지 안전망 강화</td> <td style="background-color: #d9ead3; text-align: center;">4. 근로주기별 맞춤형 지원</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저소득층 소득 및 생계유지 지원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 건강 보호 ③ 일하는 장애인 맞춤형 지원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초년생 노동시장 정착 지원 ② 주거복지 지원 ③ 일가정 양립 지원 ④ 중장년 경력 및 고령자 제도적 지원 </td> </tr> <tr> <td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d9ead3; text-align: center;">5. 근로복지 인프라 강화</td> </tr> <tr> <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근로복지진흥기금 재원 확충 ② 우리사주 효율화를 통한 자산형성 기회 강화 ③ 획리연급 활성화를 통한 노후대비 인프라 강화 ④ 근로복지 정보망 개편 </td> </tr> </table>	1. 새로운 수요에 맞춘 출중한 근로복지 지원	2. 대·중소 상생을 통한 기업복지 격차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강화 ② 원활한 산업 및 노동 전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중소기업 간 복지공유 활성화 ② 근로복지기금제도 활용도 제고 	3. 취약계층별 근로복지 안전망 강화	4. 근로주기별 맞춤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저소득층 소득 및 생계유지 지원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 건강 보호 ③ 일하는 장애인 맞춤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초년생 노동시장 정착 지원 ② 주거복지 지원 ③ 일가정 양립 지원 ④ 중장년 경력 및 고령자 제도적 지원 	5. 근로복지 인프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근로복지진흥기금 재원 확충 ② 우리사주 효율화를 통한 자산형성 기회 강화 ③ 획리연급 활성화를 통한 노후대비 인프라 강화 ④ 근로복지 정보망 개편 		
1. 새로운 수요에 맞춘 출중한 근로복지 지원	2. 대·중소 상생을 통한 기업복지 격차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강화 ② 원활한 산업 및 노동 전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중소기업 간 복지공유 활성화 ② 근로복지기금제도 활용도 제고 													
3. 취약계층별 근로복지 안전망 강화	4. 근로주기별 맞춤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저소득층 소득 및 생계유지 지원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 건강 보호 ③ 일하는 장애인 맞춤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초년생 노동시장 정착 지원 ② 주거복지 지원 ③ 일가정 양립 지원 ④ 중장년 경력 및 고령자 제도적 지원 													
5. 근로복지 인프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근로복지진흥기금 재원 확충 ② 우리사주 효율화를 통한 자산형성 기회 강화 ③ 획리연급 활성화를 통한 노후대비 인프라 강화 ④ 근로복지 정보망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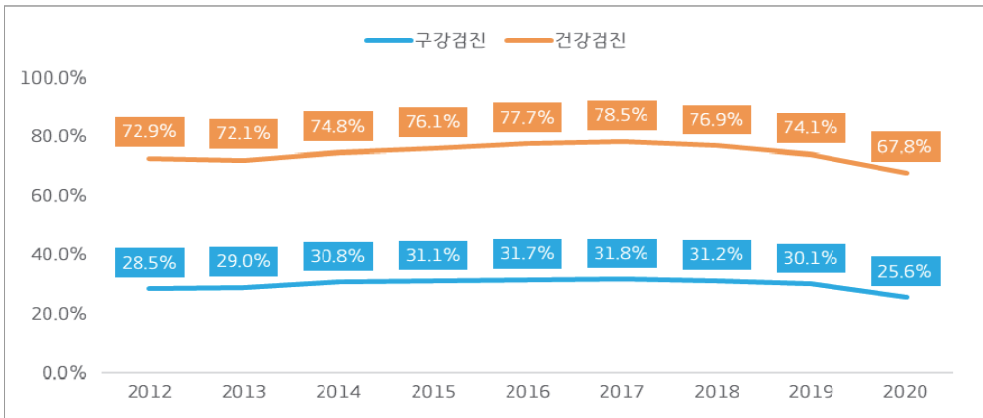
*출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근로복지 체계 구축',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10.27.)

(2) 우리나라 노동자의 구강검진

- 우리나라 노동자의 구강검진은 크게 일반검진과 특수검진으로 나눌 수 있음.
 - 1992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동자 채용 시 건강검진에 구강검진이 포함되면서 시작되었음.
 - 1994년에는 노동부에서 산 취업노동자에서 나타나는 직업성 치아부식증을 법정 직업병으로 지정하면서 특수검진이 시행될 수 있었음.
 - 1995년에는 노동자 일반 상병 검진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포함되어 실시되게 되면서 구강검진도 같은 형태로 제공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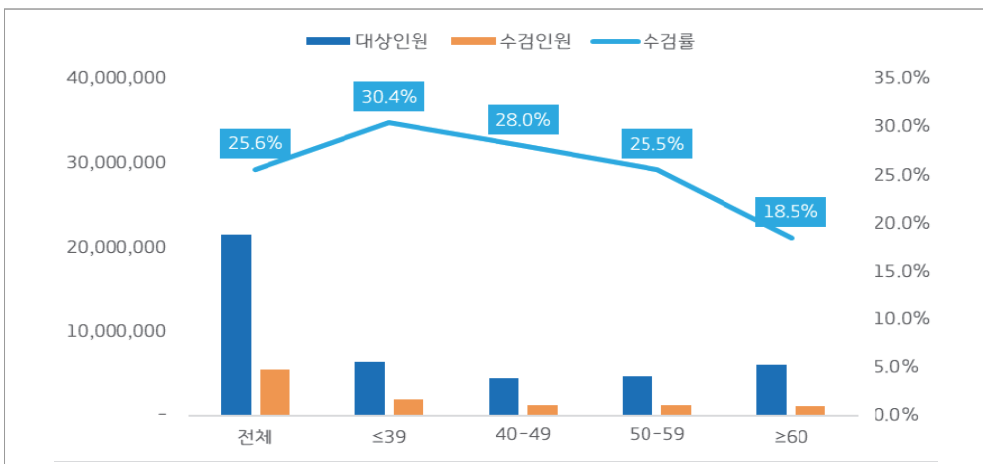
- 하지만 우리나라 성인의 구강검진율은 2020년 기준 건강검진율 67.8%의 절반도 되지 않는 25.6%에 불과함(그림 6-3).
- 이조차도 연령별로 격차를 보여 30대 이하에서는 30.4%로 나타났지만 40대 28.0%, 50대 25.5%, 60대 이상 18.5%로 나타나고 있음(그림 6-4).
- 이러한 격차가 시도별로도 나타나 울산의 경우 전체 평균의 1.7배인 44.0%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의 경우에는 19.1%로 평균의 3/4 정도에 불과하였음(그림 6-5).

그림 6-3 우리나라 성인의 건강검진과 구강검진 수검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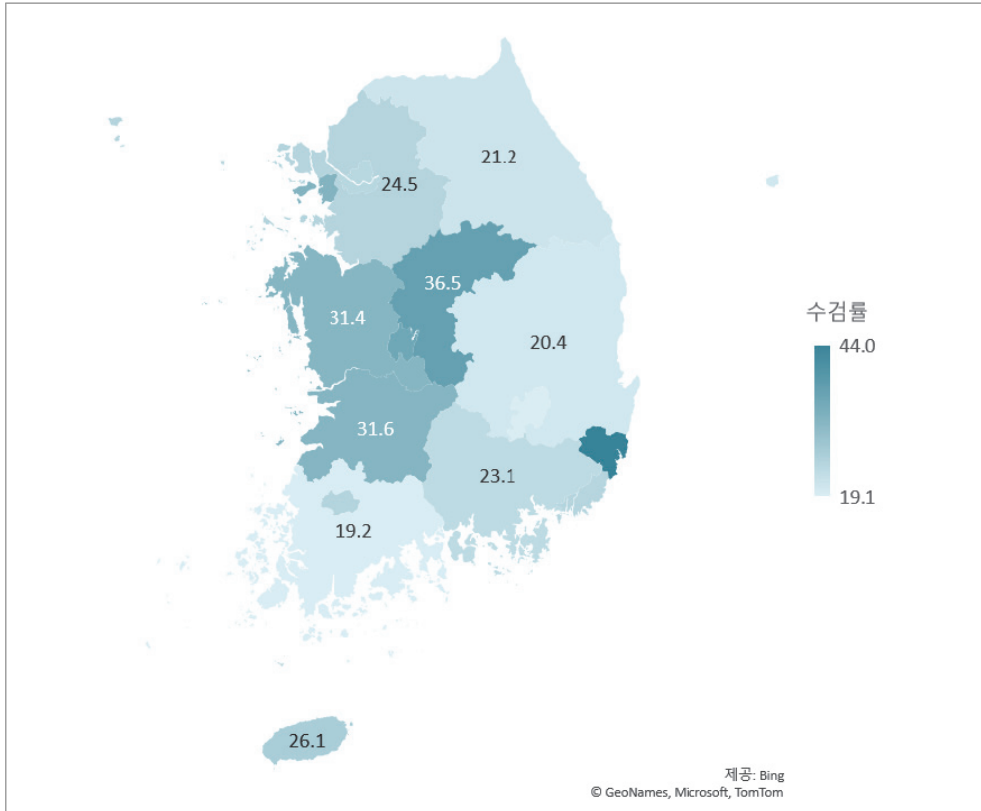
*출처: 건강검진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

그림 6-4 우리나라 성인의 연령별 구강검진 수검율(2020)



*출처: 건강검진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

그림 6-5 우리나라 성인의 지역별 구강검진 수검률(2020)



*출처: 건강검진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

(3) 우리나라 노동자의 구강검진 활성화 방안

○ 건강검진을 포함한 상병수당 제도 시행

-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이 명시되어 있음(표 6-4).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하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였음.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6)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0.

공단에서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이며, 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 총괄,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 지자체의 협조 아래 시행되고 있음(그림 6-6).

- 하지만 상병수당의 질병·부상 요건이 질병 유형에는 제한이 없지만, 질병·부상으로 연속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이 8~15일 이상 되거나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의 시범사업 체계로는 건강검진을 위한 진료 수검 행위는 상병수당 제도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건강검진을 지원 상병에 포함해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이 있는 경우에 초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적 차원의 건강증진행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상병수당의 경우 지원 제외자가 공무원 및 교직원(법적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질병 목적 외 휴직자(육아휴직 등),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나 주민등록 말소자 등,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는 지원이 제외되므로 실제로 상병수당 적용 범위를 넓혀도 국민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급여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표 6-4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림 6-6 상병수당 시범사업 안내

아픈 근로자도 소득 걱정 없이 쉬세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함께합니다

시범사업 기간 2022년 7월 4일 ~ 2023년 6월 30일 | 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청남도 천안시

상병수당이란? ▶▶▶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지자체 지정 협력사업장의 근로자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고용보험가입자)* 가입기간 1개월 이상
 -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등 포함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내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 (자영업자)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 월 매출 191만원 이상
-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 공무원·교직원 제외, 고용, 산재·자동차 보험 수급자 등 제외

지원내용

-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일 43,960원 지급 * 대기기간 14일 제외
-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 01 ▶ 사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목록 확인
- 02 ▶ 근로중단계획서* 등 신청 서류 준비 * 근로자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 03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또는 공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지원요건

- ▶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2주가 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의사 진단서 필요)
- * 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하며, 미용 목적 성형 등 제외
- ▶ 사업주, 소득지급처 등에서 신청인이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함

*출처: '직장인, 자영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작',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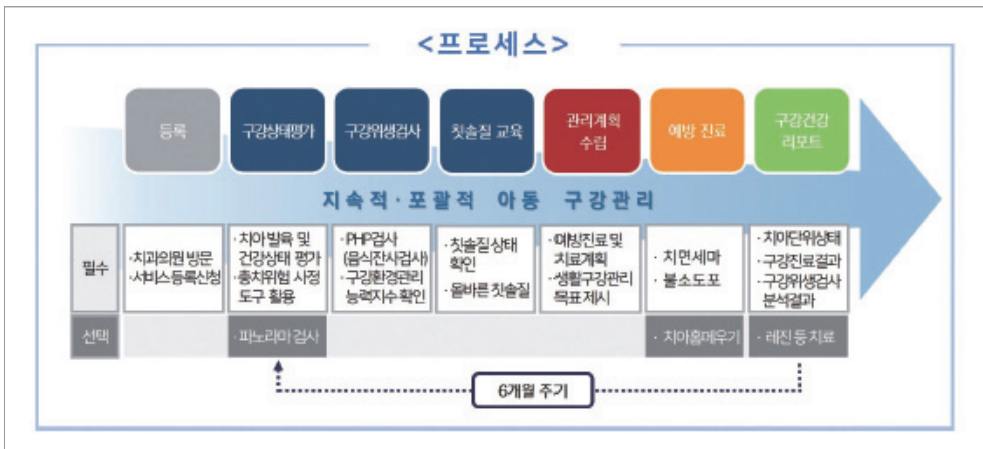
○ 전국민 치과주치의 제도 시행

- 치과주치의는 문진, 구강 검사 등 포괄적인 구강건강 평가를 통해 개인의 구강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구강건강 상태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항목과 방문주기 등의 구강건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예방 서비스, 구강보건 교육, 상담 및 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며, 이후 구강건강을 위한 정기 관리를 제공한 후 효과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⁷⁾.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1

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년간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초등학교 4학년(2021년 기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음(그림 6-7). 또한 지난 대선에서 전국민 치과주치의 제도가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2022년 6월 구강보건법이 개정되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2023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따라서 이러한 치과주치의 제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여 성인에게도 시행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성인의 66%가 치석이 형성되어 있으며, 1/3이 치주질환이 있으며, 40대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여 60세 이상에서는 절반 가까이 이환되어 있음. 따라서 구강건강평가, 만성질환자 구강관리법 교육 및 정보제공, 치석제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치주(잇몸)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성인 치과주치의 서비스를 시행할 것을 제안함.

그림 6-7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절차



*출처: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

7) 모두를 위한 치과주치의 제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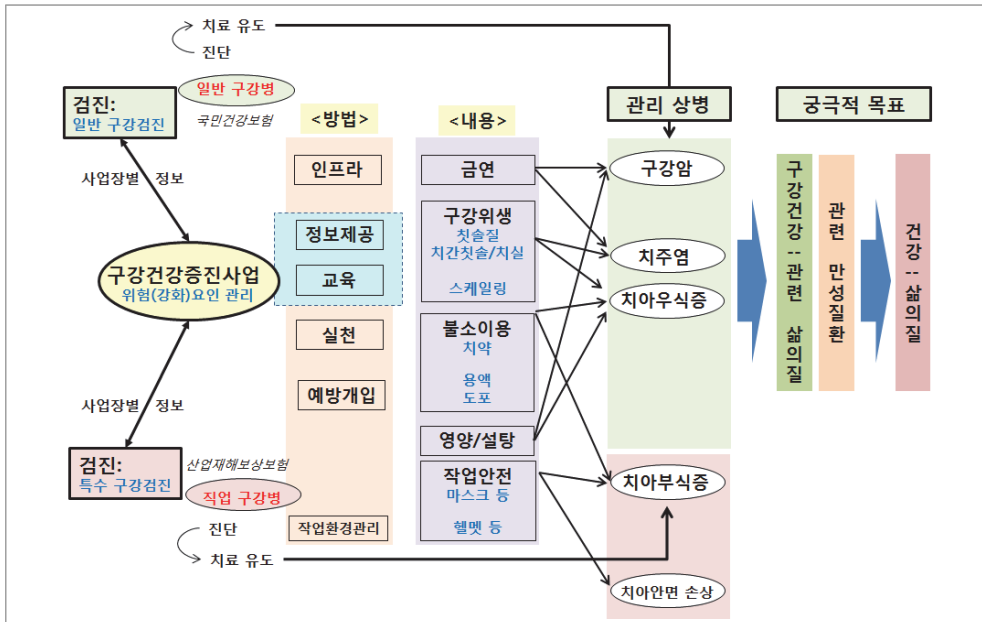
2)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증진 방안

(1) 한국산업구강보건원과 연계하여 사업장 구강건강 증진 사업 시행

○ 사업장 구강건강 증진 활동 모형

- 한국산업구강보건원에서 2018년 발표한 노동자 구강건강 증진 매뉴얼에 따르면 사업장 구강건강 증진 활동은 구강건강 위험(강화)요인 관리를 직접적인 목표로 삼는 구강건강 증진 사업과 일반 또는 특수 구강검진 활성화를 토대로 구강 상병을 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음. 따라서 사업장 구강건강 증진 활동의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이 구강 관리에 특화된 부문과 타 건강증진 영역과 연계된 부문으로 구분되고 구강검진이 포함되는 형태를 제시하였음(그림 6-8).

그림 6-8 사업장 구강건강 증진 활동 모형 개념도



*출처: 노동자 구강건강 증진 매뉴얼 개발, 정세환 등,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8.

- 해당 모형에서 제시된 구강건강 증진 활동의 방법으로는 정보제공과 교육을 포함하는 필수부문과 실천과 인프라 등을 포함하는 선택 부문으로 구분하였음(표 6-5). 따라서 제시되고 있는 금연, 구강위생, 불소 이용, 영양/설탕, 작업 안전 등을 내용으로 개별과 집단, 캠페인과 자료제공 등을 고려하여 구강보건 교육을 시행하고, 이후에 협조도에 따라 선택적인 방법으로 실천, 예방개입, 인프라 구축, 작업환경관리 등의 시행을 특성에 맞게 고려해볼 수 있음.

표 6-5 사업장 구강건강 증진 활동 방법

구분	방법	세부 내용
필수	정보제공	캠페인, 자료제공 등
	교육	개별, 집단 등
선택	실천	구강위생과 불소 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기(4~6회차) 프로그램 운영과 추후 관리로 구성
	예방개입	치과의료 인력에 의해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지속적인 예방서비스 제공 형태
	인프라	양치실 개선 등
	작업환경관리	산취급 관련 작업환경관리, 치아안면 손상관련 작업환경관리 등

(2) 이동노동자 특성에 맞는 구강건강 증진 사업 개발

○ 구강건강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양치 여건 조성

-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심 식사 후 또는 잠자기 전 칫솔질 실천율이 국건영 성인이나 관련 직업군 남성과 비교하면 2/3에서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음. 이러한 열악한 구강건강 관리 행태는 장기적으로 구강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빠른 시기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질적 면접 결과에서 제시되었듯이 양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우선 양치 시설 확보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동노동자 쉼터와 개방화장실 등이 가능함. 이동노동자 쉼터의 경우 이용자 파악이 가능하고, 양치 교육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장기화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쉼터 홍보 및 활성화를 같이

진행할 수 있음. 또한 양치 등의 구강건강 행태 교육 후 양치 용품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나 장치 등을 마련하여 제시하여 양치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개방화장실의 경우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등을 통해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표 6-6). 따라서 해당 화장실이 양치하기에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있음. 또한 해당 화장실에 양치를 위한 홍보물 등을 부착하여 서울시민이 개방화장실에서의 양치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이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함.

표 6-6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356호) 중 일부

제4조(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관리운영비 및 시설의 개·보수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운영비의 교부기준에 대해서는 별표1에 따른다.
- ③ 제1항의 관리운영비 산정에 있어서 개방화장실 이용자의 평가 및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안내표지판에 관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 ⑤ 관리운영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관리자로 한다.
- ⑥ 시장은 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의 위생 및 시민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
 2. 화장실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3. 남녀 화장실 구분 및 시설의 개·보수 사업
 4. 건축허가 시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를 위한 자치구 및 관계기관 협력사업
 5. 그 밖에 화장실 위생수준 및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⑦ 시장은 제6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구강건강을 포함한 건강에 대한 관심도 고취를 위한 쉼터 중심의 건강교육 사업 운영

- 구강건강은 전신 건강 등 건강행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앞서 소개되었던 한국산업구강보건원을 비롯한 여타의 지역 및 보건 관련 단체 등과 연계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행태 조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시행함. 이를 위해 관련 건

강 및 구강건강 전문가와 전문가단체, 노동·시민사회 단체 등과 연계하여 이동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당 협의체를 통해 장기적으로 이동노동자의 건강 향상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함. 이를 통해 이번 연구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울시 및 노동자 지원센터가 되도록 하고, 이러한 노동자의 건강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다른 지자체 및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의 모범적인 활동 사례가 될 수 있음.

참고문헌

- 백희정, 전용일. 택배기사의 업무활동시간과 건강장해. 산업보건, 2021, 394: 30-35.
- 택배근로자 산재 현황(2016~202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국민의힘) 의원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8200000003>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코로나19 사회의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2020.10), 관계부처 합동.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20.12), 관계부처 합동.
- 제3차(‘21 ~ 25’)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6), 관계부처 합동.
- 백희정, 전용일. 택배기사의 건강문제. 산업보건, 2021, 395: 22-25.
- 백희정, 전용일, 조흥학, 최용희.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과로사 예방 방안,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0
- 백희정, 조흥학. 택배기사의 건강장해 예방대책. 산업보건, 2021, 396: 16-21.
- Global oral health status report, towards universal health coverage for oral health by 2030, Executive summary,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2).
- 아동 구강건강실태조사, 질병관리청.
- WHO Oral Health Country/Area Profile Project. <https://capp.mau.se/dental-caries/>
- 청소년건강행태조사통계, 질병관리청.
- 국민건강통계, 질병관리청.
- 구강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구강보건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증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은숙, 주영수, 조선주, 이승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 방안 연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검진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0.

‘직장인, 자영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작’,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7.4.)

모두를 위한 치과주치의 제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
강보건정책연구회, 2021.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2021.

노동자 구강건강 증진 매뉴얼 개발, 정세환 등,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8.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록

- 01 2022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구강검사 기록지

- 02 연구대상자 설명서, 참여동의서, 설문지

- 03 202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구강검사 지침서

- 04 서울시 이동노동자 심층면접 조사지

- 05 서울시 이동노동자 사례비 지급 서류



<p>보철물 상태 / 임플란트경험</p> <p>보철물 상태 <input style="width: 40px; height: 20px;" type="text"/></p> <p>상악 하악</p> <p>0 = 보철물 없음 1 = 고정성가공의지 한 개 2 = 고정성가공의지 두 개 이상 3 = 국소의치만 있음 4 = 고정성가공의지와 국소의지 공존 5 = 총의지 9 = 기록불가</p> <p>임플란트 존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상악전지</td> <td style="width: 50%;">상악후지</td> </tr> <tr> <td style="width: 50%;">하악전지</td> <td style="width: 50%;">하악후지</td> </tr> </table> <p>해당 부위에 존재하는 임플란트 개수 기록</p>	상악전지	상악후지	하악전지	하악후지	<p>보철물 필요</p> <p>고정성가공의지 필요단위 수 <input style="width: 40px; height: 20px;" type="text"/></p> <p>상악 하악</p> <p>국소의지 및 총의지 <input style="width: 40px; height: 20px;" type="text"/></p> <p>상악 하악</p> <p>지대치와 인공지아를 합쳐 필요한 총 단위수를 기록</p> <p>0 = 필요없음 1 = 국소의지 필요 2 = 총의지 필요</p>	<p>종합 판정</p> <p><input type="checkbox"/> 정상</p> <p><input type="checkbox"/> 충치지로 필요 ※ 지수지로 및 수복지로 포함</p> <p><input type="checkbox"/> 보철지로 필요 ※ 고정성가공의지 필요 포함</p> <p><input type="checkbox"/> 스켈링 필요</p> <p><input type="checkbox"/> 잇몸치로 필요</p> <p><input type="checkbox"/> 발치 필요</p> <p><input type="checkbox"/> 틀니 필요 ※ 틀니 수리 포함</p> <p><input type="checkbox"/> 실란트 필요</p> <p><input type="checkbox"/> 지경부 마모증</p> <p><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p>																											
상악전지	상악후지																																
하악전지	하악후지																																
<p>치아반점도 [만11세만 해당]</p> <p>치아반점도 <input style="width: 40px; height: 20px;" type="text"/></p> <p>0 = 정상치아 1 = 반점의문치아 2 = 경미도 반점치아 3 = 경도 반점치아 4 = 중등도 반점치아 5 = 고도 반점치아 7 = 불소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상 9 = 기록불가</p>	<p>치주조직검사 [만12세이상만 해당]</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부위</th> <th>#18-14</th> <th>#13-23</th> <th>#24-28</th> </tr> </thead> <tbody> <tr> <td>출혈여부</td> <td></td> <td></td> <td></td> </tr> <tr> <td>치석여부</td> <td></td> <td></td> <td></td> </tr> <tr> <td>치주낭깊이</td> <td></td> <td></td> <td></td> </tr> <tr> <td>부위</td> <td>#48-44</td> <td>#43-33</td> <td>#34-38</td> </tr> <tr> <td>출혈여부</td> <td></td> <td></td> <td></td> </tr> <tr> <td>치석여부</td> <td></td> <td></td> <td></td> </tr> <tr> <td>치주낭깊이</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출혈여부 0 = 출혈없음 1 = 출혈주조직</p> <p>치석여부 0 = 치석없음 2 = 치석형성주조직</p> <p>치주낭깊이 0 = 치주낭없음 3 = 전치주낭형성주조직 (4~5mm) 4 = 심치주낭형성주조직 (6mm이상)</p> <p>X = 제외 (※ 입력코드 = 8)</p>	부위	#18-14	#13-23	#24-28	출혈여부				치석여부				치주낭깊이				부위	#48-44	#43-33	#34-38	출혈여부				치석여부				치주낭깊이			
부위	#18-14	#13-23	#24-28																														
출혈여부																																	
치석여부																																	
치주낭깊이																																	
부위	#48-44	#43-33	#34-38																														
출혈여부																																	
치석여부																																	
치주낭깊이																																	

2. 연구대상자 설명서, 참여동의서, 설문지

연구대상자설명서(구강 검사 및 설문조사)

연구 제목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책임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임교원 <input type="checkbox"/> 비전임교원				
	성명	소속	직급	연락처	이메일
	류재인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부교수	02- 961-0579	jaeinryu @khu.ac.kr
동의담당자	성명	소속	직급	연락처	이메일
	박향아	경희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02- 961-0344	giddk7599 @naver.com
	탁나연	경희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02- 961-0344	takglory @naver.com
	차은경	경희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02- 961-0344	cha_ek @naver.com
연구기관	기관명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연락처	02-961-0579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6			
의뢰기관	기관명	해당 사항 없음		연락처	
	주소				
위원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02-958-4674				

이 연구는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구강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구강건강 증진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께서는 본 연구에 참여하시도록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설명서가 왜 우리가 이 연구를 하며 귀하의 권리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귀하께서는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하시기 전에 이 설명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설명서에는 연구 진행방식, 귀하의 선택권과 참여 중단에 대한 권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귀하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본 연구 참여에 따른 예상되는 이익이나 위험 또는 불편함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만 수행될 것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신중하게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의논해보시기 바랍니다.

1. 연구목적, 배경 및 기대효과

- 연구목적: 이번 연구를 통해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에 대한 구강 건강행태 및 관련 요인을 조사하여 전반적인 구강 건강실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강 검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이동노동자의 구강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이동노동자의 구강건강 증진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 및 구강건강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 연구 배경: 이동노동자의 구강건강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택배, 배달 업무 등 필수업무의 중요성이 부각 되었으나, 필수노동자는 장시간 과중한 노동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한 건강장해가 증가하고 있어 필수노동자에 대한 처우 및 업무 여건은 취약한 상황입니다. 또한 높은 건강 문제 경험률과 비교해 건강검진 미 수검률은 일반인에 비해 높고 업무량이 많아 충분한 휴식을 갖지 못하는 이동노동자의 업무 특성상 전반적인 구강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구강건강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련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동노동자의 구강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 및 구강건강 정책 자료로서의 활용을 위한 구강건강 실태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기대효과: 서울시 일부 이동노동자의 구강건강 실태 및 행태를 조사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노동자의 구강 건강전략 수립 및 구강건강 증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 연구대상자의 선정 기준, 제외 기준, 목표 수, 탈락 및 중지 기준

- 선정 기준: 서울시에서 이동노동자(택배·배달종사자, 대리기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연구에 동의한 참여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직종을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기사로 구분하여 직종별 70명 내외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 제외 기준: 선정 기준 이외의 자 혹은 대상자의 상태가 연구(구강 검사 및 설문조사 등) 참여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제장이나 조사자 등에 의해 판단된 자는 제외 기준이 됩니다.
- 목표 수: 서울시에서 이동노동자(택배·배달종사자, 대리기사)로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구강 검사 및 설문조사의 경우 직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직종별 70명 내외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총 2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1년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15~69세 취업자의 8.5%인 220만 명,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2.6%인 68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 중 서울시는 23.9%, 배달·배송·운전 종사자는 29.9%에 달합니다. 따라서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 중 서울시의 배달·배송·운전 종사자는 16만 명으로 추산됩니다(2021년 5월 기준). 이번 연구는 기존에 시행된 바 없는 배달·배송·운전 종사자에 대한 구강 건강실태 파악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의 연구로, 대표치 산출의 의미보다는 본격적인 구강 건강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전체 대상자의 0.1%에 해당하는 160명을 대상으로 하되, 응답률 80%로 가정하고 200명을 최종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탈락: 참여 및 질문 단계마다 조사자가 동의 여부를 확인하며 참여자 본인이 미동의하여 참여를 취소하면 중도 탈락 처리됩니다.
- 중지: 조사자가 동의 여부를 확인하며 참여자가 신체적 혹은 심리적 위해를 받거나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전반적인 상황점검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연구대상자의 모집 방법, 동의 확보 방법

- 모집 방법: 서울시 이동노동자(택배·배달종사자, 대리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대상자의 관련 기관에 연구진이 보내준 대상자 모집공고문을 게시하고 이후 연구진은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참여를 희망한 사람의 명단을 미리 확보하여 진행합니다.
- 동의 확보 방법: 연구 동의 설명자가 연구 동의에 대한 설명을 시행한 후 참여자 본인의 동의서 서명으로 동의를 확보합니다.

4. 취약대상자 대책

- 참여하는 이동노동자 당사자는 본인이 원치 않으면 참여 취소 가능합니다. 구강 검사는 구강 건강상태 조사의 정해진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이로 인한 위험이나 이익의 문제가 없습니다. 연구 진행 중 위험 상황이나 문제 발생 시 연구를 중단하게 됩니다.

5. 연구 참여에 따른 이득, 보상

- 이동노동자 표본의 구강 검사 및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향후 사업의 발전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구강 검사 및 설문조사에 동의한 참여자의 경우 구강 관리 용품(칫솔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6. 연구 참여에 따른 부담, 위험 노출, 부작용 및 인권침해 가능성

- 연구 참여에 따른 부담, 위험 노출, 부작용 및 인권침해 가능성은 없습니다. 참여자에게 시행하는 구강 검사 및 설문조사는 최소(일상생활) 수준 이하의 부담입니다.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치과 의사 1인 및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치과위생사 3인이 전담할 예정이며, 정해진 지침에 따라 시행되어 이로 인한 위험이나 이익의 문제는 없습니다. 참여자가 미동의할 때 언제든지 참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담, 위험 노출, 부작용 및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습니다. 연구 진행 중 위험 상황이나 문제 발생 시 연구를 중단하게 됩니다.

7. 연구 불참 시 불이익 가능성 유무

- 연구 불참 시 불이익 가능성 없으며, 혹시라도 있을 불이익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참여 및 불참 여부는 연구진 이외에는 비공개합니다. 또한, 연구 단계마다 참여 기관이나 참여자가 미동의하면 언제든지 참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취득되는 개인정보

-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종류: 나이, 성별, 직종(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기사)
- 수집목적: 자료 분석에 활용
- 보관기간: 연구 종료 후 곧바로 폐기
- 처리계획: 모든 연구자료는 익명화(개인식별정보의 영구적 삭제, 전부 혹은 일부를 해당 기관 고유 식별 기호로 대체), 수집된 정보는 지정된 장소 및 컴퓨터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외부 유출을 엄격히 통제

9. 연구 방법

- 총 연구 기간: 2022년 5월~2023년 4월(또는 IRB 승인 이후 1년)
- 연구참여자 개인별 소요 시간: 참여자는 연구진과 사전에 협의가 이뤄진 날짜 및 시간에 진행됩니다. 1회 참여, 구강 검사 10분, 설문조사 10분 이내로 진행됩니다.
- 연구수행 장소: 아래의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구분	연구참여단체명	장소
1	택배	택배산업본부 (롯데-은평지회)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4-6
2	택배	택배산업본부 (롯데-구로지회)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54, 롯데택배 오류천왕 대리점
3	대리운전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54 호진빌딩 4층 휴서울이동노동자 서초점터
4	대리운전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성지길 9 합정동 무림빌딩 4층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5	음식배달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배달지부	서울 송파구 중대로 97 효원빌딩 4층(동남권센터)
6	음식배달	라이더유니온 서울지부	서울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10층(도심권센터) 서울동대문구장한로6,장안빌딩805호(동북권센터)

- 일정표: 연구개시 1개월 이내에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며, 대상자들에게 안내를 요청하고, 이후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참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을 받습니다. 구강검진 당일 당사자에게 연구내용과 연구동의 설명 후 참여 동의 여부를 재확인하고 동의서를 제출한 참여자에게 계획된 절차에 따라 구강 검사 및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연구대상자의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연구 참여 시 거치게 되는 과정: 연구진이 사전에 협의가 이뤄진 날짜 및 시간에 연구장소를 방문하여 시행합니다.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치과 의사 1인 및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치과위생사 3인이 전담할 예정이며, 정해진 지침에 따라 시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시행하기에 앞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연구대상자 설명서 및 동의서 배포 후 이에 동의한 때에만 이후 과정을 진행합니다.
- 연구참여자 준수 사항: 참여자 혹은 참여 기관은 연구진과 사전에 협의가 이뤄진 날짜 및 시간에 연구 장소에 도착해야 하며, 일정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연구장소에 도착한 이후 진행 과정에서 참여 변경 및 중도 탈락 사유가 발생하면 연구진에게 이를 구두로 알려야 합니다. 참여자의 단순 변심으로 중도 탈락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위해 지급하기로 한 수당은 지급될 수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관계기관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 중도 탈락: 참여 및 질문 단계마다 참여자 본인이 미동의하여 참여를 취소하면 중도 탈락 처리됩니다.

- 연구 중지: 연구자가 동의 여부를 확인하며 참여자가 신체적 혹은 심리적 위해를 받거나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전반적인 상황점검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측정 항목: 구강건강 인식 및 행태(주관적 구강건강 인식도, 어제 하루 칫솔질 여부/시기, 치아 손상 경험 여부/이유, 최근 1년 동안 구강검진 여부, 최근 1년 동안 치과 병·의원 이용 여부/진료 항목, 최근 1년 동안 치과 진료 횟수, 무자격자 치과 시술 경험 여부, 최근 1년 동안 치과 미충족 의료 여부/이유, 저작 불편 여부, 발음 불편 여부), 구강건강 상태 (치아 상태, 치료 필요, 보철물 상태, 보철물 필요, 치주조직 검사).
- 자료수집방법: 참여자에게 수집된 구강 검사, 설문조사 결과지를 한글이나 엑셀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B화하여 기록합니다.

10. 연구자료의 안전한 처리 방법

- 취득한 내용 중 고유명사, 인물명, 기관명 등은 비식별 처리합니다. 모든 연구자료는 익명화(개인식별정보의 영구적 삭제, 전부 혹은 일부를 해당 기관 고유 식별 기호로 대체)되며, 수집된 정보는 지정된 장소 및 컴퓨터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외부 유출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11. 이상 반응 관련 연구대상자 안전 대책 및 보상 규정

해당 사항 없음

12. 연구대상자의 권리

본 연구 참여 여부는 완전히 귀하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하고 귀하의 참여를 중단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도 없을 것입니다. 귀하가 본 양식에 서명하거나 본 시험 참여에 동의함으로써 귀하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13. 문의 방법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연구책임자 혹은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류재인 02-961-0579

연구담당자 박향아, 탁나연, 차은경 02-961-0344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 02-958-4674

이상의 연구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시고 참여를 결정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본 연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대상자동의서(구강 검사 및 설문조사)

연구 제목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책임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임교원 <input type="checkbox"/> 비전임교원				
	성명	소속	직급	연락처	이메일
	류재인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부교수	02- 961-0579	jaeinryu @khu.ac.kr
동의담당자	성명	소속	직급	연락처	이메일
	박항아	경희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02- 961-0344	giddk7599 @naver.com
	탁나연	경희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02- 961-0344	takglory @naver.com
	차은경	경희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02- 961-0344	cha_ek @naver.com
연구기관	기관명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연락처	02-961-0579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6			
의뢰기관	기관명	해당 사항 없음		연락처	
	주소				
위원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02-958-4674				

(아래 부분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는 본 연구의 설명문을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학교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할 때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 나는 본 연구에서의 사진 촬영 및 녹취, 이로 인한 정보 수집에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 나는 본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 나는 개인식별정보를 비롯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처리함에 동의합니다.
- * 수집 개인정보 범위: 나이, 성별, 직종(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기사)

연구참여자 : 성명_____ (서명) 서명일: 2022년 월 일

연구설명자 : 성명 _____ (서명) 서명일: 2022년 월 일

8. **최근 1년 동안** 치과 병·의원을 이용하였습니까?

- ① 예
→ 8-1로 가시오
 ② 아니오

8-1. 받은 진료 항목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식사를 하지 않았으나 칫솔질(잇솔질)을 시행한 경우, 해당 식사 '전에' 에 표시

① 구강 검사(시진, X-ray 촬영 등)
 ② 잇몸병 치료(잇몸 수술 포함)
 ③ 단순 충치 치료(치아 충전)
 ④ 치아 신경치료
 ⑤ 충치 예방치료(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⑥ 발치 혹은 구강 내 수술(유치가 흔들려서 빼는 것은 제외)
 ⑦ 다쳐서 빠지거나 부러진 치아의 치료
 ⑧ 보철물(브릿지, 임플란트, 틀니 등) 제작 혹은 수리
 ⑨ 스케일링(전악 치석 제거)
 ⑩ 기타(교정 치료, 심미 치료 등)

9.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치과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9-1로 가시오
 ② 아니오
 ③ 병의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

9-1. 치과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시간이 없어서(내가 원하는 시간에 문을 열지 않아서, 직장 등을 비울 수 없어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등)
 ② 증세가 가벼워서(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아서)
 ③ 경제적인 이유(진료비가 부담되어서)
 ④ 교통편이 불편해서, 거리가 멀어서
 ⑤ 병·의원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⑥ 병·의원 등에 예약하기가 힘들어서
 ⑦ 진료(검사 또는 치료)받기가 무서워서
 ⑧ 기타 ()

<신체활동>

다음은 평소 일주일 동안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시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질문에 답해주세요.

‘**고강도 활동**’은 격렬한 신체활동으로 숨이 많이 차거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활동을,

‘**중강도 활동**’은 중간 정도의 신체활동으로 숨이 약간 차거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는 활동을 말합니다.

(일과 장소 이동 시 신체활동에 대해서는 제외) **스포츠, 운동 및 여가 활동**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1. 평소 최소 10분 이상 계속 숨이 많이 차거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고강도의 스포츠, 운동 및 여가활동**을 하십니까?

※ 예: 달리기, 줄넘기, 등산, 농구 시합, 수영, 배드민턴 등

- ① 예
→ 1-1로 가시오
 ② 아니오

1-1. 평소 일주일 동안, **고강도의 스포츠, 운동 및 여가 활동**을 며칠 하십니까?

일주일에 일

1-2. 평소 하루에 **고강도의 스포츠, 운동 및 여가 활동**을 몇 시간 하십니까?

하루에 시간 분

2. 평소 최소 10분 이상 계속 숨이 많이 차거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는 **중강도의 스포츠, 운동 및 여가활동**을 하십니까?

※ 예: 빠르게 걷기, 가볍게 뛰기(조깅), 웨이트 트레이닝(근력 운동), 골프, 댄스스포츠, 필라테스 등

- ① 예
→ 2-1로 가시오
 ② 아니오

2-1. 평소 일주일 동안, **중강도의 스포츠, 운동 및 여가 활동**을 며칠 하십니까?

일주일에 일

2-2. 평소 하루에 **중강도의 스포츠, 운동 및 여가 활동**을 몇 시간 하십니까?

하루에 시간 분

<흡연>

1.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피운 일반담배(궐련)의 양은 총 얼마나 됩니까?

- ① 5갑(100개비) 미만
 → 1-1로 가시오
 ② 5갑(100개비) 이상
 → 1-1로 가시오
 ③ 피운 적 없다

1-1. 현재 일반담배(궐련)을 피우십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매일 피운다 → 1-1-1로 가시오	1-1-1. 하루 평균 일반담배(궐련) 흡연량은 몇 개비입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비
<input type="checkbox"/> ② 가끔 피운다 → 1-1-2로 가시오	1-1-2. 최근 1달 동안 일반담배(궐련) 흡연일수는 며칠입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일 1-1-3. 일반담배(궐련) 흡연한 날 하루 평균 흡연량은 몇 개비입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비
<input type="checkbox"/> ③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다 → 1-1-4로 가시오	1-1-4. 과거 일반담배(궐련) 흡연 기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월 1-1-5. 과거 일반담배(궐련)을 피울 때 하루 평균 흡연량은 얼마나 됩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비 1-1-6. 일반담배(궐련)을 끊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월

〈음주〉

1.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 제사, 차례 때 몇 모금 마셔본 것은 제외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술을
마셔 본 적 없다)
→ 1-1로 가시오

1-1. 최근 1년 동안의 음주(술)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② 한 달에 1번 미만	<input type="checkbox"/> ③ 한 달에 1번 정도
<input type="checkbox"/> ④ 한 달에 2~4번	<input type="checkbox"/> ⑤ 일주일에 2~3번 정도
<input type="checkbox"/> ⑥ 일주일에 4번 이상	

〈교육 및 경제활동〉

1.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혹은 다니고 계십니까?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이하
 ③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④ 2/3년제 대학 졸업 이하
 ⑤ 4년제 대학 졸업 이하 ⑥ 대학원 수료 이상
 ⑨ 모름

2. 임금, 부동산 소득, 연금, 이자, 정부 보조금, 친척이나 자녀들의 용돈 등 모든 수입을 합쳐 최근 1년 동안 가구의 총 소득은 대략 얼마입니까? 만일 연간 소득을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 월평균 액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기간) ① 연 ② 월

(소득액) 만원

3. 귀하께서 현재 종사하고 계신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택배 ② 배달 ③ 대리기사 ④ 기타 ()

3-1. 귀하께서 현재 종사하고 계신 직업에 근무한 경력을 얼마나 되십니까?

년

4. 귀하께서 하시는 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고 일한다(임금근로자). → 4-1로 가시오
- ② 내 사업을 한다(자영업자와 고용주).
- ③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다(무급가족 종사자).

4-1. 일자리에서의 지위는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합니까?

- ① 상용직(계약 기간이 1년 이상) ② 임시직(1개월 이상~1년 미만)
- ③ 일용직(1개월 미만)

4-2. 현재 재직 중인 일자리(직장)는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입니까?

- ① 정규직(정년까지 고용 보장)
- ② 비정규직(한시적, 비전형, 파견, 단시간 근로자, 도급 등)

5. 직장(일)에서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잔업/야근을 포함하여 얼마나 됩니까? (식사 시간은 제외됩니다)

1주 시간

6. 귀하는 주로 주간(오전 6시~저녁 6시 사이)에 일하십니까? 혹은 다른 시간대에 일하십니까?

- ① 주로 주간에 일한다.
- ② 저녁 근무(오후 2시~자정 사이)
- ③ 밤 근무(저녁 9시~다음날 오전 8시 사이)
- ④ 주야간 규칙적 교대 근무
- ⑤ 24시간 교대 근무
- ⑥ 분할 근무(하루에 일하는 시간대 2개 이상)
- ⑦ 불규칙 교대 근무
- ⑧ 기타(_____)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참여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202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구강검사 지침서

검진 조사 지침서

① 조사 준비 업무

제1절 조사대상자 모집 공고

표본으로 선정된 기관의 대상자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 공고문 배포를 위해, 해당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붙임 1 참조).

제2절 조사 참여 예약

1. 대상자 참여단체 예약전화

대상자 참여단체를 확인하여, 전화 예약을 진행한다. 예약전화는 대상자 참여단체가 검진에 참여해야 함을 인지하도록 최소 1주 전에 완료한다.

1) 예약전화 내용

① 조사 시간: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약 10~20분가량 소요됨을 설명

* 검진 시간을 조율할 때는 대상자가 붐비는 시간이면 혼잡할 수 있음을 안내

② 전달내용: 검진 당일 대상자가 숙지해야 할 유의사항 안내

2. 대상자 참여단체 협조 요청 공문

대상자가 조사 참여로 인해 출근 또는 등교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붙임 2 참조).

제3절 조사장소

1. 조사장소 선정

원활한 조사수행을 위해 선정된 조사지역의 담당자에게 조사 일정에 따른 조사장소 선정을 요청하면 담당자는 조사장소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조사수행 전 전문 조사수행팀에서는 제출된 조사장소를 확인하고, 조사장소에 직접 연락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조사장소가 미선정된 경우, 해당

조사장소 담당자는 적절한 장소를 다시 확인하고, 조사장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2. 조사장소 협조 요청

조사장소 협조 요청 공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배포한다.

- 담당자: ○○○
- 조사 일정: 2022년 ○○월 ○○일
- 조사장소 명:
- 조사장소 주소:
- 수신자:
- 발송 방법: 전자, 메일, 팩스(선택사항에 따라 추가 정보 입력)

제3절 소모품 구매

구강검사 기구: 치경(일회용), 치주낭 탐침기, 핀셋, 익스플로러, 시린지팁, 핑개구बाट, 핀셋통, 치실, 멸균용 소독 파우치, 멸균 인디케이터, 사각포

제4절 복무

- ① 조사장소로 출근하여 장소 확인, 물품 및 장비 준비, 차량 주차 확인, 가구 방문 등 조사를 준비한다.
- ② 조사 예약 시간 10분 전까지 조사장소로 출근하여, 조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조사를 수행한다.

② 검진 조사

제1절 동의서 구득

1. 참여동의서

- ① 대상자는 조사 참여 전 해당 동의를 구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 대상자는 법정대리인, 만 18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서명으로 동의를 구한다.
- ② 참여동의서는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동의, 민감정보(질병 과거력, 가족력, 질환 유병 등 질병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구성되어 있다.

- ③ 대상자가 동의하는 항목에만 조사를 진행하며,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조사 참여, 자료 수집 및 이용이 불가하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수집·이용 중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대상자 결과지 제공도 불가)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한다.
- ④ 동의 완료 후 설명자의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을 한다.

2. 답례품 지급 및 관리

답례품은 원활한 조사 추진, 목표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조사참여자 및 현지 협조사 등에게 지급한다.

1) 답례품 종류

답례품은 구강 관리 용품이다.

2) 답례품 지급

- ① 검진 및 건강 설문조사 종료 후 완료한 조사항목을 확인한다.
- ② 대상자에게 수령금액을 확인하도록 한 후 수령장에 성명, 서명을 받는다.

③ 구강 검사

제1절 개요

1. 목적 및 의의

구강건강이 저하되면 저작능력 저하로 이어져 식사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다수의 질병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한 발음 및 외모 등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구강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강 상병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이며, 전 생애에 걸쳐 꾸준히 발생하는 다빈도 질병이다. 이러한 구강질환을 적절하게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구강 건강지표와 구강 진료 필요 및 구강건강 의식 및 행태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체계적인 구강보건 진료사업목표 개발과 사업기획 및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하고, 대상자는

구강 검사를 받아 자신의 구강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치료가 필요한 치아 및 치주조직에 대한 상담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구강보건 행태에 대한 정보를 받음으로써 개인의 구강건강을 향상할 수 있다.

2. 조사체계

구강 검사는 국가 단위 조사의 조사자 교육훈련 및 실무경험이 있는 치과의사가 수행한다. 타당도 및 신뢰도가 높은 국가 구강건강 통계자료를 발간하기 위해, 조사수행 전 조사자 교육훈련, 조사수행 중 현장 정도관리, 조사수행 후 조사표 검독 및 자료 정제를 통하여, 내·외부 질 관리를 수행한다.

제2절 측정 장비

1. 치과용 체어

치과용 체어는 대상자가 누운 자세에서 구강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이다.

2. 소모품

① 일회용 치경

일회용 치경은 구강 검사 시 주로 이용하는 검사기구로 우식치아, 충전치아, 결손치아 등의 치아 상태를 시진으로 확인하는 도구이다. 일회용으로 별도의 멸균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가볍고 편리하여 대규모 역학조사에서 흔히 사용된다.

② 치주탐침

치주탐침은 치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기구로, 치주조직의 출혈 여부, 치석 존재 여부 및 치주낭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구 끝은 0.5mm 볼로 이루어져 있어, 치주낭 기저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고, 치주낭이 비정상적으로 깊어진 부분을 쉽게 선별할 수 있도록 기구 끝으로부터 3.5~5.5mm 되는 부분은 검정색 띠로 되어 있다.

③ 기타 검진 물품 : 핀셋, 탐침(explorer), 글러브, 마스크 등

3. 조사 방법

1) 개요

① 조사 전 구강 검사 장비를 세팅한다.

② 조사수행 시 대상자를 확인하고 구강면접설문 3개 문항 시행한 후, 구강검사를 수행한다. 구강

검사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한 후, 조사표를 취합하여 제출한다.

- ③ 조사종료 후 장비를 정리한다.

2) 구강 면접 설문

- ① 첫대면 : 대상자와 간단히 인사하며 대상자를 치과용 체어에 앉힌다.
 - ② 바코드 부착
 - ③ 설명 :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한 후에 구강검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설명한다.
 - ④ 설문조사 수행 : 치과용 체어를 기본위치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구강면접 설문 지침에 따라 조사를 한다.
- ※ 만 12세미만 아동은 보호자에게 질문 한다.
- ⑤ 설문조사 후 : 대상자에게 구강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한 후, 등을 의자에 기대도록 한다. 의자가 뒤로 젖혀짐을 설명한다.

3) 구강 검사

구강 검사를 시행하기 전, 사랑니 발치 경험이나 임플란트 식립 경험 및 심미 재료 충전 경험이 있는지 확인한 후, 위치가 어디인지 기억하고 있으면 기록해 두었다가 치아 상태 검사 시에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일회용 치경으로 치아 상태 및 보철상태를 검사한다. 우식, 충전, 결손, 전색 등의 치아 상태와 보철물 상태를 확인한 후, 연필로 기록지에 적절한 코드를 기재한다. 치주 상태는 멸균된 치주탐침을 사용하여 검사 지정 치아에 대한 출혈여부, 치석 존재 여부 및 치주낭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알맞은 코드를 기재한다. 치아 치료 필요 및 보철 필요는 치아우식 및 결손상태에 따라 임상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적절한 처치 필요를 기재한 후, 종합적으로 처치가 필요하거나, 행태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판정에 적절한 결과를 기재한다. 이러한 모든 구강 검사 방법은 구강 검사 지침에 근거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202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구강 검사 지침

① 치아우식증, 치아 상태 검진지침

제1절 개요

제1조(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구강검진 조사항목이 추가되어 조사의 질을 높이고자 구강검진 조사자 교육훈련의 구강검진 지침을 마련함에 있다. 본 지침서는 2006년 국민 구강건강 실태조사의 구강 검사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되었다.

제2조(감염관리)

- ① 검진자는 감염관리에 유의하여야 하고, 검진 중 글로브를 착용하여야 한다.
- ② 검진 중 치경, 탐침 및 거즈를 제외하고는 피검자의 구강 내에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조(검진 및 기록순서)

- ① 치아 상태 및 치료 필요상태의 검진 및 기록은 상악우측, 상악좌측, 하악좌측, 하악우측의 순서로 기록한다.
- ② 상악은 우측 치아에서 좌측 치아 쪽으로 검진하고 기록해 나아가고, 하악은 좌측 치아에서 우측 치아 쪽으로 검진하고 기록해 나아간다.
- ③ 각각의 치아는 치아 상태와 치료 필요를 일조로 하여 검진 및 기록을 마친 후 다음 치아를 검진한다.
- ④ 치아 상태의 모든 부위에서 유치 또는 영구치 중 한 란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치료 필요의 모든 란은 아라비아 숫자로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 특히 혼합치열기에서 유치 영구치 모두 비워 놓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⑤ 치아 상태 판정에는 날카로운 탐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훈련과정 중에는 탐침 사용을 허용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최소한의 압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광화가 일어나고 있는 표면을 탐침으로 천공시켜 우식을 진행하게 하지 않기 위함이다. 치아 표면의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탐침 사용은 허용된다. 우식 와동은 Community Periodontal

Index(CPI) probe로 확인한다.

제4조(검진 시작 시 질문)

검진을 시작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한 후, 피검자의 응답에 따라 해당 항목의 검진에 유의하며 검진하여야 한다.

1. 지치 발거 원인

“사랑니를 뽑은 적이 있으십니까? 어디를 뽑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왜 뽑았는지 기억하십니까?”

2. 심미적 충전물 존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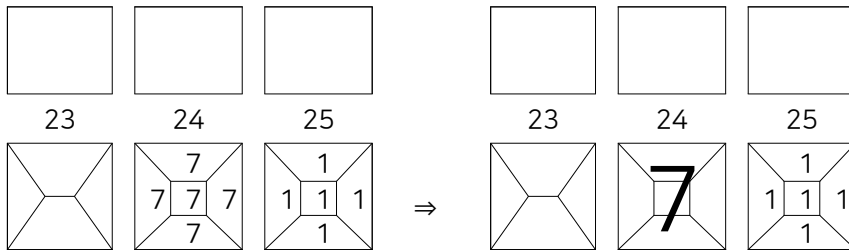
“치아 색의 재료로 치아를 때운 적이 있습니까? 몇 개 때웠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느 치아인지 기억하십니까?”

3. 임플란트 존재 여부

“임플란트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부위에 하셨습니까?”

제5조(기록요령)

① 특정 치아의 모든 치면의 검진 결과가 같으면 해당란에 충분히 크게 하나의 숫자를 써넣어 각각의 치면에 써넣는 일을 대신할 수 있다. 단, 잔근과 같은 우식 치면의 경우에는 전체 치면이 같은 검진부호라 해도 각각 치면 별로 기록하여야 검진 결과 정리할 때 오류를 피할 수 있다.



② 특정 치아에서 우식치면이나 처치치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치면에만 기록하고 나머지 건전 치면은 건전 치면 부호를 기재하지 않고 비워 놓을 수 있다.

제2절 치아 상태

제6조(기록 치아선택)

- ① 유치와 후 계승 영구치가 구강 내에 모두 맹출하여 있는 경우에는 영구치만 판정하고 유치기록은 생략한다.
- ② 심한 우식에 의하여 영구치 맹출이 촉진되었다라도 유치 우식 통계에서 해당 유치는 산정하지 않음으로써, 우식경험도가 다소 과소평가 되더라도 과대평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③ 특정 부위의 유치와 영구치가 모두 없을 때는, 영구치의 발거 경험이 없는 한 영구치미맹출로 기록한다.

제7조(치면 상태 부호)

- ① 치면 상태의 부호는 다음과 같다.

0. 건전치면

1. 우식치면

3. 우식경험처치치면

4. 우식경험상실치면

5. 우식비경험상실치면

X. 원인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실치면

6. 전색치면

7. 우식비경험처치치면

8. 미맹출치면

9. 기록불가치면

- ② 검사 및 기록 용이성을 위하여 유치와 영구치의 부호를 구분하지 않는다.
- ③ 세계보건기구의 “충전 및 우식”의 부호 2는 결과에 따른 효용이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제외한다.

제8조(치면 분류)

- ① 모든 치면은 노출된 치근을 포함한 임상적 치관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 ② 구치부의 치면은 협면, 근심면, 교합면, 원심면, 설면의 다섯 면으로 나누고 전치부의 치면은 협면, 근심면, 원심면, 설면의 네 면으로 나눈다.

- ③ 면 간의 분리는 우각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 지침에서 특별히 제시된 상황 및 기준이 있을 때는 이에 따른다.
- ④ 우각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협설면에서 보아 양측 1/4은 각각 근원심에 속한 것으로 본다. 단, 양측 1/4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협설면에서 보아 전치부는 절단우각(교합면과 인접면이 만나는 부위), 구치는 교두가 관여되어 있으면 협설면까지 관련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유치)

- ① 유치우식의 검진은 우식치면과 충전치면에 한정하고, 모든 상실유치는 해당란에 기록하지 않으며, 영구치란에 영구치미맹출로 처리한다.
- ② 실제 우식경험으로 상실된 유치가 있다 하더라도 생리적 탈락과 구별하기 쉽지 않고, 이에 따라 편의(bias)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유치상실은 검진기준에서 제외한다.
- ③ 만 10세 또는 초등학교 5학년생 이상에서는 구강 내에 유치가 존재하더라도 유치란에 기록하지 말고 영구치-미 맹출 치아, 유치-기록 불가 치아로 처리하며, 성인에서 잔존유치도 마찬가지다.

제10조(건전 치면=0)

- ① 우식증을 치료한 흔적이 없고, 전색된 흔적이 없으며, 우식증이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 치면을 건전치면으로 판정한다.
- ② 연화 치질이 존재하지 않는 모든 치면은 건전치면으로 판정한다. 단, 유전치의 경우에는 연화 치질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식에 기인한 치관 손상이 있으면 건전치면이 아닌 우식치면으로 판정한다. 조기 유아 우식증(ECC)의 경우는 종종 유전치에서 연화치질 없는 치관 손상이 일어나므로 이를 고려한 규정이다.
- ③ 각 치면에서 보아 법랑질 내부에 우식이 예측되는 경우라도, 해당 치면이 건전하고 그 치면에서 기인한 우식이 아닌 경우라면 해당 치면은 건전치면으로 판정한다.
- ④ 맹출 중인 치아도 해당 치아로 보며, 육안으로 관찰되는 부분 해당 치면에 대해 우선 판정하고 보이지는 않는 부분은 모두 건전치면으로 판정한다.
- ⑤ 치아가 파절된 치면에 우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건전치면으로 판정한다.

제11조(우식치면=1)

- ① 치질의 파괴를 동반한 광범위한 검은 변색, 소와 하부로부터 법랑질을 통해 뚜렷하게 비치는

검은 상아질 우식 부위 등 의심할 여지가 없는 우식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진만으로 우식치면이라 판정한다.

- ② 우식치면의 의심이 있으나 시진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CPI probe를 이용한 촉진이 허용되며, 이 경우 연화 치질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우식치면으로 판정한다. 재광화면을 파괴하지 않도록 탐침 사용은 가능한 한 자제하고, 사용하더라도 치면에서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압력으로 가볍게 탐지하여야 한다.
- ③ 한 치면에 충전물과 우식증이 동시에 존재할 때는 우식치면으로 판정한다.
- ④ ZOE와 ZPC로 임시 충전된 치면은 우식치면으로 판정한다.
- ⑤ 지대치용 임시 치관을 제외한 임시 치관의 경우 임시충전물로 보아 모든 치면을 우식치면으로 판정한다.
- ⑥ 영구충전물이 부분 또는 완전 탈락한 치면은 연화 치질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우식치면으로 판정한다. 이때 탈락의 기준은 치면이다(예: MO충전의 경우 O만 탈락하면 O만 1, M은 3). 단, 충전물은 온전하나 충전물 주위 치질이 우식이 없이 단순히 파괴된 경우는 건전치면으로 판정한다.
- ⑦ 약간의 잔존 치근만 확인되더라도 해당 치아의 모든 치면은 상실치면이 아닌 우식치면으로 기록한다.

제12조(우식경험처치치면=3)

- ① 진행 중인 우식증이 없고 영구 수복 물이 있는 치면을 우식경험처치치면으로 기록한다.
- ② 인조치관으로 수복된 치아는 모든 치면을 우식경험처치치면으로 기록한다. 단, 지대치 인조치관은 문진없이 우식비경험처치치아로 간주한다.
- ③ 유치와 영구치 모두 아말감이 혼합된 재료로 충전된 경우는 영구충전물로 간주한다.
- ④ 치관이 탈락하였고 치수 치료로 치면에 충전물이 있는 경우 해당 치면은 우식경험처치치면으로 판정하고, 단순히 치관을 위해 삭제된 다른 치면은 우식비경험처치치아로 판정한다.
- ⑤ 공간 유지장치 설계 시 우식이 있는 경우에 Crown & loop를 사용하므로, 공간 유지 장치용 치관은 모두 우식경험처치치면으로 기록한다.
- ⑥ 피개의치(Over denture)의 지대치는 전체 치면을 우식경험충전치아로 기록한다.
- ⑦ 가공치(Pontic) 없이 복수의 치아를 결합한 인조치관의 형태로 수복하였을 경우, 문진에 근거하여 우식경험 또는 우식비경험처치치면으로 기록한다. 문진 시 원인을 모를 때 전치의 경우에는 우식비경험처치치면, 구치는 우식경험처치치면으로 기록한다.

제13조(우식경험상실치면=4)

- ① 우식증으로 인하여 발거된 치아를 우식경험상실치면으로 판정한다.
- ② 모든 상실 치아는 상실의 경력을 문진하여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진은 치아 단위로 하여야 한다.
- ③ 임플란트 고정체(fixture)가 매식된 경우에도 병력에 따라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정한다.
- ④ 지치도 문진에 근거하여 판정하되 발거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미맹출로 기록한다.

제14조(우식비경험상실치면=5)

우식비경험상실치면으로 기록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상 원인 발거 치아
2. 교정 치료용 발거 치아(제1소구치와 제2소구치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제1소구치가 발거된 것으로 본다.)
3. 치주병 원인 발거치아
4. 보철 준비용 발거치아

제14조의 2(원인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실치면=X)

원인을 기억하지 못하는 영구치의 상실치면은 X로 기록하고 입력하되, 분석과정에서 전치의 상실은 우식비경험상실치면으로, 구치는 우식경험상실치면으로 처리한다.

제15조(전색치면=6)

- ① 소와 또는 열구가 치면열구전색재로 전색된 경험이 있는 치아를 전색치면으로 판정한다.
- ② 파절, 마모 등으로 전색재 일부만 남아있어도 우식이 없는 한 건전치면이 아닌 전색치면으로 판정한다.
- ③ 전색재 하부에 레진 충전물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시진 상으로 판정하기 불가능하므로, 편의(bias)를 감수하고 전색재가 존재할 때는 모두 전색치면으로 보도록 한다.
- ④ 레진과 전색의 구분이 모호한 충전물은 전색으로 판정한다.

제16조(우식비경험치치치면=7)

- ① 우식비경험치치치면으로 판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대치로 이용된 치아의 치면은 문진 없이 우식비경험치치치면으로 판정

2. 우식증 이외의 심미 목적 등으로 순면을 덮은 베니어/래미네이트 금관 피개치면
 - ② 교정용 브래킷이 부착된 치면은 브래킷을 무시하고(교정용 브래킷 자체를 우식비경험치치치아로 간주하지 않는다) 치면 상태에 따라 판정한다.
 - ③ 피개한 보철물이 벗겨진 상태에서 노출된 치면에 연화치질이 없다면 건전치면이 아닌 우식비경험치치치면으로 간주한다. 노출된 치면에 우식이나 충전물이 있을 때는 우식치면이나 충전치면으로 판정한다.

제17조(미맹출치아=8)

- ① 상실의 기억이 없는데 구강 내에 보이지 않는 모든 치아는 치아 맹출 시기를 참조하여 미 맹출치아로 판정한다.
- ② 만 10세 또는 초등학교 5학년생 이상에서는 구강 내에 유치가 존재하더라도 유치란에 기록하지 말고 영구치미맹출로 처리한다.
- ③ 선천성결손은 미맹출로 기록한다.

제18조(기록불가치면=9)

- ① 교정용 밴드로 가려진 치면 및 기타 이유로 기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록불가치면으로 판정한다.
- ② 교정용 밴드가 존재하더라도 교합면은 보이는 대로 판정한다.
- ③ 공간유지장치 설계 시 Band & loop 경우 Band는 교정용 밴드와 마찬가지로 기록불가치면으로 판정한다.

제19조(지치)

- ① 지치우식경험여부는 문진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시진을 시작하기 전에 “사랑니를 뽑으신 적 있습니까?”라고 물은 후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때에만 “씩어서 뽑으셨습니까?”라고 물어 지치의 우식경험상실여부를 판정한다.
- ③ 발거원인을 “모른다”라고 진술한 경우와 “부어서 뽑았다” 등 명확히 씹어서 뽑았다는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우식비경험상실치아로 판정한다.
- ④ 발거원인이 아니라 발거를 했는지조차도 기억을 하지 못하면 미맹출치아로 간주한다.

제20조(인접면우식)

- ① 인접면에서 발생한 우식이 협면 또는 설면으로 확대되었을 때, 와동이 협설면에서 보아 원래 치아의 근원 최대 폭경의 1/4 이상을 침범하지 않은 우식은 인접면에 국한된 것으로 판정한다.
- ② 구치의 경우, 교합면 법랑질을 통하여 우식상아질이 투과되어 보이더라도, 교합면에서 바라보아 법랑질의 파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식은 인접면에 국한된 것으로 판정한다.
- ③ 구치의 경우, 교합면에서 보았을 때 인접면측의 법랑질이 조금이라도 파괴되었다면 인접면과 교합면에 모두 우식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치료 필요는 2면 이상 처치 필요로 판정한다.

제21조(기타)

- ① 융합치의 경우에는 한 개의 치아로 인정하고 근심측 한 개 치아란에 기록한 후 원심 측 치아란은 미맹출로 처리한다.
- ② 계속 가공의치나 연결된 치관 등은 그 시작 부위와 끝 부위의 치아에 괄호 표시를 기재한다.
- ③ 상실 또는 미맹출로 인하여 치열 내 공간이 존재하더라도 공간이 좁아 보철물이 필요 없을 때는 기록지 상의 해당 치아의 치아 번호 위에 ‘# #’ 표시를 한다.
- ④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이 있으면, 해당 치아의 치아 번호 옆에 ‘i’ 표시한다.

제3절 치아치료 필요

제22조(치료 필요부호)

- ① 치료 필요는 원인에 무관하게 치료가 필요한지만을 판단한다. 단, 보철물 필요는 보철물 필요 항목에서 판단하므로 치료 필요 항목에서 제외한다.

- ② 치료 필요부호는 다음과 같다.

0. 치료 불필요

1. 1치면 처치 필요
2. 2치면 이상 처치 필요
3. 인조치관 수복 필요
5. 치수 치료 및 수복 필요
6. 우식으로 인한 발거필요
7. 치주병으로 인한 발거필요
8. 기타 원인으로 인한 발거필요

9. 기타 치료 필요

- ③ 상기 부호 중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서 Preventive, caries arresting care와 fissure sealant를 생략했다. 그 이유는 모든 치아가 예방이며, 기준설정이 모호하므로 자료의 타당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Veneer or laminate 항목은 검사 결과의 효용이 적다고 판정하여 생략하였다.
- ④ 치경부마모증의 경우에는 치료 필요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3조(치료 불필요=0)

- ① 모든 치면에 진행 중인 우식이 없거나, 파절 등 다른 치료해야 하는 요인이 없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치료 불필요로 판정한다.
- ② 미맹출치아의 경우도 치료 불필요로 판정한다.

제24조(1치면 처치 필요=1)

- ① 1개 치면 만의 처치가 필요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1치면 처치 필요로 판정한다.
 - 1. 우식 또는 외상으로 인하여 1치면 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변색, 발육이상, 교모, 부식, 치경부마모증은 제한된 검진 시간, 열악한 검진 조건 및 검진자의 판단주관에 따른 타당도 저하 및 신뢰도 저하를 고려하여 상태기록이나 치료 필요의 기록에서 제외한다.)
 - 2. 불량 수복물이나 불량 전색물로 1치면 만의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
- ② 1항 2호의 규정에 따른 불량 수복물 판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기본적인 최소한의 우식 관련 또는 치주병 관련 치료 필요를 판정하기 위하여 아말감, 레진 등의 변색은 불량 수복물의 범주에서 제외한다.).
 - 1. 변연이 불량하여 미세 누출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 2. 치관이나 수복물의 변연이 치은 자극의 원인이 되는 경우
 - 3. 이미 파절된 수복물

제25조(2치면 이상 처치 필요=2)

- ① 2개 치면 이상의 처치가 필요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2치면 이상 처치 필요로 판정한다.
 - 1. 우식 또는 외상으로 인하여 2치면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2. 불량 수복물이나 불량 전색물로 2치면 이상의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
- ② 인접면 우식증 등의 경우와 같이 1개 면에 문제가 있더라도 수복과정에서 2개 치면을 충전하여

야 하는 경우는 2치면 이상 처치 필요로 판정한다.

제26조(인조치관 수복 필요=3)

- ① 처치가 필요한 경우 중 충전물로 수복하기 어려울 상황으로 금속, 도재 내지 합성수지 인조치관을 이용한 수복이 필요한 경우 인조치관 수복 필요로 판정한다.
- ② 유구치의 경우 치관이 파괴되어 대합치와 교합되지 않더라도, 진행 중인 우식 때문에 인조치관 수복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조치관 수복 필요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7조(치수 치료 및 수복 필요=5)

심한 우식증이나 심한 치아파절 등으로 인하여 치수 치료를 한 이후 충전 내지 인조치관 수복이 필요한 경우는 치수 치료 및 수복 필요로 판정한다.

제28조(우식으로 인한 발거 필요=6)

- ① 다음 각호와 같은 치아 발거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식으로 인한 발거 필요로 판정한다.
 1. 치수 치료 후 수복할 수 없는 수준의 심한 우식
 2. 치관부가 모두 파괴된 유전치
- ② 여러 원인이 복합된 발거 필요 치아는 상대적 주요 원인에 따라 판정하되, 상대적 주요 원인이 유사한 수준일 경우 우식, 치주병, 기타 원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판정한다.

제28조의 2(치주병으로 인한 발거 필요=7)

- ① 다음 각호와 같은 치아 발거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주병으로 인한 발거 필요로 판정한다.
 1.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동요도가 심한 치주질환

제28조의 3(기타 원인으로 인한 발거 필요=8)

다음 각호와 같은 치아 발거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타 원인으로 인한 발거 필요로 판정한다.

1. 보철을 위해 발거가 필요한 경우
2. 교정이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전위된 치아
3. 매복으로 인하여 발거가 필요한 경우
4. 지치의 경우에는 맹출된 치축이 정상적일 때 충전에 근거한 치료 필요로 판정하되, 치축이

정상이 아니어서 정상적인 기능이 안 될 때는 진행 정도에 무관하게 기타 원인으로 인한 발거 필요로 판정한다.

제29조(기타 치료 필요=8)

상기 이외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 치료 필요로 표기하되, 가능한 기타 치료 필요의 판정을 피하도록 한다.

② 보철상태 및 치료 검진지침

제1절 보철물 상태

제1조(보철물 상태 판정)

① 보철물 상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판정한다.

0 = 보철물 없음

1 = 고정성 가공의치 한 개

2 = 고정성 가공의치 두 개 이상

3 = 국소의치만 있음

4 = 고정성 가공의치와 국소의치 공존

5 = 총 의치

9 = 기록 불가

② 부정 진료업자에 의한 보철물은 별도의 설문란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고, 정상적인 보철물과 같이 취급하여 판정한다.

③ 보철물을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지라도, 정상적인 보철물과 같이 취급하여 판정한다.

제2조(보철물 상태/임플란트 경험 기록)

보철물의 상태는 판정된 결과를 상·하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칸에 기록한다.

제3조(보철물 없음=0)

치아 상실에 의한 고정성 혹은 가철성 의치보철물을 지니고 있지 않는 상하악을 각각 '보철물 없음'으로 판정한다.

제4조(고정성 가공의치가 한 개=1)

- ① 연결된 치아 개수에 상관없이 일체형의 고정성 가공의치를 하나만 지니고 있는 상·하악을 각각 '고정성 가공의치가 한 개'로 판정한다.
- ② 복수의 연결된 인조치관 형태의 수복물은 가공치(Pontic)가 없는 한 고정성 가공의치로 판정하지 않는다.
- ③ 하나의 치아가 탈락하여 임플란트하였을 경우, '하나의 계속 가공의치'로 판정한다. 임플란트를 치대치로 이용한 계속 가공의치가 존재하면 존재하는 계속 가공의치의 상태대로 판정한다.)
- ④ 치관 부위 수복이 완성되지 않고 임플란트 고정체(Fixture)만 있는 경우에는 보철물로 보지 않으며 상실된 치아 상태로 본다.
- ⑤ Cantilever bridge는 고정성 가공의치로 판정한다.

제5조(고정성 가공의치가 두 개 이상=2)

연결된 치아 개수에 상관없이 일체형의 가공치(Pontic)가 있는 고정성 가공의치를 둘 이상 지닌 상·하악을 각각 '고정성 가공의치가 두 개 이상'으로 판정한다.

제6조(국소의치만 있음=3)

모든 고정성 가공의치를 지니지 않고, 국소의치만 지니고 있는 상·하악을 각각 '국소의치만 있음'으로 판정한다.

제7조(고정성 가공의치와 국소의치 공존=4)

- ① 고정성 가공의치와 국소의치를 함께 지닌 상·하악을 각각 '고정성 가공의치와 국소의치 공존'으로 판정한다.
- ② 고정성 가공의치와 국소의치의 개수는 상관없다.

제8조(총 의치=5)

- ① 총 의치를 지닌 상·하악을 각각 '총 의치'로 판정한다.

② 피개의치(Over denture)는 총 의치로 판정한다.

제9조(기록 불가=9)

어떤 이유에 의해서이건 보철물 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기록 불가'로 판정한다.

제10조(임플란트 존재)

임플란트 존재는 판정된 결과를 상·하악으로 상·하악 전치, 상·하악 구치로 구분하여 각각의 칸에 기록한다.

제11조(임플란트 없음)

문진과 사진을 통해, 구강 내에 임플란트가 없음이 확인되면 상·하악 전치, 상·하악 구치로 구분하여 '0'으로 기록한다.

제12조(임플란트 있음)

문진과 사진을 통해 구강 내에 임플란트 식립체가 1개 이상 존재하면 상·하악 전치, 상·하악 구치로 구분하여 '해당 부위에 존재하는 임플란트 개수'를 기록한다.

제2절 보철물 필요

제13조(보철물 필요 판정)

① 보철물 필요는 '고정성 가공의치 필요단위 수'와 '국소의치 및 총 의치 필요'로 나누어 판정한다.

② 고정성 가공의치 필요 판정은 향후 발거를 예측하여 판정하지 않고, 현재의 구강 내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한 총 단위 수는 상·하악으로 나누어 지대치와 인공치아를 합하여 계산한다.

③ 국소의치 및 총 의치 필요는 상·하악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판정한다.

0 = 필요 없음

1 = 국소의치 필요

2 = 총 의치 필요

④ 보철물이 구강 내에 존재하여 보철물 상태란에 기록하였을지라도, 다음의 교체 필요 기준에 의해 교체해야 할 경우, 필요한 보철물의 종류에 따라 판정한다.

⑤ 지치는 보철물 필요 판정 때 고려하지 않는다.

※ 교체 필요 판정 기준 9)

1. 고정성 가공의치의 지대치 치관

- 1) 탐침의 1/4 이상이 치관 변연부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 2) 치관에 천공(Perforation)이 확인된 경우
- 3) 접착제(Cement)의 소실로 보철물이 들썩거리는 경우
- 4) 연결부(Joint part)의 파절

2. 고정성 가공의치의 가공의치(Pontic)

- 1) 가공의치에 눌러서, 주위 치주조직의 심한 증대(Swelling)가 관찰될 때

3. 국소의치

- 1) 국소의치의 Clasp 파손

4. 국소의치 혹은 총 의치

- 1) 의치의 파절
- 2)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치
- 3) 의치 상이 잘 맞지 않아서(III-fitting), 변연부(Border line)의 연조직의 증대(swelling)가 분명하게 관찰될 때

제14조(보철물 필요 기록)

보철물의 필요는 고정성 가공의치 필요와 국소의치 및 총 의치 필요로 나누어 상·하악별로 기록한다.

제15조(고정성 가공의치 필요단위 수)

‘고정성 가공의치 필요 단위 수’는 지대치와 인공치아(Pontic)를 합쳐 필요한 총 단위 수를 기록한다. 필요 단위 수 계산은 아래 각호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1. 유리 단(Free end)이 없는 결손 부위는 고정성 가공의치 적응증으로 보며, 징검다리식 치아 결손이 아니면 결손 치아의 수에 양측 지대치의 수인 2를 더하여 필요 단위 수를 결정한다.
- 2. 견치를 포함하는 치아 결손은 고정성 가공의치 필요가 아닌 국소의치 필요로 판정한다.

제16조(국소의치 필요)

고정성 가공의치로 수복할 수 없는 부분 유치악인 치아 결손 상태를 ‘국소의치 필요’로 판정한다.

제17조(총 의치 필요)

전체 치아의 상실 혹은 일부 치아가 존재할지라도 Clasp를 걸 수 없는 상·하악을 각각 '총 의치 필요'로 판정한다.

③ 반점치 검진지침

제1조(검진대상 연령 한정)

반점 치아 검진대상은 만 11세로 한정한다.

4. 서울시 이동노동자 심층면접 조사지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 건강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심층 면접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서울시 이동노동자 구강 건강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연구의 하나로 이동노동자의 구강 건강 인식 및 행태에 관련된 요인 및 이유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향후 이동노동자들의 구강 건강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조사자료는 통계법 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구강보건사업 계획 수립과 연구수행을 위한 통계분석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응답을 위하여 성실하게 조사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생년월일(양력 기준): 년 월 일

I. 일반적인 사항	
현재 등록된 기관	귀하가 현재 근무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II. 기본사항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출생연도, 최종학력, 직종, 취업 형태, 종사상지위, 정규직 여부, 주당 평균 근로시간, 주 근로 시간대
근무 경험	처음 (현재) 직종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III. 건강(의료)	
주관적 건강 수준	귀하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합니까? 건강 상태를 점수로 한다면 매우 나쁘다 0점 -----5점 매우 좋다 그렇게 생각하신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귀하의 현재 구강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 구강 건강 상태를 점수로 한다면 매우 나쁘다 0점 -----5점 매우 좋다 그렇게 생각하신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IV. 구강 건강 행태	
구강위생 관리 현황	<p>귀하는 어제 하루 동안 칫솔질을 하셨습니까? (했다면) 귀하가 어제 하루 동안 칫솔질 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p> <p><i>(예) 아침 식사 전 혹은 후, 간식 후에, 잠자기 직전에</i></p>
	<p>귀하는 어제 하루 근무하는 동안 칫솔질을 하셨습니까? (했다면) 귀하가 어제 하루 근무하는 동안 칫솔질을 했던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칫솔질 당시 시기 및 장소,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p> <p>(못했다면) 귀하가 어제 하루 근무하는 동안 칫솔질을 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p>
치아 외상 경험	<p>귀하는 운동 중이나 사고로 인해 치아를 다치거나 부러진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치아가 다치거나 부러진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p> <p><i>(예) 운동, 폭력, 교통사고, 교통사고 이외의 안전사고(추락, 미끄러짐, 부딪힘 등)</i></p>
일반적인 치과의료 이용실태	<p>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입안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구강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구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없다면) 가장 주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p>
	<p>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치과 병·의원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받은 진료 항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p> <p><i>(예) 구강 검사, 잇몸병 치료, 단순 충치 치료, 치아 신경 치료, 충치 예방 치료, 발치 혹은 구강 내 수술, 다쳐서 빠지거나 부러진 치아의 치료, 보철물 제작 혹은 수리, 스케일링, 기타(교정 치료, 심미 치료 등)</i></p>
	<p>귀하가 (현재) 직종에 종사하면서부터 치과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치과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p> <p><i>(예) 시간이 없어서, 중세가 가벼워서, 경제적인 이유, 교통편이 불편해서, 병·의원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병·의원 등에 예약하기가 힘들어서, 진료받기가 무서워서 등</i></p>

5. 서울시 이동노동자 사례비 지급 서류

수당 지급 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동의서

[수당지급에 필요한 정보]

내역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 및 증진방안 연구' 심층인터뷰
금액 (세전)	금일십만원정 (₩ 100,000)
소득	<input type="checkbox"/> 사업소득 <input type="checkbox"/> 기타소득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자택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 필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수당 지급 및 국세청 세금신고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 · 이용기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자택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수당 지급 및 원천세 신고 · 납부	3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는 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동의 거부 시에는 수당 지급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 선택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센터 활동 홍보 및 정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 · 이용기간
성명, 전화번호, 주소	본 센터 활동 홍보 및 노동관련 정보 제공	3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는 본 센터 활동 홍보 및 노동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동의 거부 시에는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계좌로 수당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귀하

연구책임자

최용희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박정안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책임연구원

류재인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사회치과학교실)

공동연구원

박향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사회치과학교실)

탁나연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사회치과학교실)

차은경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사회치과학교실)

도심권 2022-04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 및 증진방안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정숙희 · 홍성진

발행처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10층

02-6959-5255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6 장안빌딩 805호

02-2217-5255

ISBN 979-11-973960-4-5 [93300]

(비매품)